

# 발명특허

INVENTION & PATENT

January 2009

VOL. 390

01





IP Report

- 16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인터뷰
- 21 책과의 만남
- 22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 26 지식기반경제의 이해 지적재산의 구성요소
- 31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32 포커스 일본 지적재산권에 있어서의 ADR현황
- 39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40 특허확대경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 46 국제특허분쟁지도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 48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엠티아이지
- 52 특허기술이전·사업화 성공사례 주식회사 코스캠
- 56 문화산책

IP Column


- 58 산업재산권 길라잡이 산업재산권 길라잡이(14)
- 65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 66 발명칼럼 실험실로 들어온 팔레트
- 70 지식재산강의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IP Information

- 90 발명위인! 발명품!  
지역을 따라보는 선조들의 발명품과 발명유적지
- 95 발명 365
- 96 발명만화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 98 건강하게 삽시다 치매! 바르게 알고 대처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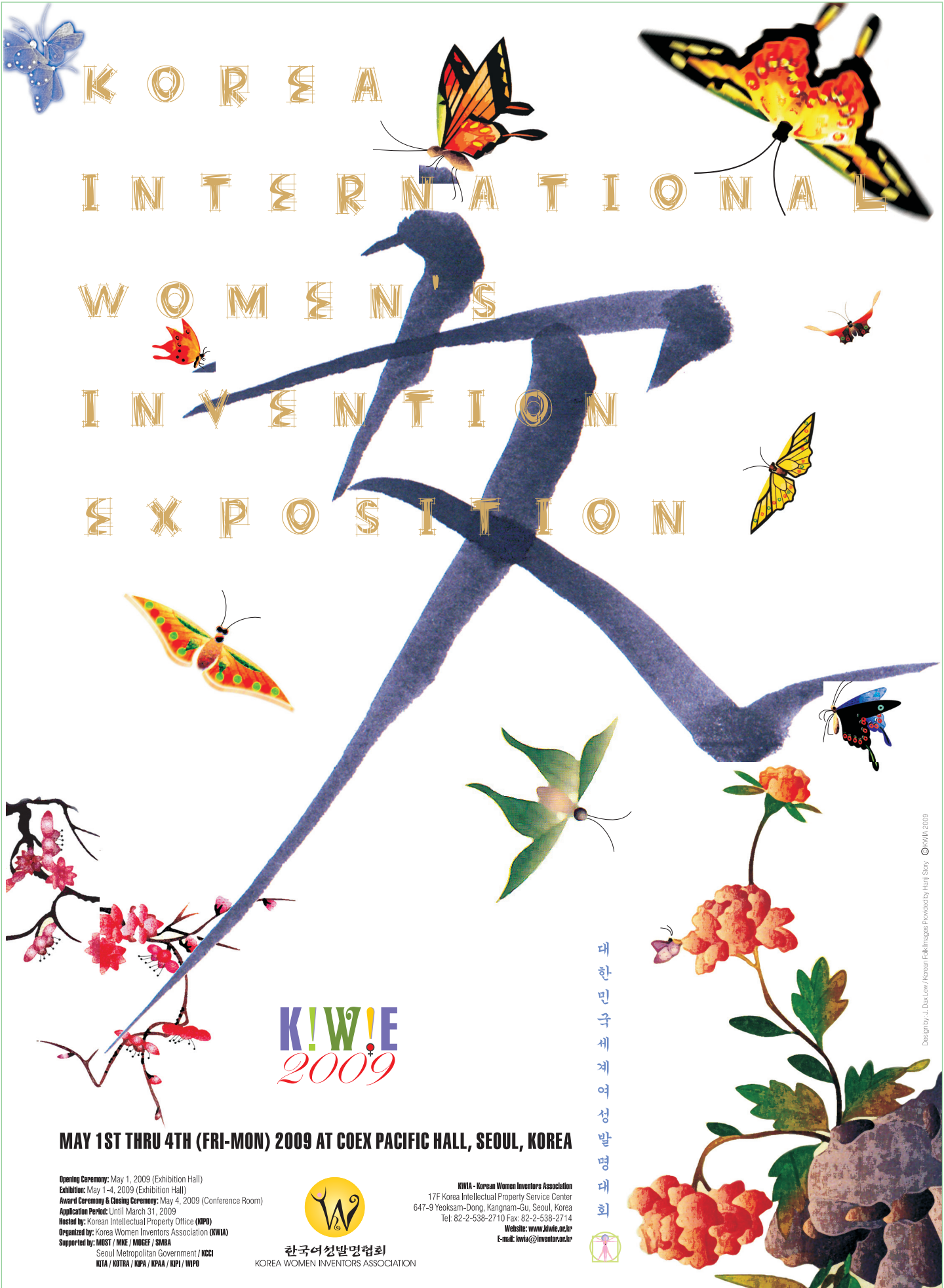
IP News

- 102 해외특허뉴스 해외특허분쟁,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 107 즐거운 퍼즐
- 108 KIPO 소식 특허청 소식
- 111 KIPA 소식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위의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기사와 본회의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회지 월간 발명특허  
2009년 1월호 제 34권 제 1호(통권390호)  
발행인/편집인 허진규  
인쇄인 이평원  
발행처 한국발명진흥회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우 135-980)  
전화 02)3459-2800(대)  
인쇄 2008년 12월 26일  
발행 2008년 12월 31일  
인쇄처 휘문인쇄사 (02)2276-1234



K O R E A  
I N T E R N A T I O N A L  
W O M E N ' S  
I N V E N T I O N  
E X P O S I T I O N

**K!W!E**  
*2009*

**MAY 1ST THRU 4TH (FRI-MON) 2009 AT COEX PACIFIC HALL, SEOUL, KOREA**

Opening Ceremony: May 1, 2009 (Exhibition Hall)  
Exhibition: May 1-4, 2009 (Exhibition Hall)  
Award Ceremony & Closing Ceremony: May 4, 2009 (Conference Room)  
Application Period: Until March 31, 2009  
Hosted by: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Organized by: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KWIA)  
Supported by: MOST / MKE / MODEF / SMB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NCSG  
NITA / KOTIRA / KPA / NPRA / KPI / WIPO



**한국여성발명협회**  
KOREA WOMEN INVENTORS ASSOCIATION

**KWIA - Korean Women Inventors Association**  
17F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ervice Center  
647-9 Yeoksam-Dong, Kangnam-Gu, Seoul, Korea  
Tel: 82-2-538-2710 Fax: 82-2-538-2714  
Website: [www.kwia.or.kr](http://www.kwia.or.kr)  
E-mail: [kwia@inventor.or.kr](mailto:kwia@inventor.or.kr)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



Design by: J. Dax Law / Korea F.I.H. Images Provided by Hant Story © KWIA 2009

##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명인이 우대받고, 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승 수  
국무총리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영예로운 수상자와 가족,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내·외 귀빈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상표·디자인전' 을 맞이하  
여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발명인 여  
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국제발명전' 을 동시에 개최함으로써 전세  
계 발명인과 자리를 함께하게 되어 의미가 더욱 큼니다.

먼저, 남다른 창의와 노력으로 수상의 영광을 안으신 수상자 여  
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계신 발명인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명인 여러분!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지식이 부의 원천이 되는 오늘날, 특  
허·상표·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은 국가발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것입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 생명공학, 나노기술과 같은 고부가  
가치의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신기술 개발과 보호를 강화하는데 국  
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 발명인들이 개발한 우수 발명품과 상표 및  
디자인을 한 자리에 전시해 보이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큼니다.

이번 행사가 국내·외 발명정보를 나누고, 우리 발명인들의 혁신  
의지를 북돋우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금 세계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불안  
이 실물경제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위기' 는 또 다른 '기회'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반드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발명으로 세계 4위의 산업재산권 출원대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제가 20년전 상공부장관 재직시 한 해에 10만 건을 밀돌던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지금은 37만 건을 넘어서는 것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또 지난 10월에 우리의 적극적인 주도로 제주에서 ‘특허 G5 청장’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일본·유럽 등 특허3국 체제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G5체제로의 재편은 세계 특허계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금번 G5회의에서 합의된 특허심사의 국제공조 비전과 실행과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G5체제를 공고히 하고, 해외에서 우리기업이 신속히 특허를 획득하고, 막대한 해외 출원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의 발명(Invention)이 혁신(Innovation)으로 이어지고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국가 비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R&D 중심의 중소기업 육성과, 첨단 부품·소재 및 신성장동력 산업 등 국가 주력산업 분야의 R&D 전략이 실질적인 지재권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경영 컨설팅을 통해 시작품 제작, 해외 출원 및 사업화 자금 지원 등을 연계한 패키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기술의 이전 및 특허제품의 실질적인 판로개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부는 발명인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개발한 특허권과 상표권이 국내·외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수준의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기업들의 특허경영 전략에 따라 원하는 시점에 특허심사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고객 맞춤형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대학의 특허교육을 실용적으로 확대·강화하고, 기업과 대학간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력을 체계적으로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기술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발명인이 우대받고, 발명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발명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이제 지식의 창출과 기술혁신은 선택이 아닌 생존과 번영의 필수조건입니다.

저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며,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첨병이 바로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무장한 발명인 여러분들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류국가로 도약하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신기술 발명에 더욱 정진해 주실 것을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발명특허대전’과 ‘상표·디자인전’을 축하하면서, 발명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이 발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발명활동을 진작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장선 위원장님!  
김용구 의원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2008년 우리나라 발명특허를 총결산하는 대한민국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발명인 여러분과 가족친지 그리고 직장 동료 여러분에게 마음으로부터 힘찬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발명인 및 내빈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들도 빠른 속도로 우리를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동력의 원천은 바로 발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말에 제주도에서 열린 미국·일본·유럽·중국·한국 등 선진 5개국의 특허청장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5개국이 한 자리에 모여 국제적 현안인 특허심사의 적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방안과 구체적인 10대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국제공조를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발명들이 적정 시점에 발명의 가치에 상응하는 권리를 획득할 수 있도록 우리 발명계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국제특허심사역량이 강화되면서, 최근 MS, 3M 등 글로벌 외국 기업이 한국 특허청에 PCT 국제조사를 신청하는 건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PCT 국제조사서비스를 확대·강화하는 경우 우리의 선도기술이 외국기업에 의해 특허를 선점당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연간 약 1,800만 불의 외화 수입을 통해 별도의 국가예산 투입 없이 이공계 박사급 고급 일자리 200여 개를 창출하는 실업대책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발명들이 해외 시장에서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이 특허분쟁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인 사법제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일본 등 선진국처럼 지재권과 기술내용을 잘 아는 법원으로 '특허소송의 관할을 집중' 시키고, '변리사가 모든 특허소송에 참가' 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리를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이는 300만 발명인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발명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세계제일의 발명으로 국가에 보답하겠습니다.

발명인 및 내빈여러분!

이번 대한민국 발명특허·상표·디자인 대전이 발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고 발명활동을 진작시키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인 여러분들이 개발한 발명품과 신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더 좋은 발명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최대의 발명품 전시회

##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대통령상 ‘셀닉스 오우용 대표이사’ 수상

서울국제발명전시회 및 상표·디자인전시회도 함께 개최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셀닉스의 오우용 대표이사가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셀닉스가 개발한 ‘이산화탄소가스 용접기의 2라인 제어장치’는 용접장비분야에 전자·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용접장비 성능향상은 물론, 우리나라 조선산업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킨 기술로 평가받았다.

또 WIPO 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총장 손병두)의 「전과를 이용한 혈당 측정장치 및 방법」과 엔티씨주식회사(대표 김명룡)의 「마이크로파 진공건조장치」를 포함하여 총 132개의 발명품에 대한 수상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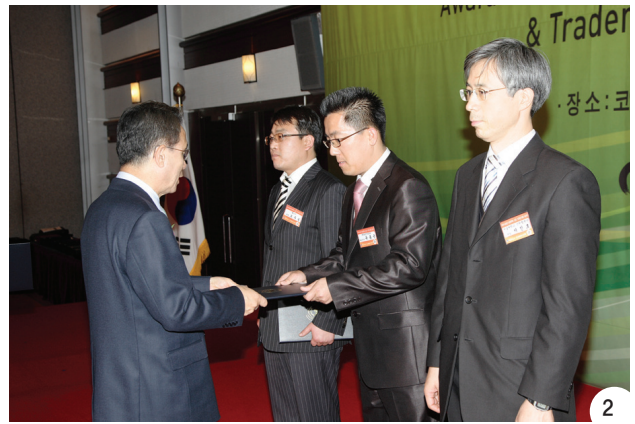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2008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및 서울국제발명전시회」는 지난 12월 1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여 5일간 대장정의 막을 내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격년으로 개최되는 「서울국제발명전시회」도 함께 열려 국내의 우수 발명품을 한자리에서 관람할 수 있었다. 전시관은 크게 발명특허대전 수상기술전시관과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관으로 구성되었고, 이외에 우수특허제품 특별전시관, 특허기술사업화지원관 등 다채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전시관이 운영되었다.

발명특허대전 수상기술전시관에서는 금년에 수상한 기계금속, 전기전자, 생활용품 등 국내 우수 발명품(8개 분야의 132점)이 전시되었고, 서울국제발명전시회 전시관에서는 세계 33개국 총 344점의 해외 발명품이 동시에 전시되었으며, 우수특허제품 특별전시관은 각종 국제발명품에서 수상한 수상품과 특허기술상을 수상한 우수발명품이 대거 전시되었다.



1



2

이외에도 롯데홈쇼핑에서는 지원관을 운영하여 홈쇼핑에 입점할 우수 특허제품을 발굴하였고, 특허기술사업화 지원관에서는 기술보증기금 등 특허사업화 관련기관의 전문가가 상주하여 특허사업화를 위한 각종 상담을 지원하여 발명인들의 실질적인 판로개척 및 기술사업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육군 발명품 경진대회 수상품, 100대 우수특허제품의 전시와 국제발명가협회연맹(IFIA) 설립 40주년 기념 발명홍보관, 대학발명동아리연합회 홍보관 및 발명체험 실습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발명 체험을 제공하였다.

또한 이번에는 상표·디자인의 축제인 「2008 상표·디자인전」이 함께 개최되어, 발명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디자인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식재산전시회가 되었다.



3

**사진설명**

- 사진1 : 한승수 국무총리(중)와 고정식 특허청장(우) 및 내외귀빈들이 수상자들의 발명품을 관람하고 있다.
- 사진2 : 한승수 국무총리가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주)유민에스티의 유홍근 대표이사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3 : 고정식 특허청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4 : 허진규 한국발명진흥회장이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 사진5 : 박상원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서울국제발명전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러시아의 Zlochevskii Valery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6 : 관람객들이 서울국제발명전시장을 관람하고 있다.



4



6



5



본 과정은 지식재산캠퍼스의 집합교육 중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실무" 교육  
 내용 중 "지식재산권 소송의 유형 및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소송" 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 강 사 : 윤복남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구 성 : 2차시 (3시간)
- 내용구성 :
  - 지식재산권 소송의 유형
  -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특징
  -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의 내용  
 (관할법원, 당사자,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주문예, 집행, 불복/구제수단)
- 교육목적 : 지식재산권 소송의 유형 및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소송의 특징 및 주요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 교육대상 : 기업 특허분쟁 담당 / 관련부서 실무자, 변리사 및 특허법률사무요원 등

생생한 현장강의를 **무료** 로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금 **당장 수강신청** 하세요!!! ^^

■ 수강신청방법 ■

[www.ipacademy.net](http://www.ipacademy.net) 접속 ▶ 일반인 선택 ▶ 로그인 ▶ 온라인정규과정 ▶ 원하는 강좌 선택 ▶ MY PAGE에서 학습하기

## 특허정보조사

(Patent Information Service - Search & Analysis)

# 기술개발의 첫걸음입니다!

###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전세계 특허/비특허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조사보고서(search report)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시 선행출원 유무의 확인, 경쟁사의 기술동향조사, R&D방향 설정 및 중복투자 방지, 특허분쟁 방지 및 대응에 활용

### | 특허맵(Patent Map)서비스 |

특허정보에 포함되어진 항목(출원인명, 국제특허분류기호, 발명을 구성하는 키워드 등)을 추출하여 분류 → 분석 → 가공하여 이를 도표·도식화함으로써 기업으로 하여금 해당기술의 발전추이, 미래흐름의 예측 등을 가능하게 하여 체계적인 특허전략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 특허(IP)컨설팅 / 교육지원 |

특허관리 전담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기업(SMEs) 등을 위해 KIPRI의 전문인력이 특허관리, 선행기술조사 등에 관한 기법 컨설팅/교육지원

**FORX** Forecast by  
Reliable Experts

신청  
상담  
안내

### 선행기술조사서비스

신청 및 접수 : 유현주 02-6915-6114

일 반 상 담 : 원태희 02-6915-6623

팩 스 : 02-6915-6630

### 특허맵 서비스/특허컨설팅/교육지원

신청 및 상담 : 배경완 02-6915-6604

<http://www.forx.org>

# 제44회 발명의 날 포상 계획 공고

“제44회 발명의 날”을 맞이하여 대한민국 발명진흥에 크게 공헌한 유공자를 아래와 같이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이 신청(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목적

- 범국민적인 발명분위기 확산과 발명가의 사기양양을 통해 우수 발명 창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

## 2. 시상일정

- 일 시 : 2009년 5월 19일(화) 14:30
- 장 소 : 코엑스 컨벤션센터 3층 오디토리움

## 3. 포상종류

- 산업훈장, 산업포장
- 대통령·국무총리·지식경제부장관·특허청장 표창 등

## 4. 포상신청(추천)

### 가. 포상대상

- 『발명가』 : 개인, 직무(기업체, 연구기관, 교수, 교사, 공무원), 학생
- 『발명유공자』 : 대기업,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 또는 임원
- 『발명장려유공자』 : 변리사, 공무원, 발명단체종사자, 기타
- 『발명지도유공자』 : 발명교실 및 발명반 지도교사, 교수, 기타
- 『발명장려유공단체』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기관, 대학교, 발명교실 및 발명반운영학교, 발명유관단체, 기타

### 나. 심사기준

- 발명가
  - 발명의 권리화, 사업화, 입상실적 및 발명진흥공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명유공자
  - 발명의 권리화, 사업화, 입상실적 및 발명진흥공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명장려유공자
  - 공적기간, 지식재산권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 발명진흥공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명지도유공자
  - 발명의 권리화, 사업화, 공적기간, 발명교실(발명동아리, 발명반) 운영실적, 발명관련 행사추진실적, 지도 및 입상실적, 지도강연 및 강의실적, 연구실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발명장려유공단체
  - 발명의 권리화, 사업화, 발명활동실적, 기타 발명진흥공적 등을 고려하여 평가
  - ※ 자세한 공적분야별 포상기준, 신청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http://www.kipa.org))의 “전시행사사업공고”에서 열람·다운 받거나 한국발명진흥회로 직접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5. 신청기간 및 접수처

가. 신청기한 : 2009. 1. 7(수) ~ 2. 4(수) 18:00까지  
(접수마감 당일 우편 도착분에 한함)

나. 접수 및 문의처 : 한국발명진흥회(<http://www.kipa.org>) 발명진흥·사업화팀  
(Tel. 02-3459-2793 · 5, Fax. 02-3459-2799, E-mail : khs3044@kipa.org)

※ 지방 문의처  
부산지회 [Tel. (051) 645-9684]  
광주지회 [Tel. (062) 954-3841]  
강원지회 [Tel. (033) 258-6580]

## 6.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 제 출 서 류         | 작 성 방 법  |
|-----------------|--|
| 신청(추천)서 1부      |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 <a href="http://www.kipa.org">www.kipa.org</a> ) |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 전시행사사업공고에서 다운받아 작성   |
| 주민등록등본 1부       | ※ 유공단체 신청자는 제외   |
| 산재보험가입내역 1부     | 기업체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한하여 제출   |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
| 인사기록요약서         | 공무원에 한함 (공문 포함)  |
| 공적 입증 확인자료 1부   |  |
| 명함판 사진 2매       | 1매 부착, 1매는 별도 제출   |

※ 모든 제출서류는 지정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발명진흥회(T. 02-3459-2793,5)로 문의하시기 바람

## 발명인의 전당 관람안내

발명인의 전당 [www.kipo.go.kr](http://www.kipo.go.kr)  
 관람가능시간 평일 09:00~18:00 (국경일/공휴일 제외)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1층 소재)  
 관람연락처 전 화 : (042)481-5940  
 담당자 : 김명희

찾아오시는 길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 및 신청 안내

※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자(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출연 기관 및 산하기관 등)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발명진흥법 제39조(우수발명품의 우선구매)에 의거 특허청장이 우수발명품의 지원, 육성 및 구매증대를 위하여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우수발명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제도입니다.

## 1. 목 적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우수 발명품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납품 촉진 및 판로개척지원

## 2. 신청 자격

가.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인 특허권, 등록유지결정된 실용신안권, 심사등록된 디자인권의 소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통상실시권자로서 중소기업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개인사업자

※ 1999. 7. 1 이후 실용신안 출원 후 등록된 기술은 기술평가를 거쳐 등록유지 결정을 받은 권리에 한함.

나. 등록된 권리로 제품 양산이 가능하여야 함

## 3. 우선구매추천대상기관

정부 및 공공기관

## 4. 선정 시 혜택

가. 우선구매추천의 유효기간 : 최초 추천일로부터 3년간

나. 우수특허제품 e-마켓플레이스 우선 입점

다. 우수발명 우선구매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표준원 신제품 인증(NEP) 심사 시 기술성 평가의 일부 및 선행기술조사 면제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시행령 제18조, 신제품 통합인증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061호) 제10조 등

## 5. 신청서 배포 및 접수처

가. 신청접수기간 : 연중 수시 접수

나.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주소 : (135-9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한국발명진흥회 유통지원팀 (우선구매추천사업 담당자)

전화 : 02-3459-2861, 팩스 : 02-3459-2879

e-mail : taskan@kipa.org

다. 신청 시 구비서류

우선구매추천 신청서 [한국발명진흥회 홈페이지(www.kipa.org) 사업안내 → 우선구매추천 사업 참조]

P U Z Z L E



우 편 엽 서

우표

보내는 사람

이름: ..... (남·여)

주소: .....

전화: ..... H·P

□□□ - □□□

받는 사람

월간 **발명특허**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발명진흥회 19F 혁신기획팀

1 3 5 - 9 8 0

△ 이 편지를 접어서 가까운 우체국에 넣으십시오. 팩스도 보내 주십시오.



2009. 1월호  
 「발명특허」  
 1월호 특이  
 기사  
 2월호  
 「발명특허」  
 2월호  
 기사

월간 **발명특허**  
 2009. 1

독자카드

• 이번호 내용중에서 가장 재미있고, 유익했던 기사와 아쉬웠던 점은?

.....  
 .....

• 앞으로 꼭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  
 .....

• 기타 「발명특허」에 하고 싶은 말씀은?

.....  
 .....

■ 1월호 퍼즐정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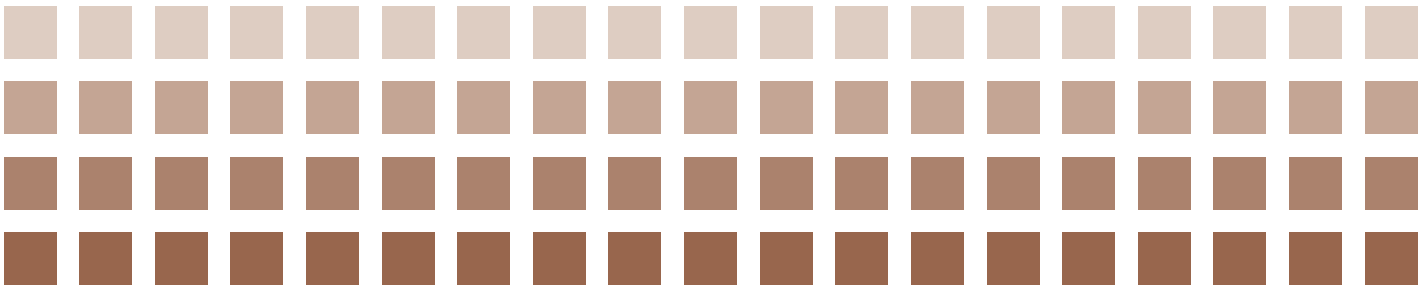
|    |    |  |    |    |    |   |
|----|----|--|----|----|----|---|
| 1  | 2  |  | 4  |    | 5  |   |
|    | 3  |  |    |    |    |   |
| 8  |    |  |    |    | 6  | 7 |
| 9  | 10 |  |    | 13 |    |   |
|    |    |  | 12 |    |    |   |
| 11 |    |  |    |    | 15 |   |
|    |    |  | 14 |    |    |   |





# IP Report

|                              |    |
|------------------------------|----|
|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인터뷰      | 16 |
| 책과의 만남                       | 21 |
|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 22 |
| 지식기반경제의 이해   지적자본의 구성요소      | 26 |
| 지식재산권 용어사전                   | 31 |
| 포커스   일본 지적재산권에 있어서의 ADR현황   | 32 |
| 특허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39 |
| 특허확대경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 40 |
| 국제특허분쟁지도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 46 |
| 특허기술 평가결과 활용사례               | 48 |
| 특허기술 제값받기 - (주)엠티아이지         |    |
| 특허기술이전 · 사업화 성공사례   주식회사 코스켄 | 52 |
| 문화산책                         | 56 |



# 조선산업 경쟁력, 용접기술에서 나온다

## 셀닉스, 2라인 전력선통신 제어 장치 개발

### 조선소 용접장비분야에 전자·통신기술접목, 용접장비 성능향상



오우용 대표이사

셀닉스

“이 발명품은 기존 아날로그방식 용접장치 원격제어를 전력선 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로 제어선의 가다수를 줄임으로써, 케이블의 소형경량화와 접속 어댑터의 일체화로 용접의 정확성 및 작업자의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오우용 셀닉스 대표는 ‘이산화탄소가스 용접기의 2라

인 제어장치’로 이번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최고상인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용접기술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속재료에 열과 압력을 가해 고체를 직접 접합시키는 기술로 조선, 플랜트, 기계, 금속, 자동차, 건설 분야 등 산업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기술.

이 발명품은 기존 6~12선이던 제어선을 2선으로 단순화하고 특히 용접 와이어 송급장치의 원격제어방식을 아날로그제어에서 전력선통신의 디지털제어로 바꿨다. 또한 용접케이블과 접속 어댑터의 구조를 변경해 원터치 접속방식으로 간소화함으로써 용접데이터 전달의 정확성과 안정성, 사용기능의 확장성으로 용접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은 물론 용접품질의 향상, 작업시간단축, 고장률 감소, 구매단가인하 등을 실현, 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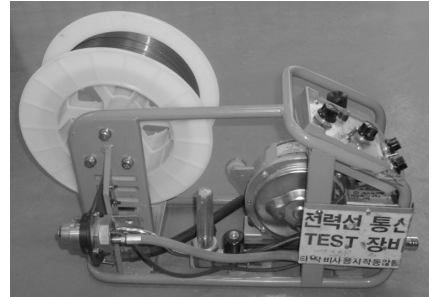
오우용 대표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15년간 용접장비관리 업무를 수행할 당시 조선·플랜트의 경우, 용접기 고장의 60% 이상이 제어선의 단선과 제어 커넥터의 파손이 주요원인이고, 특히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2~3배 높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어선 없이 용접하는 용접기가 있으면...’ 하는 데서 시작해 개발에 성공하게 됐다.

오우용 대표는 개선 방법으로 ‘전력선통신기술’ 활용을 착안하고 2007년 전자통신장비 개발 전문회사를 설립, 개발에 착수했다. 개발 초창기 최초 전력선통신의 용접 아크 및 고주파 노이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성공 가능성을 확신했다. 그러나, 제어선을 2선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초기 계획했던 모터구동용 전원을 전력선통신용 전

원으로 사용하기에는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부적합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터구동회로를 와이어 송급 장치부로 분리배치하면서 상시전원을 공급

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변압기 없이 안정적으로 모터를 구동할 수 있는 회로개발에 성공하면서,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2007년 1차 개발 완료 후 삼성중공업에 납품했으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용접조건 부적합 판정을 받고 2차 개발에 착수, 노이즈 대책과 용접조건, 기존 용접기의 문제점인 저전류 및 고전류에서의 불안정한 용접출력 등의 원인을 규명·보완해 2008년 조선소 현장테스트에서 최종승인을 얻어 공급계약까지 체결하게 됐다.



이 발명품을 이용하면

- 1) 용접케이블 신규구매비용 15% 감소(통상 50만 원~42만 5천)
- 2) 용접케이블 고장률 감소로 재구매용 소모품 비용 80% 감소
- 3) 용접케이블 단선, 단락 등의 고장으로 인한 수리시간 감소
- 4) 고장으로 인한 용접작업 휴지시간 감소
- 5) 용접어댑터, 제어용커넥터, 가스호스니플의 재구매비용 80% 감소
- 6) 단말처리시간 감소(30분→10분)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으로 인한 납기단축은 물론 통상 용접기 1대 당 연간 기대효과는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용접기 1만 5,000대를 보유한 조선소의 경우 연간 15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 및 시간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용접케이블의 경량 소형화로 작업장 간 이동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도 예방할 수 있다.

오우용 대표는 “이 발명품으로 대체 및 신규시장 규모는 국내 연간 3000억 원, 세계에서 10조 원 이상의 시장독점적 우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동안 열세였던 국내 용접장치산업의 부흥과 세계 용접기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안전성 검사, 초음파 구조진단장치

## 자기변형 트랜스듀서와 이를 이용한 구조진단장치



**김윤영** 교수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수상자 김윤영 교수)이 항공기, 선박 등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구조진단장치를 개발해 국무총리상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울대학교가 개발한 이 초음파 구조진단장치는 자기장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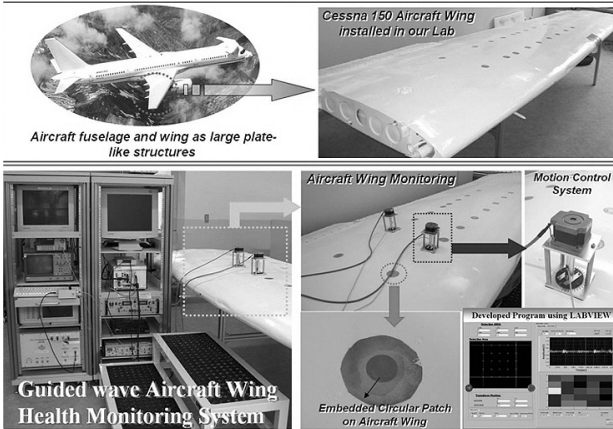
자기변형 현상으로 초음파를 발생시켜 구조물의 안전성을 측정하는 센서이다. 압전 현상을 이용한 기존의 초음파 센서들에 비해 에너지 집중도가 높고 검사영역이 넓다는 특징을 지녔다. 또한 이전의 센서들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내구성이 뛰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윤영 교수는 “선진국일수록 대형 인프라가 증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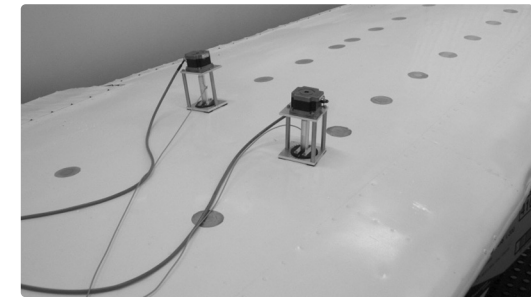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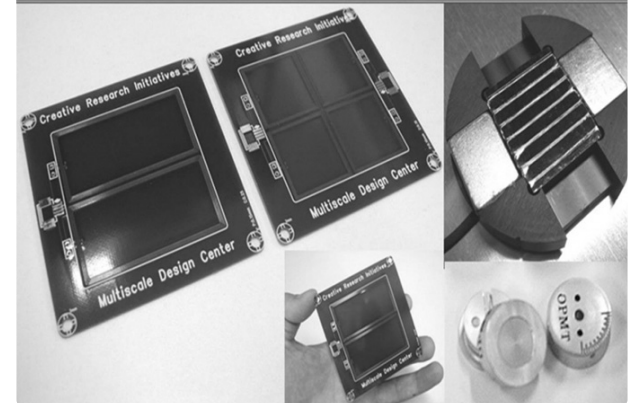
산업설비가 노후화해 안전관련 산업이 팽창한다”면서 “자기변형을 이용한 센서가 항공기, 발전소, 선박 등의 안전도를 측정하는 비용을 대폭 절감시키고 진단시간을 줄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센서의 크기를 줄이고 전력의 소모를 줄여 무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명특허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서울대학교 멀티피직스 설계연구실은 멀티피직스 시스템의 최적설계기술을 연구하는 산학협력단체로 비틀림 진동센서, 고성능 회전형 열액추에이터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초음파 진단장치에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자기변형 트랜스듀서를 이용할 정도로 관련 개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연구단체다.

등록된 특허 기술을 이용한 항공기 날개 결함 진단 시스템



The Developed Transducers based on the Patent



## 채혈 없이도 혈당 측정하는 혈당측정장치

채혈 없이 마이크로파로 혈당의 연속적 측정 가능  
실시간 혈당 측정으로 U-헬스케어 산업의 핵심될 가능성 높아

50만 여명의 국내 당뇨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혈당 측정장치가 2008 발명특허대전에서 특별상인 ‘WIPO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강대학교(수상자 이기진 교수)가 개발한 ‘전파를 이용한 혈당측정장치 및 방법’이 수상의 주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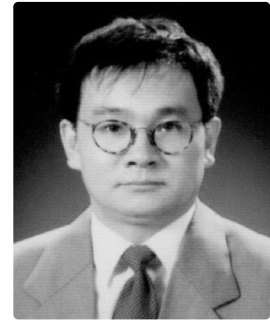
지금까지 당뇨병 환자들은 손가락의 혈액을 채취해 혈당 스트립을 이용하는 혈당측정장치에 의존해 왔다. 때문에 채혈의 비위생성, 고비용, 환자의 고통 등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논의돼 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수상한 ‘혈당측정장치’는 혈당에 영향을 받지만 체내의 다른 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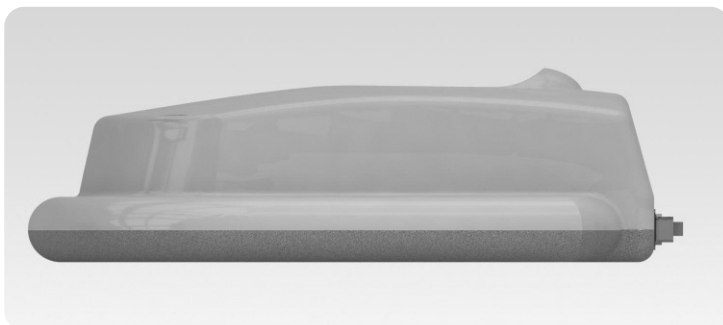
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주파수의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채혈 없이도 혈당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혈당 수치의 변화를 실시간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도 있다.

‘전파를 이용한 혈당 측정장치’로 특별상을 수상한 서강대학교 이기진 교수는

“비채혈 혈당측정은 U-헬스케어(유비쿼터스 헬스케어)에서 최대 규모를 형성한 산업으로 국내 60조 원, 미국 2,6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것”이라면서 “실시간으로 혈당을 측정해 의사와 원격 상담하는 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실버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진 교수  
서강대학교



## 휴대용 · PC다목적 HDPC ‘미유폰’

노트북, 휴대폰,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인터넷전화까지 모든 기능이 가능한 융합단말기  
사용자매뉴얼 없이도 쉽고 친숙한 조작환경을 제공 보행 중에도 쉽고 편리하게 입력 가능



오준수 대표이사  
(주)미유포테크놀로지

‘미유폰(HDPC)은 요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휴대용 컴퓨터(UMPC, MID, NetBook) 기능뿐 아니라 PMP폰 및 PC폰 개념을 뛰어넘는 신개념 휴대기기로 3G폰의 진정한 역할 및 차세대(4G 이후)도 미

리 준비하며 다목적 기능과 서비스를 유저 선택적 개념으로 탑재하고 있다.”

(주)미유포테크놀로지는 HDPC (Hybrid Dual Portable Computer) 하나에 휴대폰, 노트북, MP3/MP4, DMB, 전자사전, 네비게이션, PMP, 게임기 등을 비롯하여 인터넷전화까지 되는 융합단말기 ‘미유폰’을 개발해 이번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특별상인 WIPO상을 수상했다.

모든 종류의 단말기 기능들을 HDPC폰 하나에 모두 담아, 기능에 따라 HDPC의 모습을 변화시키며 사용 가능한 것이 큰 특징이다. 예를 들어, 전화통화 시엔 완전히 접었다가, 노트북 사용 시에는 노트북 모형으로 슬라이딩하여 액정을 세우고 또 다시 뒤집으면 DMB로 변신하는 모습이다.

또한, ‘미유폰’은 윈도우 XP와 윈도우 CE를 지원하는 멀티 OS를 채택하고 있으며, 양쪽 OS에서 모두 VoIP를 지원할 수 있다. 와이파이(WiFi)와 고속하향패킷(HSDPA ·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는 물론 와이

브로(WiBRO)를 옵션 탑재하고 있으며, ARM 프로세서 및 디지털시그널프로세서(DSP) 기반의 저 전력 환경이므로 장시간 사용에 탁월하고 길거리나 산악지형에서도 휴대하면서 화상통화나 화상회의도 즐길 수 있다.

오 대표는 “미유폰은 너무 큰 노트북 및 너무 작은 스마트폰의 여러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휴대기기로 인텔 MID나 UMPC보다 작고 가벼워 언제든 손안에 휴대하면서 통신, 방송, 멀티미디어, 생활정보를 길거리에서도 만끽할 수 있다”면서 “매뉴얼을 보지 않아도 사용하기 쉽고, 각종 부가요금도 절감되는 단말기를 만들고자 이 제품을 고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미유포테크놀로지는 “앞으로 HDPC 외에 집 밖에서도 도어와 연동되는 시스템과 차량에 부착돼 있는 오디오, 네비게이션, 카메라, 핸즈프리 등 모든 기능을 한가지로 대체하고, 블랙박스 기능까지 추가할 수 있는 제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번뜩이는 아이디어 발명 특허로 성공하기

저자 유재복 | 출판사 새로운제안

## 책소개

일반생활에서 문득 떠오르는 아이디어의 활용사례로부터 아이디어 창출기법, 특허 정보조사 요령 및 특허 전반에 관한 것들을 체계적이고 쉽게 설명했다. 저자는 현재 한국 원자력연구서 선임 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정보검색분야 지정교수, 한국정보검색위원회 교육분과 위원, 한국산업기술진흥회 특허부문 출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번뜩이는 아이디어 발명, 특허로 성공'하기는 법률용어나 행정절차를 쉽게 풀어서 일반인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수록했다.

- ▶ 생활 속에 번뜩이는 순간의 아이디어를 놓치지 마라!  
아이디어는 곧 돈이요, 행복과 명예를 안겨주는 커다란 밑거름이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재미있는 발명이야기를 시발점으로 하여 발명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 특허 출원에 앞서 선행특허를 조사하는 방법, 그리고 특허출원 과정을 거쳐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가령 '디하기도 발명이다. 모양을 바꾸는 것도 발명이다' 처럼 어렵게만 여겨지는 발명의 원리를 쉽게 풀어쓰고 동시에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발명의 조건, 특허출원 서류작성 및 심사과정 등의 순서를 체계적으로 풀어냄으로써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선행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검색방식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이 스스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발명 특허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책 한 권을 통해 특허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으며, 발명의식 및 선행특허조사 능력의 배양을 통해 스스로 특허권을 얻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 2008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수상자

| 상격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대통령상  | 오우용 | 셀닉스         | 대표   | 이산화탄소가스 용접기의 2라인 제어장치                           |
| 국무총리상 |     | (주)유민에스티    |      | 물성감지 리크센서 장치                                    |
|       |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      | 탄성 초음파를 발생 및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변형트랜스듀서와 이를 이용한 구조진단 장치 |
| WIPO상 |     | 서강대학교       |      | 전파를 이용한 할당측정장치 및 방법                             |
|       | 오준수 | (주)미유테크놀로지  | 대표이사 | 휴대기기 구조   |

### 금상(교육과학기술부장관상)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김종수 | 한도철강(주)     | 이사   | 사출기용 노즐 어셈블리                               |
|     |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 |      | 초음파를 이용하는 기질-분자체막 복합체의 제조방법 및 이에 사용되는 제조장치 |
| 민한기 | (주)사원비      | 대표이사 | 슬림 슬라이드 욕조                                 |
|     | (주)에일전자     |      | 감각 신호 출력 장치                                |

### 금상(지식경제부장관상)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 (주)스마트에드인   |      | 액티브 태그, 리더, 및 이들을 이용한 페어링 방법          |
| 정용업 |             | 개인   | 목공용 각도 금강기 자                          |
|     | (주)코리아나 화장품 |      | 천녀목란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피부주름 개선용화장료 조성물 |
| 이찬봉 | 나노렉스        | 대표   | 개선된 라이너를 갖는 전열소자                      |
| 김창덕 |             | 개인   | 전면 좌식 가능한 양변기                         |
|     | 다빈치메디텍(주)   |      | 무릎 보조기                                |
|     | (주)심지       |      | 퍼머트드와 이러한 퍼머트드에 효율적인 전열을 수행하는 가열장치    |
| 강성길 | (주)허스라산업    | 대표이사 | 허리 운동기구                               |
| 정진구 | 삼정인터내셔널     | 대표   | 방진마스크                                 |
|     | (주)무진산업     |      | 항온 흡습기                                |
| 정규선 | 일창산업        | 대표   | 직접 분사식 분배기 및 이를 이용한 화장용구              |
| 박경순 |             | 개인   | 유골 밀봉처리 방법 및 그 장치                     |
|     | (주)봉림       |      | 감식초 분말 및 그의 제조방법                      |
| 이민철 | 마누크리ystal   | 대표   | 예칭 키트                                 |

### 은상(특허청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 (주)에코웍스   |    | 유용 미생물 천연면직물, 그 제조방법 및 유용미생물활성액 배양방법        |
|     | 엔티씨(주)    |    | 마이크로파 진공 건조장치                               |
|     | (주)하이워드   |    | 자동차스절단기                                     |
|     | (주)한성식품   |    | 저염도 절임조건을 이용한 브로콜리 김치의 제조방법                 |
|     | 제일종합안전(주) |    | 반사체의 교체가 용이한 도로표지봉                          |
| 김운철 |           | 개인 | 소형 전기 보일러                                   |
|     | (주)엔아이티   |    | 뚜껑이 없는 수조에 분무통제부를 갖는 초음파 가습기                |
|     | 한국돌기(주)   |    | 전기 분해를 이용한 살균수 제조장치                         |
|     | (주)푸드사이언스 |    | 고지혈증 예방 또는 치료용 조성물                          |
| 백재훈 |           | 개인 | 인조 현무암 제조용 조성물,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인조현무암 및 그의 제조방법 |
| 소윤서 |           | 개인 | 끈 길이 조절장치                                   |
|     | (주)제트플러스  |    | 배압제거 역류방지 장치                                |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 (주)태청하이테크     |      | 휴대용 전선 테이핑장치            |
| 오용선 | (주)라스아이티에스    | 개인   | 전동 운동화세척기               |
|     | (주)대경산업       |      | 보차도 인터로킹 블록 및 그 시공방법    |
|     | (주)엠에스존       |      | 안마 의자 및 안마 의자의 구동 방법    |
| 이진희 |               | 개인   | 시이소 신발 밑창               |
| 장규순 | 동서울대학         | 교수   | 적외선 가열 조리기              |
|     | 삼화디에스피(주)     |      | 전자 헤어 코디네이션 시스템 및 그 방법  |
| 조규호 | 동일하이테크        | 대표   | 전력감시형 다기능 모터보호계전기       |
| 조영택 | (주)코리아로드      | 대표이사 | 다목적 의자                  |
| 최호성 | 얼라이브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우레탄 러버 탄성체를 이용한 도로 표지병  |
|     | (주)동방데이타테크놀로지 |      | 스케이트보드                  |
| 황인철 | 젤나코           | 대표   | 하이 스피드 3D 구동제어장치        |
| 황재원 | (주)파워에이앤디     | 대표이사 | 하체 운동기구                 |
|     | 이미지랩(주)       |      | 무선 기반의 일체형 조도 제어기       |
|     |               |      | 플라스틱 평판 디스플레이 및 그의 제조방법 |

### 동상(한국발명진흥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 (주)태일       |      | 나사산에 의한 가압구조를 가진 전기용착용 배관장치 |
|     | 아람휴비스(주)    |      | 체온계 기능을 갖는 휴대용 영상의료장치       |
| 박만우 | (주)천옥       | 대표이사 | 유골을 구슬형태의 사리로 제조하는 장치       |
|     | (주)서부에너지기술  |      | 타워크레인의 위험감지 경보방법 및 안전 장치    |
| 이삼준 | 자이선         | 대표   | 타워크레인의 위험감지 경보방법 및 안전 장치    |
|     | (주)브러쉬월드    |      | 안전모 및 모자용 착탈그늘막             |
|     | (주)현진기업     |      | 모노필라멘트용 생분해성 수지 조성물 및 그 용도  |
| 최기석 | (주)스마트코퍼레이션 | 대표이사 | 바이러스 및 세균제거용 친환경 소독장치       |
| 한선영 | INNO        | 대표   | 전자기유도가열을 이용한 시트 접합구조        |
|     |             |      | 탄성헌지부가 구비된 바형 휴대용 단말기 커버    |

### 동상(한국특허정보원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길상철 | 모델워크       | 대표   | 건축 모형용 모형 자동차 주행 장치                |
| 김미나 |            | 개인   | 발판동력 발생장치를 갖는 미니 바이크               |
| 김은정 |            | 개인   | 태엽스프링을 이용한 발전장치                    |
|     | (주)아이디어이츠  |      | 후라이팬                               |
| 김현민 | (주)솔라코 컴퍼니 | 대표이사 | 조립식 난방 매트 및 이의 제조 방법               |
|     | (주)솔버스     |      | 비과금형 국선전환장치와 로비폰장치 및 이를 이용한 국선전환방법 |
| 안종덕 | 씨알메디       | 대표   | 하체운동기구                             |
| 이장근 | 예스락        | 대표   | 미단이 창문용 개폐구                        |
| 장재식 | 일진경량산업     | 대표   | 건축용 경량단열패널                         |
| 조재현 | TNS        | 대표   | 지하철출입문 개별제어장치                      |

### 동상(전국경제인연합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곽정필 | 렉소엔지니어링    | 대표  | 오페수 처리조의 침전 슬러지 농도 측정장치             |
| 김상구 | 마무스테크놀로지   | 대표  | 현대용 기능성 버클                          |
| 김형호 | 에스제이테크     | 연구원 | 벽체 시공용 블록                           |
|     | (주)바이오뉴트리젠 |     | 식물 추출물 또는 분말을 포함하는 동물의 체중감량을 위한 조성물 |
| 안석환 | 윤남텍        | 대표  | 방향기능이 겸비된 세척이 간편한 초음파 기습기           |
| 이주형 | 한국폴리텍 I 대학 | 교수  | 차량의도어                               |
|     | 노하우뱅크(주)   |     | 차량의 녹화 영상처리 장치 및 방법                 |
| 허진  | 소노다인       | 대표  | 직접방사형 무지향성 플레인저 스피커시스템              |

### 동상(중소기업중앙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 (주)수프로    |      | 가로용 화분  |
|     | 광덕신약(주)   |      | 천연물 재료의 추출물을 포함하는 두발 세정제(삼푸 또는 린스 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 |
| 김순봉 | (주)거성에코텍  | 대표이사 | 음식물 쓰레기 건조기                                     |
| 김태환 | 엔아이디어     | 대표   | 바지 밑단의 끌림 방지장치                                  |
| 박성용 | 동양라이트     | 대표   | 비상중명등용 연기감시장치                                   |
|     | 근우테크(주)   |      | 운전 안정도가 유지되는 4륜구동 운반차                           |
| 신병철 | (주)버드나루   | 기술이사 | 휴대용 접이식 보트                                      |
| 이재인 | 재인산업      | 대표   | 연구자석을 이용한 무접촉 동력전달장치                            |
| 전영학 | 니이도코리아(주) | 대표이사 | 슬라이딩 보조듀얼모니터를 구비한 멀티미디어 노트북 및 데스크탑 엘씨디 모니터      |
|     | (주)에리트퍼니처 |      | 조립식 건축 내장용 판재                                   |

### 동상(한국무역협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 포항공과대학교 산학협력단 |      | 무안경식 3차원 입체 TV를 위한 고속 다시점 3차원 입체영상 합성 장치 및 방법 |
|     | (주)도산산업       |      | 도로 분리대용 지지대                                   |
| 엄재규 | 바리바산업         | 대표   | 스파이럴 구조의 연소실을 가진 스팀보일러                        |
| 유재원 | 류골프           | 대표   | 골프티   |
|     | (주)에코미스트코리아   |      | 문서 지폐 등의 기록물의 살균장치                            |
| 이성환 | 휴백코           | 대표   | 롤형 접착 테이프 케이스의 테이프 밴딩 절단장치                    |
|     | 수원시시설관리공단     |      | 이미지 저장방식을 이용한 주차요금 정산장치 및 그 운영방법              |
| 정재익 | (주)한국이엔지      | 전무이사 | 다단 습식집진기                                      |
| 최춘해 | 기연기술개발        | 대표   | 열효율 향상을 위한 가스레인지버너의 보조장치                      |
| 하용길 | (주)봉림         | 대표이사 | 전동 칫솔   |

### 동상(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권태문 | 미강셀레늄     | 대표   | 원적외선 방사섬유 및 이를 이용하여 제작된 의복              |
| 김옥경 | 비즈테크      | 대표   | 진공청소기의 노즐어댑터 및 그를 가지는 진공청소기             |
|     | 광명통신안전(주) |      | 다중 빔 적외선 센서 및 그의 운용방법                   |
| 박현준 | (주)푸름바이오  | 대표이사 | 칼슘 결합 경화 특성을 이용한 고강도 완효성 고품 비료 및 그 제조방법 |
|     | (주)뉴팩코리아  |      | 자동생산이 가능하도록 개선된 모서리 개봉형 지퍼용기            |
| 안봉주 | 개인        |      | 물걸레 청소기                                 |
|     | (주)진영아이텍  |      | 진동 분사식 은경도장 방법 및 장치                     |
| 최상홍 | 구들장벽난로    | 대표   | 구들장 벽난로                                 |
| 홍정희 | (주)웰빙코리아  | 대표이사 | 이침용 압봉구                                 |

동상(대한변리사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강명수 | 한국M로봇트<br>(주)한국나노기술 | 대표 | 팔,다리 운동기구<br>살균기능을 갖는 통풍 마우스 |
| 김무현 | 퍼팅존                 | 대표 | 골프 숏게임 연습장치                  |
| 김정근 | 주찬산업                | 대표 | 공기 정화용 에어필터                  |
| 김형곤 |                     | 개인 | 다공질의 난연성 압축섬유를 이용한 난방파이프     |
| 박복현 | 현영컴퍼니               |    | 여행기방                         |
| 박순학 |                     | 개인 | 아궁이가 회전되는 벽난로                |
| 엄대용 |                     | 개인 | 필터의 지력소제가 가능한 공기정화구조         |
| 이기봉 | 주안산업                | 대표 | 시트 또는 판재 형태의 입체무늬 장식재        |

동상(한국여성발명협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강정영 |           | 개인   | 탈취용 지판기                       |
| 권정호 |           | 개인   | 지팡이                           |
| 김봉연 | 에벤에셀      | 대표   | 음식물쓰레기 배출통의 개방 제한장치           |
| 김흥권 |           | 개인   | 조립식 난방패널                      |
| 연선화 |           | 개인   | 줄넘기 트레이닝용 음원 기록매체 및 그 음원 구현장치 |
| 유일수 | 유일테크      | 이사   | 구강 세척기                        |
| 이재우 | 태방종합건설(주) | 대표이사 | 전복,해삼 가두리 양식용 파판              |
| 지송학 |           | 개인   | 문자입력방법                        |

동상(한국학교발명협회장)

| 수상자 | 소속(업체명)    | 직위 | 발명(고안)의 명칭           |
|-----|------------|----|----------------------|
| 김경일 | 아피메즈(주)    | 이사 | 부인과 질환의 치료장치         |
| 김종이 |            | 개인 | 수중익형 수륙양용자전거         |
|     | (주)우주엘텍    |    | 휴대용 다리미              |
| 왕종문 |            | 개인 | 마우스 및 그 받침대          |
| 이영훈 | 삼강         | 차장 | 습식공기청정기              |
| 정지원 |            | 개인 | 학교방송 자동화 운영시스템과 운영방법 |
| 최만재 | 부산광역시 중구청  | 주사 | 경사각을 이용한 엘이디 가로등     |
|     | 얼라이브(주)    |    | 스케이트 보드              |
| 황지경 | (주)에스엔디트리캡 |    | 헤어캡                  |

# 지적자본의 구성요소



## 추기능

(현)해군사관학교 교수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부연구위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BK21 연수연구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박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 I.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 무형적 가치에 대한 여러 개념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가장 넓은 의미로는 ‘무형 자산(intangibles assets) =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s) =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 이 사용되고 있으며, 가장 좁게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이 사용되고 있다. 지식재산도 영어 표기 knowledge assets의 의미로 사용한다면, 단순히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에 한정하는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보다 넓은 개념이 된다. 특허당국이 지식재산이라고 칭할 때는 대개 지식재산권에 한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접근하여 지적자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II. 지적자본의 구성

### 1. 기업의 가치

공식적 대차대조표상의 유형적 가치와 숨겨진 가치(무형적 가치)<sup>1)</sup>를 합산하여 가상적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자<sup>2)</sup>산 총계라고 하면,

$$\text{기업자산} = \text{유형적 가치} + \text{무형적 가치}$$

$$\text{기업자산 총계} = \text{유형자산} + \text{무적자본(=지적자산)}$$

이다. 차변에 자산, 대변에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는 회계관행에 따라 지적자산을 숨겨진 가치의 차변, 지적자본

1) 기업의 숨겨진 가치는 지적자본(=지적자산)이다.

2) 지난 호에서 무형자산과 지적자본이 같은 개념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내용을 세분화하거나 측정과 관련해서는 지적자본이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지적자본이라는 제목하에 설명하기로 한다.

을 숨겨진 가치의 대변에 기록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대차대조표와 기업의 숨겨진 가치

|                                |         |                        |
|--------------------------------|---------|------------------------|
| 자산                             | 부채 + 자본 | ↑ 공식 대차대조표<br>↓ 숨겨진 가치 |
| 지적 자산<br>• 영업권<br>• 기술<br>• 능력 | 지적 자본   |                        |

자료: 황진우 역(1998)

이 때 유의할 것은 [그림 1]은 개념적 이해를 위해 단순화한 것이므로 엄밀하게 따지면, ‘지적자본(=지적자산)’도 기업자산의 실체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공식적 대차대조표상에도 영업권, 특허권 등의 무형자산이 자산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기업회계기준 하에서는 공식적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되는 금액이 실제로 기업 지적자산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대략적으로 ‘숨겨진 가치=지적자본(=지적자산)’과 같이 이해해도 무방할 것이다.

## 2. 지적자본의 내용

현대 기업들의 숨겨진 가치는 지적자본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지식기반경제가 도래하면서 지적자본의 중요성과 기업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자본을 정의하라고 하면, 답변은 다양하다. 같은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 다른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림 2]가 이러한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림 2]의 각 항목들은 지적자본의 구성요소들을 포함관계 없이 나열하고 있

다. 지적재산 또는 지적자산 등의 요소는 문헌에 따라서 지적자본의 동의어로 사용되거나, 오히려 지적자본을 포함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림 2] 지적자본의 구성요소들



자료: Sullivan(2000)

## 3. 지적자본을 구성하는 2가지 관점

[그림 2]의 요소들을 포함관계가 드러나도록 재구성함으로써 지적자본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자본의 세부 구성에서는 문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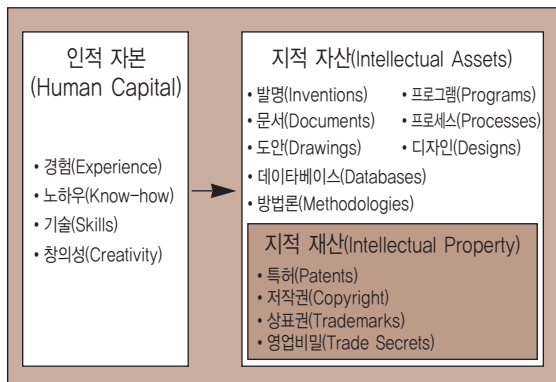
### 1) 관점 1

Sullivan과 Teece는 지적자본을 지적자원(intellectual resources)과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s)의 두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설명했다.<sup>3)</sup> [그림 3]은 Sullivan(1998)이 이를 더 발전시킨 것으로, 지적자원(Intellectual resources)은 [그림 3]의 인적자본에 해당한다. 지적자원(Intellectual resources)은 종업원들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집합적인 경험, 기술(skill), 일반적인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이윤 창출과정에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자원으로 보는 것

3) Sullivan, Patrick H., and David J. Teece, 1994, Extracting Value from Innovation, draft paper(Stewart, 1997에서 재인용)

이다. 그러나, 지적자원 또는 인적자본은 기업이 사람과 분리된 형태로 판매하는 것이 힘들다. 반면,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s)은 코드화된, 유형의 또는 물리적인, '특정 지식에 대한 記述(descriptions)' 로써 기업은 이러한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고, 종업원과 분리하여 판매할 수도 있다. 발명, 프로그램, 프로세스, 데이터베이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Stewart, 1997) 인적자본은 사람에게 체화된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을 말하는 것이며, 지적자산(intellectual assets)은 문서, 도안, 프로그램 등 코드화된 지식(codified knowledge)을 말한다. 코드화된 지식 중에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반도체배치설계 등의 형태로 법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다.

[그림 3]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의 구성



자료: Sullivan(1998)

## 2) 관점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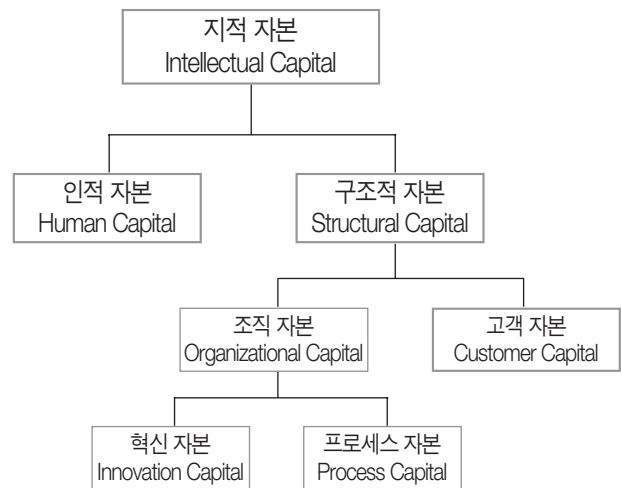
Edvinsson은 지적자본을 크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적자본)과 그렇지 못한 것(구조적자본)으로 구분한다.(황진우 역, 1998) 따라서, 집으로 가져갈 수 없고 회사에 남게 되는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은 구조적자본(structural capital)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즉,

$$\text{지적자본} = \text{구조적자본} + \text{인적자본}$$

지적자본은 비전유적(nonproprietary), 비물리적이어서 직접적인 측정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다. 객관적인 계량이

어렵기 때문에 측정에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다. [그림 4]는 Edvinsson의 지적자본 체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Saint-Onge, Stewart 등은 고객도 종업원과 마찬가지로 조직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을 인적자본 및 구조적자본과 병렬적으로 놓음으로써 지적자본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tewart, 1997)

[그림 4] 지적자본의 구성



자료: Stewart(1997)

## Ⅲ. 지적자본의 3 구성요소

Stewart는 그의 저서 'Intellectual Capital'(1997)에서 지적자본(intellectual capital)을 인적자본(Human Capital), 구조적자본(Structural capital),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으로 구분하고 있다. Stewart(1997)와 같이 구분하는 것이 지적자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 보다 용이하므로 본고도 지적자본을 3가지 구성요소로 설명하기로 한다.

### (1) 인적자본(human capital)

인간에 체화된 지식, 지혜, 전문성, 직관, 능력을 말한다. 조직의 종업원에 체화된 인간중심의 자산(human-centered assets)으로서 집합적인 전문성, 창의성, 문제해결 능력, 리더십, 기업가적 능력, 경영자적 능력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적자본은 기업이 소유할 수 없는 무형의 자본이다. 케인즈의 일반이론이 나오던 대공황기에는 노동공급 곡선이 수평선이라고 가정해도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실업자로 넘쳐났으며 노동은 매우 값싼 생산요소였다. 기업의 가치는 굴뚝수, 기계수, 현금액 등 물질적, 재무적 자본으로 평가되었다.(Annie, 1996) 그러나, 지금은 노동이 값싼 투입요소가 아니다. 오히려, 인적자본은 희소자원이며 값비싼 상품이다.

기업의 가장 가치있는 지식은 핵심 지식노동자의 두뇌에 있다. 인적자본은 거래가 안되므로, 기업이 노동에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때이다. 기업은 핵심인력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의 상당부분은 그 기업에 특유한 것이 아니어서 기업 입장에서 공공재에 투자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Burton-Jones, 1999) 기업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경영진 및 핵심인력들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점점 중요해졌다. 인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들은 고용, 훈련, 핵심인력 양성 등을 담당하는 내부 노동시장(internal labor market)을 발전시키게 된다.(Burton-Jones, 1999) 이에 따라, 기업 내 어떤 형태의 직종은 외부자들에게는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완전히 닫혀 있게 되는 것이다. 내부노동시장 이론을 발전시킨 Doeringer and Piore(1971)에 따르면, 기업은 숙련 생산직, 전문직, 관리직 등에 대해서는 내부노동시장을 활용하고, 저숙련 생산직, 단순사무직 등에 대해서는 외부노동시장을 활용한다. 내부노동시장이 장기고용 관행을 정착시키면서, 기업은 교육훈련 등 인적 투자를 보다 과감히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어떤 유형의 노동이 기업의富를 창출하는 인적자본인가? 일상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저숙련 노동은 조직에 필요한 인적자본을 축적하는 기능이 약하다. 쉽게 자동화되거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능한 인력이기 때문이다. Stewart(1997)는 기업 노동력(workforce)이 담당하는 업무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인적자본은 1상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표 1)

고객들이 경쟁사에게로 가는 대신 자기 기업에게 오도록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출해내는 사람들의 재능(talent), 경험(experience)이 기업에 필요한 인적자본이다.

[표 1] 노동자 담당 업무의 구분

|                    |                    |
|--------------------|--------------------|
| 대체가 어려움<br>낮은 부가가치 | 대체가 어려움<br>높은 부가가치 |
| 대체가 용이<br>낮은 부가가치  | 대체가 용이<br>높은 부가가치  |

자료: Stewart(1997)

이러한 재능이나 경험들은 대체가 어렵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상한에 위치시킬 수 있다. 연구개발자나, 영업 책임자, 프로젝트 매니저 등의 사람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다. 각 유형의 인력들을 [표 1]의 4상한 속에 자신을 위치시킴으로써 직업의 안정성을 확인해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현재 기업 내에서 우측 1상한으로 갈 수 있는지, 다른 기업에 가서 1상한으로 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의 인적자본 집약도(human capital intensity)가 더 높을수록 즉, 대체 불가능한 인력들에 의해 행해지는 고부가가치 업무의 비중이 높을수록 그 기업은 자사 제품·서비스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할 수 있고, 경쟁에 덜 취약하다. 영리한 조직(Smart organization)은 가능한 한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업무나 종업원의 기술이 쉽게 복제되는 업무에는 투자를 줄인다. 한편, 2상한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은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변화를 유도한다. 예를 들면, 회계감사팀이 2상한에 해당하는데, 적발 중심의 감사자에서 내부 컨설턴트 부서로의 기능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4상한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 부가가치는 높지만, 전유성(appropriability)이 없다. 따라서, 기업들은 아웃소싱을 통해 전유할 수 없는 전문성(expertise)이나 능력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높은 부가가치를 기업에 귀속시킬 수 있는 차별화를 추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컴퓨터 만드는 기술은 더 이상 소수 기업만이 가진 전유적 능력(proprietary talent)이 아니며, 컴퓨터 제조는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이 낮은 사업영역이다. 전유가능한 인적자본(proprietary human capital)은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핵심기술의 디자인·제조 능력이나 고객 맞춤형서비스 제공 능력 등에 있다. 컴퓨터 제조업체들이

컨설팅, 시스템 통합(systems integration) 사업으로 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즉, 이러한 부분에 전유가능한 지식(proprietary knowledge)이 있는 것이다.

(2) 구조적자본(structural capital)

구조적자본은 조직이 기능하게끔 하는 기술이나 프로세스를 말한다. 이는 조직이 질서정연하게, 안전하게, 올바르게, 질 높게 작동하도록 한다. 구조적자본은 회사 내 소프트웨어 시스템, 유통망, 공급망 등을 포함한다. 구조적자본이 더 좋을수록 인적자본도 더 좋아진다<sup>4)</sup>. 구조적자본은 인적자본이나 고객자본과 달리 기업이 소유할 수 있는 지적자본이다. 구조적자본은 거래가 가능하며, 안정적이고, 성장을 위한 자원조달 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경영자가 가장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며, 역설적으로 고객들이 가장 관심을 덜 가지는 자산이기도 하다.

Stewart(1997)는 기업을 나무로 비유하여 설명한다. 기업조직도, 결산보고서, 분기보고서, 기업현황 정보 등은 눈에 보이는 나무의 몸통, 가지, 잎에 비유된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나무 질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며, 나무의 건강도를 좌우한다. Stewart(1997)는 지적자본을 뿌리, 樹液, 나무의 내부조직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비유한다. 인적자본은 수액과 같아서, 나무의 관을 타고 흐르면서, 혁신과 성장을 가져온다. 나이트(growth ring)는 단단해져서 나무를 지지하고 있으며, 이것을 구조적자본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구조적자본은 집으로 가져갈 수 없는 자본이다. 구조적자본은 전체로서 조직에 속하며, 재생산과 공유가 가능하다. 기술, 발명, 데이터, 출판물, 프로세스 등 구조적자본 중의 일부는 법적인 소유권이 주어져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등으로 보호된다. 이런 것들은 매매 가능하고, 허락 없는 사용에는 소송이 가능하다. 전략(strategy), 문화(culture), 구조(structure), 조직의 업무처리 절차 등도 구조적자본에 속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코드화된 자산들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가치가 있다.

(3) 고객자본(customer capital)

어떤 기업이나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을 가지고 있다. 고객자본은 기업이 거래하는 대상인 사람 또는 조직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고객자본에는 고객충성도(customer loyalty),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고객리스트 등이 포함된다. 고객충성도가 높은 고객의 경우 비용이 더 든다 하더라도 충성도를 보이는 해당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것이다. Edvinsson은 지적자본을 크게 집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인적자본)과 그렇지 못한 것(구조적자본)으로 구분한다.(황진우 역, 1998) 따라서, Edvinsson은 집으로 가져갈 수 없고 회사에 남게 되는 고객자본(customer capital)은 구조적자본(structural capital)의 하나로 분류한다.

IV. 나가며

기업의 가치는 유형적 가치(≈재무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지적자본)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지적자본은 인적자본, 구조적자본, 고객자본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지적자본의 구성요소들은 함께 작동한다. 구조적자본이 더 좋을수록 인적자본도 더 좋아진다. 구조적자본도 제 역할을 하려면, 인적자본이 좋아야 한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손상시킬 수도 있으므로, 사람, 시스템, 고객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3가지를 함께 늘려야 할 것이다. 기업이 인적자본 및 고객자본을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는 없다. 인적자본은 종업원, 고객자본은 공급자 및 고객과 공유한다. 종업원, 고객, 공급자와의 적대적인 관계는 단기적으로 약간의 이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富를 파괴한다. 조직의富는 전유가능한(proprietary) 기술(skill)이나 재능(talent)을 중심으로 창출된다. 기업이 인적자본을 관리·개발함에 있어서, 일부 종업원은 아무리 영리하고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들의 자산이 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Stewart, 1997) 또한, 종업원의 업무는 고객이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어야 한다.

발명특허 2009. 1

4) 또한, 인적자본이 강하지 않으면 구조적자본도 제 역할을 할 수 없다.



# 지식재산권

## 용어사전

### 권리의 수반성 [법일반]

어떠한 권리가 이전되면 그 권리에 기초해서 발생한 다른 권리도 함께 이전되고 그 권리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면 그 파생권리도 함께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함.

### 권리불요구 [특허]

특정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지식재산권 소유자의 공식 진술로서 법정권리 포기과 잔여기간 포기(terminal disclaimer)의 두 가지가 있음. 법정권리 포기는 특허 중 무효인 청구항을 권리자가 알게 된 경우, 나머지 청구항의 무효화를 막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무효 청구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며, 잔여기간 포기는 a 특허의 존속기간을 b 특허의 권리만료 시로 한정하여 a 특허의 잔여 권리기간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함.

### 권리범위확인의 이익 [지재권일반]

특허권 등 지재권 심사에 관여한 전문행정기관인 특허청으로 하여금 특허 등 지재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판단하도록 하여 저촉관계나 침해의 구성여부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한 구제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자적 내지 법적 지위.

### 권리범위확인심판 [지재권 일반]

특허권 등의 기술적 범위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으로 문제가 된 대상물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 절차.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에 공히 해당됨. 등록권리범위에 속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등록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있음.

Where a request for a trial to confirm the scope of right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two or more claims, the request may be withdrawn for each of the claims.(2 이상의 청구항에 관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청구항마다 이를 취할 수 있다.)

### 권리범위 특정의 기준 [지재권일반]

특허침해소송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에 있어서 다툼의 대상이 된 특허의 권리범위를 파악하여 정하기 위한 기준.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일본 지적재산권에 있어서의 ADR현황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regarding Intellectual Property in Japan



윤선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1. 서

최근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지적재산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바뀌면서 지적재산을 중요한 經濟財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적재산을 국가정책으로서 인식하고, 미국이 1980년대 프로 페이턴트 정책을 실시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일본도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知的財産立國』의 실현이라는 名目下에 1990년대 후반부터 프로 페이턴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인(지적재산권자)들도 자신의 지적재산에 대한 강한 권리의식이 생기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이란 기술이 발전

하면 할수록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고, 분쟁도 발생하며 분쟁의 형태도 다양하여 종래의 분쟁해결방법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법원은 지적재산을 전담할 수 있는 지적재산(한국에서는 특허법원, 일본에서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법원이라는 전문적인 법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법원에서도 지적재산 전담부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그래도 지적재산권의 분쟁은 전문적이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문제라 쉽게 해결할 수 없어서 재판외 분쟁해결방법(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이하에서는 『ADR』이라고 한다.)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sup>1)</sup>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은 (사)일본상사중재협회 외에도 일본지적재산중재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1) 윤선희, "일본에서의 지적재산관련 조정·중재제도" 『법조』통권 573호, P.187.

우리나라도 대한상사중재원 이외에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전자산업거래진흥원 등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지적재산 분쟁에 있어서 제일 좋은 해결방법은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상<sup>2)</sup>으로 해결하는 것이며, 분쟁의 통상적인 해결방법은 재판에 의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급속한 기술 발전의 속도 앞에서 소송에 의한 전통적 분쟁해결제도는 역시 한계를 들어내고 있다. 즉 급속한 기술 발전으로 기술 및 기술제품의 life-cycle이 짧아짐에 따라 그와 관련한 분쟁의 해결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전제로 한 신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여기서는 간단하게 재판에 의한 분쟁해결 이외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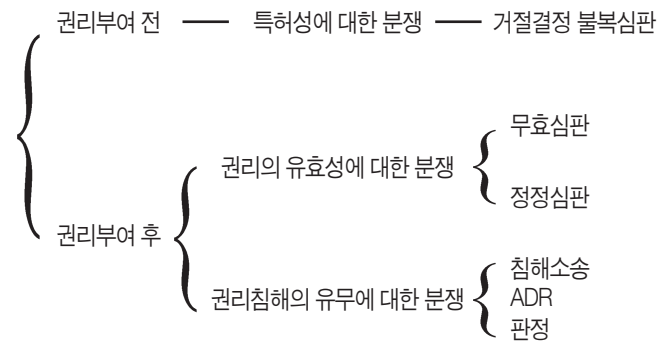
## 2. 지적재산권분쟁 해결방법으로서의 ADR 유형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분쟁의 해결방법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에 의하여 종국적인 판단을 받아 해결하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않고 이를 대체하는 이외의 방법이 있다. 특히 후자의 분쟁해결 방법은 ADR이라 하여 법률의 기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직성 등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것으로 그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ADR은 절차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과 설치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 및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절차구조를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ADR을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조정하는 조정형과 제3자적 입장에서 분쟁 사안을 審理·판단하는 판단형으로 분류한다. 조정형은 분쟁의 해결을 위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민사조정, 재판상의 화해, 조정 및 알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판단형은 먼저 제

3자의 심리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일반적 습意 하에서 절차를 개시하는 것으로, 판정이나 중재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sup>3)</sup>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수단의 유형



설치운영기관을 중심으로 분류하는 방법은 司法型과 行政型, 그리고 民間型으로 나눌 수 있다. 사법형은 법원 내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 민사조정과 家事調停, 재판상의 화해 등을 들 수 있으며, 행정형은 독립 행정위원회나 행정기관 등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일본 특허청의 판정제도와 같은 것이고, 민간형은 공익형과 업계형으로 다시 분류할 수 있으며, 민간조직이나 변호사회, 업계단체 등이 운영하는 것이다.

## 3. 일본에서의 ADR 현황<sup>4)</sup>

### 가.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 개요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는 1998년 4월 1일 지적재산권분쟁의 전문해결 ADR은 일본변호사회와 일본변리사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업소유권 중재센터”로 출발하여, 2000년 8월에 사단법인 일본 네트워크 인포메이션 센터(JPNIC)와 협정을 체결하고 JPNIC에 등록<sup>5)</sup>하고 있는 인터넷에서

2) 일반사회에서는 “對話”의 의미로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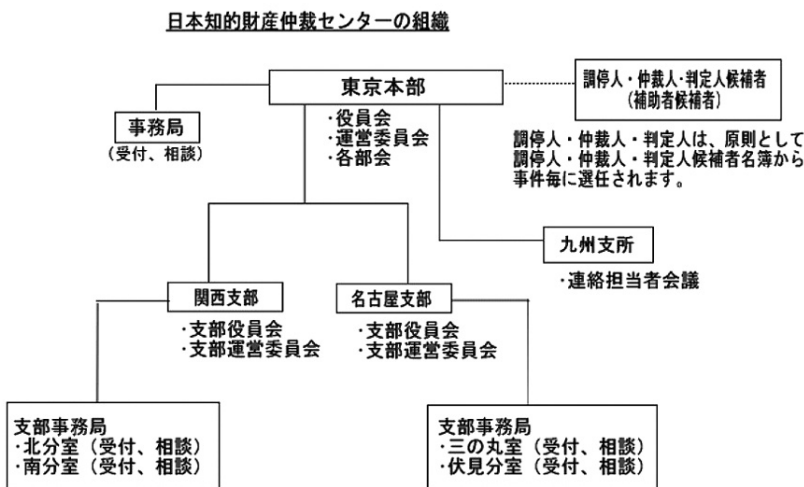
3) 윤선희, “일본에서의 지적재산관련 조정·중재제도” 『법조』통권 573호, pp.200-201 재인용.

4) 이하의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에 관한 현황자료는 <http://www.jp-adr.gr.jp/>에서 참고한 자료임

5) JPNIC는 2002년 4월 1일부터 등록 업무를 주식회사 일본 레지스트리 서비스(JPRS)에 이관되었다.

사용한 JP 도메인명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JP도메인명에 관한 인정 분쟁처리기관” 이 되었다. 이후 2001년 4월에 명칭을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로 고치고 업무 범위를 공업소유권(산업재산권)으로부터 지적재산권으로 확대하였다. 더욱 2004년 3월부터 “센터 판정”라고 하는 새로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적재산의 분쟁상담, 중재, 판정, 조정에 관한 분쟁해결절차, JP도메인네임의 등록 및 분쟁해결절차, 법률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있다.

나.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의 조직



조직은 東京-東京本部事務局(도쿄-도쿄 본부 사무국), 大阪-関西支部北分室(오사카-칸사이 지부 북 분실), 大阪-関西支部南分室(오사카-칸사이 지부 남 분실), 名古屋-名古屋支部三の丸分室(나고야-나고야 지부 3의 환 분실), 名古屋-名古屋支部伏見分室(나고야-나고야 지부 후시미 분실), 福岡-九州支所(후쿠오카-규슈 출장소), 北海道-北海道支所(홋카이도-홋카이도 출장소)가 있다.

다.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 업무

1) 상담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는 변호사 혹은 변리사 1명 혹은 변호사 및 변리사 각 1명으로 구성하여 지적재산 분쟁에 관련된 상담을 접수하고 있다. 상담은 센터의 회의실 등이나 센터가 지정한 장소에서 조정인·중재인·판정인 후보

자, 동 보조자 후보자를 포함한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 의해서 행한다.

상담에 따른 상담료는 1명의 상담 담당자에 의한 경우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10,500¥(이하 『엔』이라 한다), 1시간을 초과할 때의 초과 요금은 30분마다 5,250엔이다. 변호사 및 변리사의 합계 2명의 상담 담당자에 의한 경우는, 1인이 상담하는 상담료에서 80% 증가된다. 만약 상담 시간의 부족이나 관련 자료의 부족, 그 밖의 이유에 의하여 해당 상담일에 상담이 종료되지 않고 상담 신청자로부터 계속 상담을 받고 싶다는 취지가 있으면 상담 담당자에 의한 계속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상담 신청자의 청구가 있으면 상담과 회답의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한 “상담 기록”을 작성해 준다.

회사가 지적재산에 관한 경영 판단을 할 때에는 좀처럼 좋은 판단 재료가 없어 난처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익숙하지 않는 지적 재산 분쟁에 있어서 간단한 질문이나, 감정서를 받는 정도에 관한 것도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이미지만이라도 잡고 두고 싶은 경우에는 위 상담 기록을 가지고 이것을 기초로 사내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회사의 장이 경영 판단을 할 때의 사전 준비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상담 기록의 작성에는 구두상담 1시간 당 10,500(상담 담당자 2명의 경우는 18,900엔)엔의 상담료가 부가되며, 상담 기록 1통에 대해 52,500엔의 작성료가 부가된다. 또한, 2명의 상담 담당자에 의한 상담의 경우는 상담 담당자마다 각각 2통의 상담 기록을 작성한 것도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라도 견해가 나누어질 것 같은 어려운 안건에 있어서는 리스크 절감을 위해 여러 전문가에 의한 상담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센터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한 번의 절차에서 가능하다.

상담료

| 상담자 수  | 상담료(1시간)       | 초과요금         | 상담기록작성료     |
|--------|----------------|--------------|-------------|
| 1명의 경우 | 10,500엔(소비세포함) | 30분마다 5,250엔 | 1통에 52,500엔 |
| 2명의 경우 | 18,900엔(소비세포함) | 30분마다 9,450엔 |             |

상담에 관련된 안건에 관하여, 상담자가 상담 담당자에

게 위임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상담 담당자가 해당 안전을 수임하는 것이 원칙으로 가능하고, 다른 변호사 또는 변리사에게 위임을 희망한 경우는, 당 센터의 운영 위원회가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상담 및 그 후의 수임에 대해 생기는 분쟁에 관해서는, 전부 상담 담당자에게 책임이 있고, 센터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상담은 예약제를 하며, 사무국에서 접수일 다음 영업일 이후에 일정 조정된 후에 진행하게 된다. 상담 일시는 원칙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의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단, 축제일에 즈음한 경우는 제외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쪽은 신청 용지<sup>6)</sup>에 기입하신 후,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 사무국에 FAX 또는 E-mail로 연락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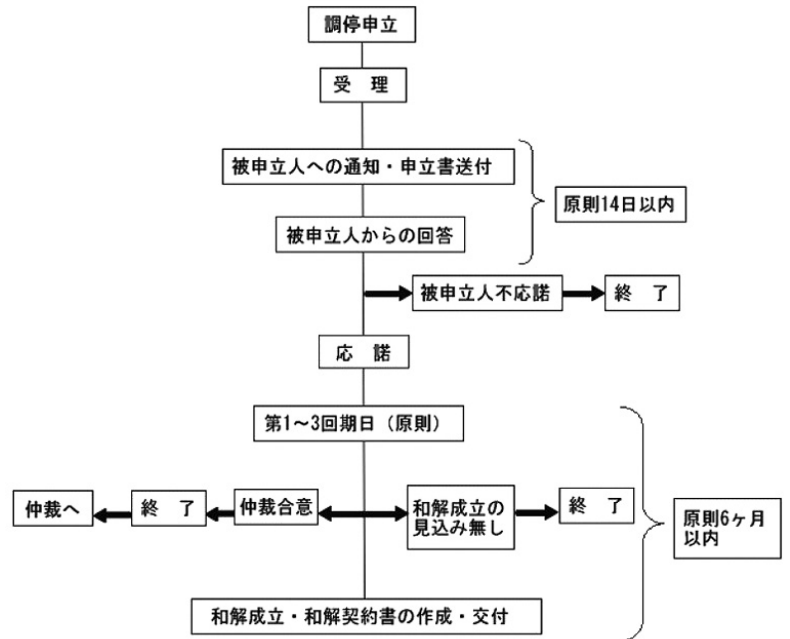
## 2) 조정

### 가) 센터에서의 조정

조정이란 조정인이 분쟁당사자에게 해결안을 제시하는 등,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에 의한 분쟁해결을 도모한 절차이다. 본 센터에 조정절차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센터의 조정인 후보자 명부의 중에서 원칙으로서 변호사 1명, 변리사 1명 합계 2명이 조정인으로서 선임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된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면, 위 명부의 내외를 묻지 않고 희망의 조정인을 선임한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조정절차는 당사자 쌍방의 승낙(합의)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절차이기 때문에 조정의 진행 중에도 조정에 의한 해결을 바라지 않는 경우는 언제라도 조정을 그만둘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불응하지 말고, 우선 출석하고 이야기를 듣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 나) 조정의 처리 흐름



### 다) 대리인 및 조정인

조정 신청 및 수행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변호사, 변리사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대리권을 인정되고 있는 자 또는 센터가 상당하다고 인정한 자인 것이 필요하다.

센터의 조정인 후보자<sup>7)</sup>는 변호사, 변리사 및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고 있고<sup>8)</sup>, 조정인으로서 선임된 자는 각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에 몰두한다.

한편의 당사자가 신청인으로서 조정 신청서의 정본 1통을, 피신청인과 조정인의 합계 인원수 분의 사본과 동시에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의 접수창구에 제출해야 한다.

조정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이하 동일), 주소(또는 거소, 이하 동일)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 번호, 전자 메일주소) 및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대리인을 정한 경우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분쟁

6) <http://www.jp-adr.gr.jp/soudan/soudan.doc>

7) 조정절차가 시작하고 조정인으로서 선임되어야 처음으로 조정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정인 후보자라 한다.

8) 조정인 후보자의 일람 및 상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http://www.jp-adr.gr.jp/meibo/meiboitiran2.html>)를 참조바람.

의 개요, ④ 신청한 해결의 요지, ⑤ 조정인의 수를 1명 또는 3 명이라고 하는 때에는 희망하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정 신청에는 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인 때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sup>9)</sup> ②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 ③ 특허공보나 상표공보 등, 분쟁의 기초로 된 권리의 내용을 나타내는 증거서류, ④ 상기 ③의 서류 이외의 증거서류, ⑤ 상기 ③과 ④의 증거서류의 사본(피신청인과 조정인의 합계 인원수 분)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①, ②, ③의 서류는 신고와 동시에, ④, ⑤의 서류는 신고와 동시에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출석한 의사를 표명한 후 신속하게 각각 제출하면 된다.

라) 조정에 관련된 비용

신청 수수료는 5만 엔이고, 조정 신청 시에 신청인이 부담하고, 센터의 조정절차 규칙 소정의 사유로 신청이 각하될 때 또는 피신청인이 조정절차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그 중 3만 엔이 반환된다.

기일 수수료는 1회에 5만 엔이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원칙으로 각각 같은 액(5만 엔/1회)의 기일 수수료를 각 조정 기일의 절차 종료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지급하게 된다.

화해 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곧 각 당사자는 금 15만 엔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5만 엔의 범위에서 증감된 다른 30만 엔의 증감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 외에 조정절차<sup>10)</sup>에 있어서 통역, 번역, 검증, 실험, 출장, TV 회의를 행할 때의 회선 사용료 등의 실비는 원칙으로서 양 당사자가 평등하게 부담합니다.

기일 수수료 및 화해 계약서 작성·입회 수수료는 조정인이 3명 및 1명의 경우에 각각 상당액이 증가한다. 또한, 개인, 소규모 기업 또는 단체, 공익성이 높은 단체 등으로 일정한 경우 상기 수수료에 관하여 감액 특례의 적용을 신청한 것이 가능하다.

3) 중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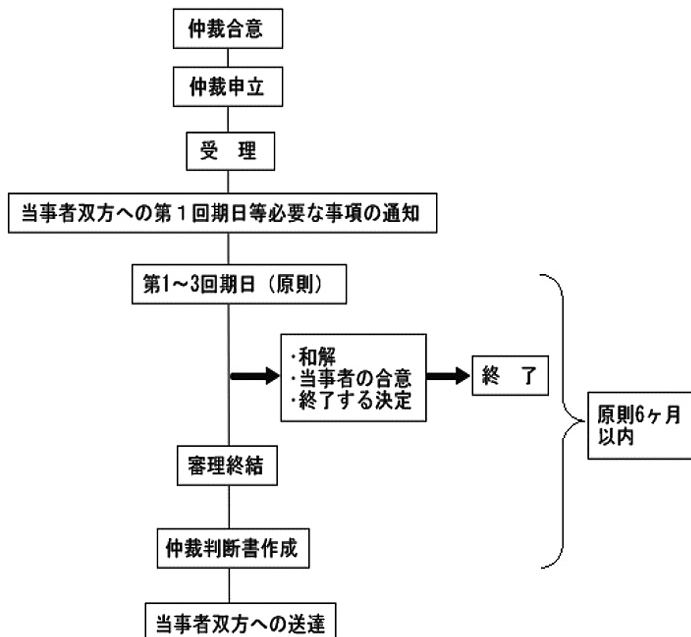
가) 센터에서의 중재

센터의 중재는 법적인 의미에서의 중재이며, 분쟁당사자의 사이에 중재 합의(중재계약) 즉 “1명 또는 수명의 중재인을 선임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판단을 하여, 쌍방이 이것에 따른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것이 필수인 전제이고, 중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분쟁의 해결을 시도해 보는 절차인 조정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중재 합의가 성립하고 당 센터에 중재의 신청이 이루어지면 분쟁의 해결은 변호사·변리사가 적어도 각 1명 참가하고 구성된 3명의 중재인의 판단에 맡겨진다. 양 당사자가 원한다면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1명씩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을 당 센터가 선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중재인이 한 중재 판단은 분쟁당사자를 구속하고 원칙적으로 불복의 신청(재판을 포함)은 가능하지 않다.

나) 중재의 처리 흐름



9)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서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

10) 조정절차는 조정절차 규칙에 따라 행해진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의 홈페이지([http://www.jp-adr.gr.jp/choutei/kisoku\\_choutei.pdf](http://www.jp-adr.gr.jp/choutei/kisoku_choutei.pdf))에서 참조 가능하다.

#### 다) 대리인 및 중재인

중재의 신청 및 수행은 당사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변호사, 변리사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대리권이 인정되고 있는 자일 것을 필요로 한다.

센터의 중재인 후보자<sup>11)</sup>는 변호사, 변리사 및 학식 경험자로 구성되고 있고<sup>12)</sup>, 중재인으로서 선임된 자는 각각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고,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을 하게 된다.

#### 라) 중재의 신청

일방의 당사자가 신청인으로서 중재 신청서의 정본 1 통을 피신청인과 중재인의 인원 만큼의 사본과 동시에 일본 지적재산중재센터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중재 신청서에는 ① 당사자의 성명(또는 명칭. 이하 동일), 주소(또는 거소. 이하 동일)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 메일주소) 및 당사자가 법인인 때는 그 대표자의 성명, ② 대리인을 정한 경우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신고의 취지 및 신고의 이유, ④ 증거방법(필요한 경우)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중재신청에 있어서는 ① 분쟁을 센터의 중재에 위임한 취지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증명한 서면(중재 합의서), ②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이 법인인 때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한 서류,<sup>13)</sup> ③ 대리인에 의하여 신고를 할 때는 위임장, ④ 증거서류, ⑤ 증거서류의 사본(피신청인과 중재인의 인원수 만큼)과 같은 첨부서류가 필요하다.

#### 마) 중재에 관련된 비용

신청수수료는 10만 엔이고, 중재 신청 시에 신청인이 부담하고 당 센터의 중재절차 규칙 소정의 사유로 신청이 각하될 때는 그 반액(5만 엔)이 반환된다.

기일 수수료는 1회에 10만 엔이며, 신청인 및 피 신청인

은 원칙으로서 각각 같은 액(10만 엔 / 1회)의 기일 수수료를 각 중재 기일의 절차 종료 후 곧 지급한다.

중재 판단서가 작성될 때는, 그 송달 후 곧 각 당사자는 20만 엔을 지급한다. 또 중재절차의 과정에서 화해 계약이 성립할 때는 그 후 곧 각 당사자는 15만 엔을 지급한다.

중재절차<sup>14)</sup>에 있어서 통역, 번역, 검증, 실험, 출장, TV 회의 등을 할 때의 회선 사용료 등의 실비는 원칙으로서 양 당사자가 평등하게 부담합니다.

#### 4) 판정

##### 가) 센터에서의 판정

당 센터는 2004년 3월부터 새로운 업무로서 특허 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특허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 어떠한가를 판단하는 무효 판정 등의 판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허청이 행하고 있는 판정(일본 특허법 제71조, 실용신안법 제26조, 의장법 제25조, 상표법 제28조)과 구별하기 위해 “센터 판정”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판정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며, 특허법에서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의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유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차이점이라면 우리나라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자신의 권리를 실시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와 저촉하는 경우에 확인하거나 제3자의 특허권이 자신의 특허권에 미치는지를 확인하는 것임에 반하여 센터 판정의 경우 이러한 권리범위의 확인을 통해 특허의 무효사유가 있는지가 판단한다는 데 있다.

센터 판정의 범위는 ① 특정한 물건 또는 방법이 특허 발명 또는 등록 실용신안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가 아닌가, ② 특정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및 이것에 유사한 디자인의 범위에 속하는가 아닌가, ③ 특정한 표장이 상표권 또는 방호 표장 등록에 근거한 권리의 효력의 범위에 속하는가

11) 중재절차가 시작하고 중재인으로서 선임되고 처음으로 중재인이 되기 위해(때문에) 그때까지는 중재인 후보자와 말한다.  
12) 중재인 후보자의 일람 및 상세한 것은 <http://www.jp-adr.gr.jp/meibo/meiboitiran2.html>를 참조바람.  
13) 해당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무국에서 입수한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행일부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14) 중재절차 규칙 : [http://www.jp-adr.gr.jp/chuusai/kisoku\\_chuusai.pdf](http://www.jp-adr.gr.jp/chuusai/kisoku_chuusai.pdf)

아닌가이다.

무효판정은 특정한 특허, 실용신안등록, 등록디자인 또는 상표등록(방호 표장 등록을 포함. 이하 동일)에 관하여 특허 또는 등록에 무효 사유가 있는가 아닌가의 판단을 한다.

센터 판정에는 신청인이 선택한 것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행한 단독 판정과 신청인 및 신청인이 지정한 피신청인이 각각 제출한 주장 및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행한 쌍방 판정이 있다.

쌍방 판정은 당 센터가 쌍방 판정의 신청을 수리한 경우 신청서의 사본을 첨부하고 피신청인에게 신청이 있던 사실 및 통지 수령의 날부터 10일 이내에 판정 절차에 참가에 대해 승낙하는지 아닌지의 회답을 하도록 문서로 통지하고, 피신청인에 의한 승낙이 있는 경우만 쌍방 판정을 행한다. 또한, 쌍방 판정의 신청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승낙하

지 않는 경우는 단독 판정을 구한다는 선택도 가능하다.

피신청인은 범위 판정의 절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대항하고, 본 건에 관하여 무효 판정(이하 “대항무효판정”)을 청구할 수 있고, 대항 무효 판정 청구는 신청에 관련된 판정 청구라고 병합해서 심리된다.

센터의 판정심리는 원칙으로서 구술심리이다. 단독 판정에 있어서는 센터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 쌍방 판정에 있어서는 센터가 답변서를 수리한 날로부터 4월 이내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한다. 센터 판정의 결론은 판정서를, 단독 판정에 있어서는 신청인, 쌍방 판정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에 송부하는 것에 의하여 고지받게 되고 판정서에는 이유가 부착된다.

센터 판정은 당 센터가 선임한 전문가인 판정인의 의견이므로 누구에게나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센터 판정에 대한 불복의 신청(재판을 포함)은 불가능하다.

발명특허 2009. 1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uestion** 국제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로 보정할 수 있습니까?

**Answer**

- 국제출원이 국제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국제출원의 공개언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어출원의 경우도 공개된 언어인 영어로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Question** PCT 출원 후 출원인 변경 또는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 PCT 출원 후 출원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출원인은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에 변경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수리관청은 국제사무국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국제사무국은 출원인 또는 수리관청의 요청에 따라 출원인의 성명 등을 변경합니다.
- 출원인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신고구분]을 "출원인변경"으로 체크하여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장)를 첨부하고, 권리 양도에 의한 양수인이 변경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양도증 등)와 인감증명서도 첨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원인의 명칭은 변함이 없으나 단순히 명칭 및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 "출원인정보변경신고서(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에 [신고구분]을 "출원인 정보변경"으로 체크한 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명서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생략정보를 기재하고, 증명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국제출원언어가 영어 또는 국어인 경우 출원서(Request)의 기본 데이터가 영문임을 감안하여 변경되는 모든 데이터는 영문이 기본이 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Question** 국제사무국에 대한 보정은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Answer**

- 출원인은 국제조사보고서의 송부일로부터 2월과 우선일로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하는 날까지 국제사무국(IB)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Art 19(1), Rule 46) 그러나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한 경우에는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보정을 할 때 출원인은 보정되는 청구항을 포함하는 대체용지(Replacement Sheet)와, 보정 전의 청구범위와 보정 후의 청구범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기재한 서한(letter)을 제출하여야 해야 합니다.
- 출원인은 보정내용과 보정으로 인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영향을 기재한 간단한 설명서(statement)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명서에는 국제조사보고서 또는 국제조사보고서에서 인용된 기술문헌의 관련성에 대하여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을 포함하여서는 안 됩니다.

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배진용**  
특허청 사무관/ 공학박사

**[목차]**

1. 들어가며
2.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 I. 일본의 고민
  - II.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3. 글을 마치며

## 1. 들어가며

지난 호에서는 일본 지재권의 역사,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한·일 특허분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일본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의 특허출원국가<sup>1)</sup>이면서, 동시에 세계 2위의 기술무역수지 흑자국<sup>2)</sup>으로서 지재권 분야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10년의 불황의 터널을 통과한 일본 기업은 2004년 이후에 성장하는 한국 전자업체에 대하여 본격적인 ‘지적재산 법률전쟁’을 선포하였고, PDP(Plasma Display Panel)와 LED(Light Emitting Diode) 분야를 중심으로 한·일간의 특허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 한국이 전자 및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기업을 능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분쟁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함을 고찰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의 일본 지재권의 역사와 한·일 특허분쟁에 이어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기간을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변화하는 일본 지식재산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 I. 일본의 고민

경제 대국인 일본의 고민은 무엇일까?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비영리 기관인 IMD(국제경영개

1) 2007년 특허출원 현황 : 1위 미국(438,576건), 2위 일본(396,291건), 3위 중국(245,161건), 4위 한국(172,469건), 5위 독일(60,992건)

2) 2006년 기술무역수지 흑자국 현황 : 1위 미국(359억 달러), 2위 일본(46억 달러), 3위 영국(36억 달러), 4위 프랑스(29억 달러), 5위 스웨덴(23억 달러)

발원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일본의 고민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좋은 단서가 된다.

표1은 1992년부터 현재까지 IMD 국가경쟁력 순위를 나  
 타낸다.

표1. 1992년부터 현재까지 IMD 국가경쟁력 순위

| 순위 | 1992년 | 1996년  | 2000년  | 2002년  | 2004년  | 2008년  |
|----|-------|--------|--------|--------|--------|--------|
| 1  | 일본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미국     |
| 2  | 독일    | 싱가폴    | 싱가폴    | 핀란드    | 싱가포르   | 싱가포르   |
| 3  | 스위스   | 홍콩     | 네덜란드   | 룩셈부르크  | 캐나다    | 홍콩     |
| 4  | 덴마크   | 일본     | 핀란드    | 네덜란드   | 호주     | 스위스    |
| 5  | 미국    | 덴마크    | 아일랜드   | 싱가포르   | 아이슬란드  | 룩셈부르크  |
| 6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룩셈부르크  | 덴마크    | 홍콩     | 덴마크    |
| 7  | 오스트리아 | 네덜란드   | 스위스    | 스위스    | 덴마크    | 호주     |
| 8  | 스웨덴   | 룩셈부르크  | 캐나다    | 캐나다    | 핀란드    | 캐나다    |
| 9  | 아일랜드  | 스위스    | 아이슬란드  | 홍콩     | 룩셈부르크  | 스웨덴    |
| 10 | 핀란드   | 독일     | 오스트리아  | 아일랜드   | 아일랜드   | 네덜란드   |
|    |       | 한국(27) | 일본(24) | 한국(27) | 일본(23) | 일본(24) |
|    |       |        | 한국(28) | 일본(30) | 한국(35) | 한국(29) |

1993년까지 일본은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제1  
 위를 고수하던 일본이 1996년 이후에는 급속도로 국가경  
 쟁력이 저하되고, 급기야 2002년에는 한국(제27위)보다 아  
 래인 제30위까지 급속하게 추락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국가경쟁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0  
 년대 초반 일본 부동산과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하여 자산  
 가격의 저하, 부실 채권의 급증과 함께 기업의 생산성 감소  
 및 실업 증가에서 찾을 수 있지만,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친 특허  
 (Pro-Patent) 정책<sup>3)</sup>으로 인하여 미국의 원천특허를 개량하

여 응용하는 일본의 캐치업(Catch-up) 시스템<sup>4)</sup>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친 특허(Pro-Patent) 정책은 연방순회 항소법원  
 (CAFC)가 특허청구범위 해석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하여 미국 기업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특허소송이 급증하게 되었으며<sup>5)</sup>, 일본 기업의 계속  
 된 패소와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서도 아시아 개발도상국  
 가의 기업에게 추격당함으로 인하여 일본은 새로운 지식  
 재산 정책이 필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표2는 1997년 일본 특허청에서 제시한 과거 10년간  
 (1986년~1995년) 미·일 연구개발성과 비교에 관한 자료<sup>6)</sup>  
 이다. 미국은 1986년부터 1995년의 10년 동안 99만 건의 특  
 허출원(내국인 출원)을 하였고, 16.3 조 엔의 기술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한 반면에 일본은 동(同) 기간에 미국의 4배 이  
 상인 440만 건의 특허출원(내국인 출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4.1 조 엔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특허출원은  
 많이 하였으나, 미국에 비하여 기술무역수지는 절대적인  
 약세에 놓이고 있으며, 첨단기술 분야의 원천특허가 절대  
 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기술 수입국임을 부인할  
 수 없는 데이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2. 과거 10년간(1986년~1995년) 미·일 연구개발성과 비교

| 구 분            | 일본       | 미국       |
|----------------|----------|----------|
| GNP            | 3,781조 엔 | 7,389조 엔 |
| 연구개발비          | 124조 엔   | 288조 엔   |
| 특허출원건수(내국인출원만) | 440만 건   | 99만 건    |
| 기술<br>무역<br>수지 | 수 지      | -4.1조 엔  |
|                | 수출액      | 3.5조 엔   |
|                | 수입액      | 7.6조 엔   |
|                | 4.6조 엔   |          |

3) 미국의 친 특허(Pro-Patent) 정책

1. 미국특허상표청(USPTO) 예상확충과 권한강화
2. 연방항소 순회법원(CAFC)의 설립과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판결
3. 특허의 재심사 제도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기간의 연장 등을 포함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특허법 개정
4. 생명공학이나 소프트웨어 등과 같은 신기술에 대한 특허대상의 범위를 확대
5. Bayh-Dole Act와 같은 미국 산업계로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법안을 입안
6. 지적재산권 문제와 연계한 미국의 총체적 무역정책
- 4) 선진기술을 모방 및 개량하여 저비용으로 생산효율을 높이는 시스템
- 5) 1992년 미국기업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미국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소하여 계류 중인 건이 1,691건,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은 5,014건
- 6) 일본 通商産業特許廳, 日本もこれからは知的創造時代, 1997

이러한 일본의 고민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6년 기준으로 미국의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은 359억 달러이고,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흑자액은 46억 달러로서<sup>7)</sup>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위인 미국에 비하여 7.8 배 이하이다.

즉, 미국 기업은 일본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특허출원을 하지만 기술무역수지는 7.8배 이상으로 우수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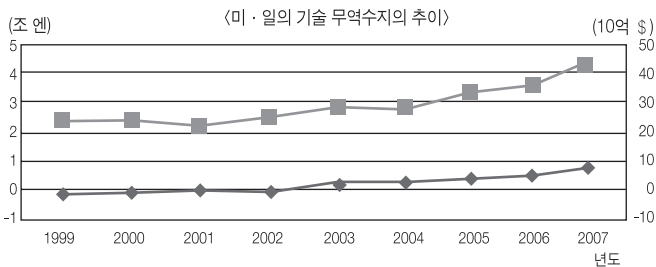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기업의 기술력이 일본 기업에 비하여 7.8배 이상 탁월한가?

물론 많은 기술분야에서 미국이 일본에 비하여 앞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일본에 비하여 7.8배 이상의 기술력을 지닌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특허제도가 미국의 국가 경쟁력에 상당히 공헌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림 1에서 나타난 미·일간의 기술무역수지 추이<sup>8)</sup>를 관찰하면, 2000년대 이후에 미국과 일본의 기술무역수지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1. 미·일간의 기술무역수지 추이



정리하면 1980년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하게 추진

된 친 특허(Pro-Patent) 정책은 1994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세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은 반면에 1993년까지 세계 최고의 국가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본을 2002년에는 세계 30위권으로 추락시킨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일본기업은 미국기업과의 특허 소송에서 계속하여 참패하였고,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경제성장률이 1%인 일본 경제의 침체기를 맞이하여 일본은 드디어 지식재산 제도의 정비를 추진하였다.

특히 2002년 일본의 IMD 국가경쟁력이 30위권인 시기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연구활동 및 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하여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의 목표로 한다.”라고 국회에서 발표하고, 이를 위해 “지식재산전략회의”를 창설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sup>10)</sup>.

2002년 7월 일본의 지식재산전략회의는 기존의 일본 과학기술기본법<sup>11)</sup>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을 고이즈미 총리에게 보고하였다.

즉 2002년의 “지적재산전략대강(知的財産戰略大綱)”은 일본판 친 특허(Pro-Patent) 정책을 종합 집결한 것이며, 지식재산의 강화를 통해 일본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대안을 보여준 것이다.

## II. 잃어버린 10년의 대안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의 대안으로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한 변화를 선택하였다. 표3은 일본의 변화를 정리<sup>12)</sup>한 것이다.

7) 매일경제신문, 「특허수지 적자 25억 달러 세계 5위」, 2008. 5. 13일자 기사.

8) 일본은 일본은행 “국제수지동향”, 미국은 상무부 “Survey of Current Business”, 한국지식재산연구원, “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Police 2008 미국·중국·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정책 Page 307 재인용” 2008

9) 일본의 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재정정책담당·정보통신기술(IT) 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과학대신, 후생성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 경제산업대신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국가적인 지식재산 전략회의

10) 김승균,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12

11) 과학기술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 과학기술에 관한 예산, 인재 등의 자원배분 방침 및 기타 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법

| 연도    | 국가시책      | 근거법      | 관 련 종합정책            | 추진 및 조정기관           | IP의 무게중심 | IP에 대한 정부의 시각       | 발명의 무게중심   |
|-------|-----------|----------|---------------------|---------------------|----------|---------------------|------------|
| 1995년 | 과학기술 창조입국 | 과학기술 기본법 | 과학기술 기본계획           | 종합과학 기술회의           | 특 허 보호   | 과학기술의 보호수단          | 개발발명 (기업체) |
| ↓     | ↓         | ↓        | ↓                   | ↓                   | ↓        | ↓                   | ↓          |
| 2002년 | 지적재산 건 국  | 지적재산 기본법 | 지적재산 전략대강 지적재산 추진계획 | 기적재산 전략회의 지적재산 추진본부 | 특 허 활용   | 기술혁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수단 | 원천특허 (대 학) |

잃어버린 10년 동안 일본의 지적재산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원천특허 획득을 지적재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6년부터 1995년까지 10년간 일본은 내국인 출원 기준으로 미국에 비하여 4배 이상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으나, 기술무역수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특허가 기업의 방어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기술의 원천이 되는 특허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박사급 인력과 연구자의 연구비가 집중되는 대학의 특허출원이 미비하고, 대학의 연구성과가 투명하게 산업계로 이전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였다.

일본 정부는 1997년부터 2000까지 대학의 기초연구성과를 산업계로 원활하게 이전하여 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조치를 다음과 같이 구축하였다<sup>12)</sup>.

- ▶1997년 : 대학교원 등의 임기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립대학 교직원의 겸업완화
- ▶1998년 : 연구교류 촉진법 개정 및 대학 등 기술이전 촉진법(일명 TLO<sup>13)</sup> 법) 제정
- ▶1999년 : 산업활력재생 특별조치법 제정 (일본판

Bayh-Dole Act)

- 국가의 위탁연구성과를 민간으로 이전을 법률화
- TLO 활성화 (특허료 등의 경감조치)

▶2000년 : 산업기술력강화법 제정

- 위탁연구에 관한 자금의 수입을 원활화(복수년도 계약 가능)
- TLO가 국립대학시설이 무상사용
- 국립대학교 교직원 및 연구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겸업 허용

일본의 선택은 대학을 통한 원천기술 획득이며, 이를 위하여 일본은 대학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국립대학교 교직원 및 공무원이 민간 기업에 겸업을 허가하여 자유로운 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 2) 대학의 TLO(기술지주회사)를 활성화하고 특허료를 경감하여,
- 3) 대학에서의 연구 성과를 산업계 및 민간으로 투명하게 이전시키는 제도를 확립하고,
- 4) 국가의 연구 성과를 산업계 및 민간으로 이전하도록 하는 일본 판 Bayh-Dole Act를 추진하였다.

둘째, 일본 특허청은 특허권의 조기취득과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변화를 선택하였다.

2000년 기준으로 일본의 특허심사 기간은 22개월로 미국의 14개월에 비하여 매우 느리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기술혁신과 기업 출원의 급증으로 인하여 일본 특허청의 심사처리 기간은 점점 늦추어지고 있었다.

일본 특허청은 “심사청구”가 있는 것만 심사하는 “심사청구제도”를 채택하고, 1999년 특허법의 개정을 통하여 심사청구기간 단축 (7년→4년)과 조기출원 공개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12) 김승균, “일본의 지식재산권 정책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12

13) 이상정 외 2명, “지식재산 인프라(Infra) 구축 방안 - 최근 일본의 정책동향을 중심으로 -”,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2.12

14) TLO : Technology Licensing Organization (대학의 기술지주회사)

15) 1993년 심사기준에서는 유전자를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함

16) 1997년 심사기준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CD-ROM, 플로피 디스크 등)만이 특허대상이 됨.

2002년 12월 개정된 심사기준에는 인터넷상에서 소프트웨어가 거대됨으로 인하여 기록매체와 관계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物의 발명으로 인정함

또한, 일본은 미국의 친 특허(Pro-Patent) 정책과 같이 생명공학<sup>15)</sup>과 컴퓨터 프로그램<sup>16)</sup>에 대한 특허 인정의 확대를 통하여 신기술 분야까지 특허 보호범위 확장을 하였다.

셋째, 일본은 법인을 설립하여 특허유통 활성화를 추구하였다.

지적창조에 의해 특허를 취득하는 자와 이를 이용하는 자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특허유통과 기술이전 시장을 정비하고, 일본 특허청은 1997년부터 “특허유통 촉진 사업”을 추진하였고, 2001년에는 특허유통을 법인화하여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獨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綜合情報官)”이라는 법인이 특허유통 사업을 이어받아 추진하였다.

이 법인은 1997년부터 2002년 3월까지 1,478건의 기술이전을 하였고, 2001년 12월 기준 투입비용의 약 2배인 260억엔의 수익을 얻음으로 인하여 성공적인 기술이전 사례를 만들게 되었다.

일본 특허청은 2000년대 초반까지 현존하는 약 90만 건의 등록특허 중에서 2/3인 약 60만 건을 이용하지 않는 휴면특허(休眠特許)로 추정하고,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관(獨立行政法人工業所有權綜合情報官)을 통한 특허유통, 대학의 TLO 및 일본 각지의 지적소유권 센터에 특허 상담원 파견, 과거 20년의 특허기술을 정리한 PM (Patent Map)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지식재산 거래사업이 육성을 적극 지원하였다.

넷째, 일본 법원은 강력한 특허권과 고액의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지나면서, 일본 법원의 판결도 친 특허(Pro-Patent)적인 판결을 하였다. 특히 1998년 일본 법원의 2가지 특허 판결은 강력한 특허권의 인정과 동시에 고액의 손해배상의 선고를 통하여 일본 특허사건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중대한 전환점을 가지게 되었다.

1998년 이전까지 일본에서는 균등론<sup>17)</sup>의 적용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이 있었고, 1998년 이전에 일본에서 특허침해가 인정되기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2월 28일 일본 대법원은 “보어스프라인” 사건<sup>18)</sup>에서 균등론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사건에서 제시한 균등론의 지침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 1) 특허청구범위와 대상제품의 상이한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닐 것(본질적 부분의 동일)
- 2) 상이한 부분을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동일한 작용·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목적 및 작용·효과의 동일)
- 3) 그 치환을 당업자가 제조시점에서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침해 시 용이성)
- 4) 대상제품이 출원 시에 있어서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닌 것
- 5) 대상제품이 출원절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것

특허사건에서 균등론의 인정은 곧 강력한 특허권의 인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본 친 특허(Pro-Patent) 판결의 기원이 되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98년 10월 12일 동경지방법원은 위례양 약품에 대한 일본에서 사상 최고액인 30억 5,936엔의 배상을 판결<sup>19)</sup>하여 기존의 최고금액<sup>20)</sup>에 4배를 넘는 고액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제 일본 법원은 특허권자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고, 침해 시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하는 친 특허(Pro-Patent)적인 판결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정부의 “지식재산 건국”이라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에 일본 법원이 적극 동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 정부는 특허사건의 관할을 집중과 특

17) 균등론 :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일부 구성요소가 상이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술적 가치가 균등한 발명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해석하는 이론

18) 最高裁 平6 1083號 無限摺動容ボアスプライン軸受事件 上告審判決

19) 東京地裁 平成5(ワ)11876 特許權 民事訴訟事件

20) 기존의 최고금액 : 7억 6100엔

허사건의 신속한 처리의 노력을 하였다.

일본 정부는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 부서가 설치된 동경지법(東京地法)과 대판지법(大阪地法)의 두 곳의 지방법원으로 지식재산 소송을 집중시키는 노력을 추진하여 2000년에는 전국 지재권사건의 71.6%, 특허사건의 87.5%가 두 지방법원에 집중하게 되었으며, 신속한 특허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특허전문 판사의 수를 확충하는 노력을 하였다.

### 3. 글을 마치며

본 지면을 통하여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993년까지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세계 제1위를 고수하던 일본은 1996년 이후에 급격하게 추락하고 2002년에는 한국(제27위)보다 아래인 국가경쟁력 제30위라는 추락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은 1990년대 초반 일본 부동산과 버블경제의 붕괴로 인한 자산가치의 저하, 부실채권 급증, 생산성 감소 및 실업증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은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미국의 친 특허(Pro-patent) 정책으로 미국의 원천특허를 모방 및 개량하여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일본의 캐치업(Catch-up) 시스템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일본 제조업의 가격경쟁력 부분에도 아시아 개발도상국 기업에 추격당함으로 인하여 일본경제는 불황의 터널에 더욱 깊이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국가경쟁력 회복은 바로 “지식재산 건국”이라는 새로운 일본의 국가시책을 통하여 일본판 친 특허(Pro-patent) 정책의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일본판 친 특허(Pro-patent) 정책은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원천특허 획득을 지적재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대학과 TLO의 변화를 추구하였고, 둘째, 일본 특허청의 특허권 조기취득과 보호범위를 확대하였고, 셋째, 특허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종합정보

관(獨立行政法人 工業所有權綜合情報官)을 설립하고, 지식재산 거래사업의 육성을 적극 지원하며, 넷째, 일본 법원은 균등론의 인정과 함께 특허사건에서 고액의 손해배상을 판결함으로 인하여 특허사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구하고, 동시에 친 특허(Pro-patent)적인 판결을 선고하며, 다섯째, 일본 정부는 특허사건의 관할을 집중시키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이러한 대안을 통하여 2004년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불황의 터널을 통과하고, 경제 회복의 시대를 맞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일본 기업은 미국의 원천특허를 모방 및 개량하여 저비용으로 생산하는 캐치업(Catch-up)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으며, 원천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본 기업의 불황탈출 원동력은 “돈만 생기면 연구개발에 투자했다.”라는 (주)한국후지제록스 다카스키 노부야 회장의 말처럼 일본 기업은 캐치업(Catch-up) 시스템을 포기하고 원천기술 개발의 추구로 기업의 속성을 변화하였고, 2002년 한국에까지 추월당한 일본의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다시 한국을 앞지르며 점차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제가 1998년 IMF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2009년 1월의 이 시점에 일본의 고민과 잃어버린 10년의 대안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다시금 모색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발명특허 2009. 1



# 중국특허(전리)분쟁지도

[연재 일정 안내]

| 연 재       | 목 차             |
|-----------|-----------------|
| 2009. 1월호 |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목적 |
| 2009. 2월호 | 중국의 전리제도        |
| 2009. 3월호 | 중국의 상표제도        |
| 2009. 4월호 | 기타 지적재산권 관련 제도  |
| 2009. 5월호 |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동향   |
| 2009. 6월호 | 중국 전리분쟁의 판례분석   |

\* 상기 연재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e특허나라(www.patentmap.or.kr)에서 전체 본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보고서 작성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한·중 수교는 한국의 교역지형을 미국·유럽 등 서방 중심에서 중국, 러시아 등의 주변국으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1년 중국의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가입 이후 교역규모면에서도 한국의 교역량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점유하는 비율은 2001년 11.8%에서 2007년에는 23.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7년도 대 중국 교역규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대 중 수출은 819억 달러, 대 중 수입은 630억 달러로 189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중국은 수출과 수입 면에서 미국,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제1 교역파트너로 자리매김하였다.

중국은 2001년 11월 WTO 가입을 계기로 세계교역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의 교역구도를 뒤바꾸는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WTO 가입으로 촉발된 중국의 대외 개방정책은 역내 투자자본의 집중을 불러왔으며, 세계 다국적기업의 R&D 관련 시설이 중국으로 집중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즉, 중국은 생산과 소비가 공존하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global 시장이라 볼 수 있으며, 외국기업들이 중국에 R&D센터의 설립 및 기업의 현지화를 서두르는 데에는 이러한 시장의 근본적인 속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중국 경제규모 및 R&D 역량의 성장은 한국의 대 중국 교역규모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반면, 해외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심화는 한국의 기술미래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공업 및 최첨단 산업으로 그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막대한 외국 투자를 배경으로 한 연구개발의 결과 중국의 기술력이 한국의 기술력과 대등 내지 매우 근접한 위치에 도달하고 있다는 점은 한국기업에 있어 향후 더욱 위협적 요소로 작용하리라 판단된다. 특히 산업적 경쟁관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보유 여부는 향후 국내기업이 중국을 포함한 세계시장에서 경쟁우위의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근원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중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를 각종 법규와 사법해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있어서 반면교사로 삼고자 한다. 즉, 중국 지적재산권제도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과거의 지적재산권 분쟁사례들의 정량, 정성분석을 통하여 국내기업의 중국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현지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에게 중국에서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일어날 경우, 국내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발명특허 2009. 1



# 특허기술 사업성 평가 통해 ‘티타늄의 대중화’ 구현

세계 최초 티타늄 부품소재 생산기술에 대한  
25억 가치평가기반



(주)엠티아이지



구리, 철 등의 금속에 비해 두 배 이상 강하고 가벼우며, 100년을 물 속에 넣어 두어도 녹이 슬지 않는 금속인 티타늄은 항공기에서부터 안경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응용이 가능해 이른바 꿈의 신소재, 인류 역사상 최후의 금속이라 불리며 인간의 생활과 관계가 깊은 철과 알루미늄 등의 기존 금속을 대체하고 있다.

미국의 과학자들이 순수한 티타늄을 추출한 1910년에서부터 시작된 티타늄의 역사는 1946년경 제련법이 확립된 후 광범위한 용도로 쓰이게 됐고, 몇 천년의 역사를 가진 구리, 철 등의 금속과 견줄 만한 산업의 발전과 함께 금속공업의 신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생산 초기 티타늄은 미국을 중심으로 엔진과 비행기 부품의 소재로, 일본에서는 화학공장의 열교환기 및 열발전소의 스팀컨덴서의 소재로 쓰였지만, 1990년대 이후 고급스럽고 다양한 색상을 가진 외관상의 특징을 발판 삼아 골프클럽, 장신구, 시계, 안경테 등의 일상 소비제품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한 친인체적, 친환경적 특징을 가진 금속이기 때문에 인체에 이식됐을 때 염증을 거의 일으키지 않아 인조뼈를 제조하는데도 사용되는 등 그 용도는 무궁무진하다. 그런 만큼 세계 티타늄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가장 큰 장애요소는 바로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다.

특히 국내의 경우 티타늄을 전혀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수입량의 대부분이 발전소 및 화학설비 등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이 입증된 만큼 수요는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티타늄 생산의 국산화는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

**순수 국내기술로 세계 최초**

**티타늄 부품소재 생산기술 개발**

(주)엠티아이지가 개발한 티타늄 분말사출성형(MIM) 기술은 티타늄 부품소재의 국산화의 숙원을 이룬 순수 국내 기술이다. 티타늄을 분말사출성형이 가능한 분말형태로 제조하여 복잡한 3차원 형상의 부품으로 만들어내는 (주)엠티아이지의 티타늄 분말사출성형 기술은 강도가 높고 견고해 절삭가공 때 많은 비용이 드는 기존 제조방식에서 탈피, 세계 최초로 원하는 크기와 3차원 형상의 부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어 원가절감률이 50% 이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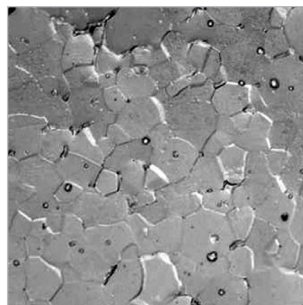
예를 들어, 반지를 만들 경우 기존 방식은 봉 형식의 티

타늄을 반지 굵기로 잘라 링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없는 티타늄의 원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주)엠티아이지의 티타늄은 링 형태로 티타늄 원자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원가가 낮아지는 것이다.

티타늄 기술의 국산화라는 쾌거를 이루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하는 (주)엠티아이지 기술연구진은 “티타늄의 경우 반응성이 매우 좋은 금속이라 공정 시 다른 원소들과 반응되어 오염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티타늄을 분말사출성형 공법으로 소결하니 사출성형체가 변형되고 균열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기술개발 당시를 떠올렸다. 이런 어려움은 오랜 연구 끝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결과 기계적 성능이 우수한 티타늄 부품과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현재의 티타늄 분말성형제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

**특허기술 평가 후 티타늄 시장진출 가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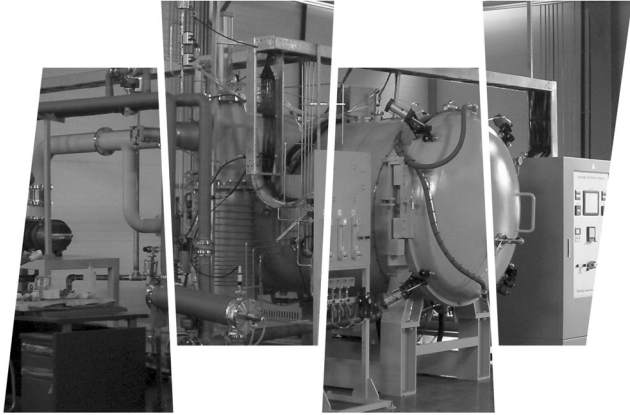
(주)엠티아이지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르면 (주)엠티아이지의 티타늄 제조 기술은 기존 가격의 50~60% 수준으로 부품을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성장이 더디던 국내 티타늄 관련 시장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또한 향후 의류 부자재, 주얼리 시장 등은 물론 소형 전자기기 및 통신용 부품, 생활가



광학 현미경으로 본 티타늄의 미세 구조



3차원 티타늄 형상의 전자현미경 미세구조와 SADD



엠티아이지가 직접 설계한 열처리로

전 분야까지 티타늄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더욱 광범위해질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처럼 (주)엠티아이지가 티타늄 부품소재 생산기술의 사업화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된 데는 특허기술 평가가 큰 역할을 했다. 첨단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이 없는 기업은 곧 복제를 당하거나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일반적인 통념과 순수 국내기술에 대한 공신력이 낮아 사업화 단계에서 한계를 절감하고 있던 (주)엠티아이지는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특허기술 평가수수료의 80%인 2천4백만 원을 지원받아 특허기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기술의 사업성을 25억 원 이상으로 평가 받으며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시장진출에 대한 문제들을 말끔히 해결했다. 기술평가를 받은 후 (주)엠티아이지는 국내 및 해외시장 진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 직원이 한 마음으로 '티타늄의 대중화'라는 목표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적극적인 평가결과 활용으로 안정적 사업화 박차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기술의 가치를 인정받은 (주)엠티아이지는 이 평가서를 적극 활용해 빠르게 안정제도에 오른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 대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등은 (주)엠티아이지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서만으로 먼저 제휴를 제안해 올 정도다. 또한 특허기술 평가서를 영문 및 일문으로 번역해 해외 마케팅에 활용, 뉴욕의 규모 있는 인공관절 제조회사가 직접 (주)엠티아이지를 방문해 제휴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외에도 (주)엠티아이지는 특허기술 평가서를 기반으로 티타늄 볼트·너트 시장과 티타늄 핸드피스 시장을 개척했으며 정수기용 티타늄 백금도금 극판, 휴대폰 케이스 및 사이드키, 휴대폰용 티타늄 키패드, 휴대폰용 티타늄 힌지, 티타늄 주얼리, 등산용 티타늄 스푼, 포크, 코펠, 전자기기제품 케이스 시장 등을 개척하며 티타늄 대중화를 위한 전진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특허기술 평가서를 받은 후 각종 자금 유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기술 평가기관이었던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가치 보증지원금을 추가로 받았으며 미국 Coam Trading Co.,Ltd.와 경기도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벤처창업) 보증지원금도 유치해 시장개척과 신소재 기술개발을 병행하며 국산 티타늄의 세계화를 위한 빠른 행보를 거듭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티타늄 분말사출성형기술을 개발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후 그 평가 결과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 기존 시장은 물론 고급 스테인리스 시장과 의료분야, 주얼리, 패션부자재, 기계부품, 공구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가고 있는 (주)엠티아이지가 세계 티타늄 시장의 정상에 설 머지않은 그 날을 기대해 본다.

휴대폰 부품은 물론 정밀부품, 주얼리 등 다양한 시장을 개척▶  
크기와 두께, 형태를 원하는대로 성형할 수 있는 티타늄 원자재▶



“공신력 있는 기술평가로 티타늄 대중화 꿈 이뤄”  
특허기술 평가서 번역,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

KBS 뉴미디어 국장을 역임하며 국내 데이터 방송과 한류 마케팅을 이끌었던 박영석 대표이사는 KBS 재직 당시 인연을 맺게 된 연구팀으로부터 티타늄 생산기술의 국산화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은퇴 후 그 기술에 대한 확신 하나만으로 (주)엠티아이지를 설립했다. “사실 금속에 대해 이는 건 별로 없었지만, 투자로 인연을 맺으며 알게 된 연구진의 노력과 기술의 현실화에 대한 확신만큼은 뚜렷했습니다”라는 박 대표는 (주)엠티아이지 설립 후 특허만 7개를 등록하고 지식경제부로부터 신기술 인증을 받으며 결국 티타늄 분말시출성형 기술을 국산화했다.

하지만 기술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사업화에 난항을 겪으며 잠시 주춤했다는 박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사업안내 메일을 받고 특허기술 평가를 신청했다. 특허기술 평가를 받는 동안 가장 주력했던 부분 역시 평가기관의 담당자들에게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키는 일이었다고 소회한 박 대표는 “이미 티타늄을 제조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도 이루지 못한 신기술이니만큼 평가담당자들도 기술의 완성도와 시장에서의 파급 효과 등에 의구심을 갖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서 45일간의 평가기간 내내 열심히 그리고 세심한 평가를 진행해 (주)엠티아이지의 기술이 가진 사업성을 제대로 평가해 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해 준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평가 후 (주)엠티아이지는 국내 신시장 개척과 동시에 해외 마케팅도 적극 추진 중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술 평가서이니만큼 해외 마케팅에 활용, 큰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이처럼 다양한 시장을 개척하고 있지만 시장을 독점하지는 않겠다고 단호히 말하는 박 대표는 경영학 박사로서 평소의 경영철학을 소신있게 표현한 “엠티아이지(MTIG, Material Technology Innovation Group)라는 회사명이 대변하듯 우리 회사는 끊임없이 기술을 혁신하는 기술 지주 회사가 되어 각 시장별 생산자와 유통, 마케팅 전문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

을 성장시키는 진정한 벤처기업이 되겠습니다”라며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

| 발명특허 2009. 1





www.coschemwax.com

## 폐비닐 및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이용한 왁스상태 물질의 제조 및 이의 제조장치

주식회사 코스캠

### 회사소개

주식회사 코스캠은 산업용 왁스인 폴리에틸렌 왁스 및 폴리프로필렌 왁스를 제조하는 회사로, 특히 기존의 왁스 제조 방법을 비연속인 뱃치식 제조방법을 탈피하여 당사가 소유한 특허 기술인 연속식 왁스제조 방법을 도입하여 종래 뱃치식 제조 방법으로는 이루기 힘든 고품질의 왁스 제품을 개발 생산하게 된 회사다.

당사는 특허기술 하나로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인 특허기술 사업성 검토를 이용하여 사업성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또한 한국 발명진흥회의 특허기술상설장터에도 참여하여 투자자 및 투자금 요청에 힘을 썼으며, 한국기술거래소를 통한 지역 사업설명회를 수행하기도 하여 본 특허기술의 사업화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사업화를 추진하던 바 투자 제의와 함께 사업화를 이루었다.

당사는 본 특허기술을 이용, 사업화와 함께 동시에 제품 생산을 함으로써 특허기술의 성공성에 초석을 이루었으며, 제품생산 3년 안에 흑자를 달성할 수 있는 업체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회사다.

당사는 사업초기 2년차에 100만 불 수출탑을 예약하고 있고, 계속해서 매년 300만 불 탑과 500만 불 탑을 지속적으로 수상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 회사로 수출 비중이 약 75%를 이루는 수출주도형 회사이다.

### 주요 연혁

2005. 12. 19. 창업(자본금 1,200백만 원)



COSCHEMWAX

- 2006. 01. 01. 사업자등록 및 사업개시
- 2006. 01. 16. 1차 600백만 원 증자  
(총 자본금 1,800백만 원)
- 2006. 03. 22. 공장동 기공(제조설비 도입 등)
- 2006. 07. 08. 공장준공 및 생산시설 가동 개시
- 2006. 08. 공장등록
- 2006. 12. 22. 벤처기업 등록(기술신용보증기금)
- 2007. 03. 15. 대표이사 변경(최재환 취임)
- 2007. 04. 01. 스타기업 선정(전북도 지정)
- 2007. 04. 09. 크린사업장 인증  
(산업안전관리공단/노동부)
- 2007. 07. 16. ISO 9001 인증
- 2008. 05. 22. 2차 벤처기업 등록(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 06. 05. 수출유망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청)
- 2008. 06. 13. 유망중소기업 인증(중소기업진흥공단)
- 2008. 07. 01. ISO 14001 인증
- 2008. 07. 25. 100만 불 수출탑 신청 중(무역의 날)

### I.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      | 출 원 |    |   | 등 록 |    |   |
|------|-----|----|---|-----|----|---|
|      | 국내  | 해외 | 계 | 국내  | 해외 | 계 |
| 특허   | 1   | 1  | 2 | 1   |    | 1 |
| 실용신안 |     |    |   |     |    |   |
| 디자인  |     |    |   |     |    |   |
| 합계   | 1   | 1  | 2 | 1   |    | 1 |

### II. 사업화 성공기술 개요(신청과제)

|            |   |   |         |           |            |                        |
|------------|---|---|---------|-----------|------------|------------------------|
| 관리명칭       | 페비닐 및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이용한 왁스상태 물질의 제조 및 이의 제조장치  |   |         |           |            |                        |
| 출원번호       | 제 2000-0020412  |   |         | 등록번호      | 제 0368040호 |                        |
| 제품적용 실적    | 적용 제품수  | 2 | 총 매출 실적 | 6,016백만 원 | 국내매출       | 2,699백만 원              |
|            |   |   |         |           | 해외매출       | 3,316백만 원(\$3,316,000) |
| 발명(고안)의 요지 | 본 발명은 산업 폐기물인 페비닐과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이용한 왁스 상태 물질의 제조방법 및 이의 제조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페비닐과 폴리올레핀계 수지를 열분해 공정으로 투입, 원하는 상태의 왁스상태 물질을 제조하는 기술로 종전의 뱃치식 제조 방법을 획기적으로 연속식 제조방법으로 도입함으로써 왁스상태 물질의 고품질화와 제조공정의 개선으로 높은 수출과 자동화를 이룬 발명임. |   |         |           |            |                        |

주) 동 매출실적은 본 특허출원부터 2008년 8월말 현재 누적임.

### III. 기술개발 과정

#### 1. 개발 배경

산업용 왁스는 일찍이 합성방법(Polymerizaion Method)이 발명되어 선진 3개국인 미국(2개사), 독일(2개사) 및 일본(2개사) 정도의 기술선진국에서 상업화되어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꾸준히 사용되어 온 제품으로 현재에도 연평균 약 20%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첨가제형 소재이다.

1980년대 초에 와서 폴리머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왁스화하는 또 다른 제조기술이 발명되어 한국 및 일본에서 상업화가 이루어졌다.

두 제조 공법이 이원화되면서 열분해형 왁스의 시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열분해형 왁스는 투자비가 적게(약1/10)드는 반면 왁스의 물성이 좀 떨어져 향

상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열분해 시 약 1,000 °C에 달하는 높은 온도가 문제가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만이 좀 더 시장을 접할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지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찾게 되었다.

### 가. 왁스의 제조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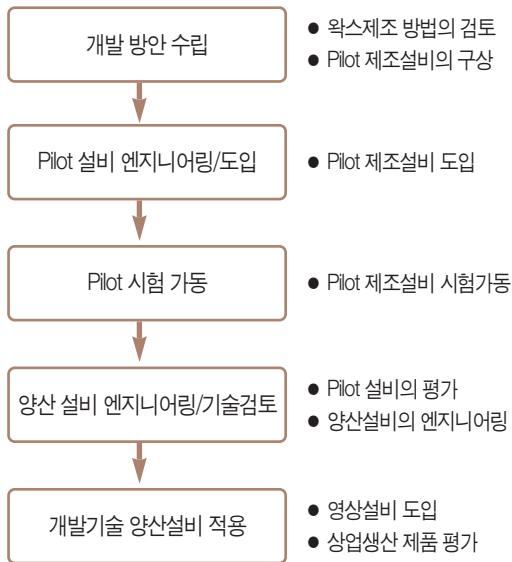
#### 1) 직접중합법



#### 2) 열분해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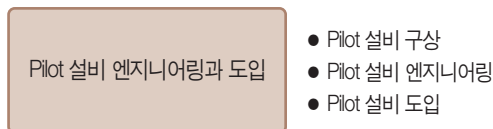


### 2. 개발 FLOW



### 3. 기술 개발 단계

#### 가. 1단계



#### 나. 2단계



### 4. 기존 기술과의 차이점

| 항목      | 당사제품 | 기존제품   |
|---------|------|--------|
| 제조공법    | 연속식  | 재래 뱃치식 |
| 제조공정    | 전자동  | 비자동    |
| 제품특성    | 상    | 중      |
| 생산방법    | 용이   | 복잡     |
| 생산수율    | 97%  | 91%    |
| 제품의 균질성 | 양호   | 비양호    |
| 부산물     | 소량   | 다량     |

## IV. 사업화 과정

### 1. 기존제품과의 차별화

| 항목   | 당사제품        | 기존제품  |
|------|-------------|-------|
| 제품품질 | 상           | 중     |
| 균질성  | 상향          | 보통    |
| 색상   | Light White | White |
| 내열성  | 상향          | 보통    |
| 분산성  | 상향          | 보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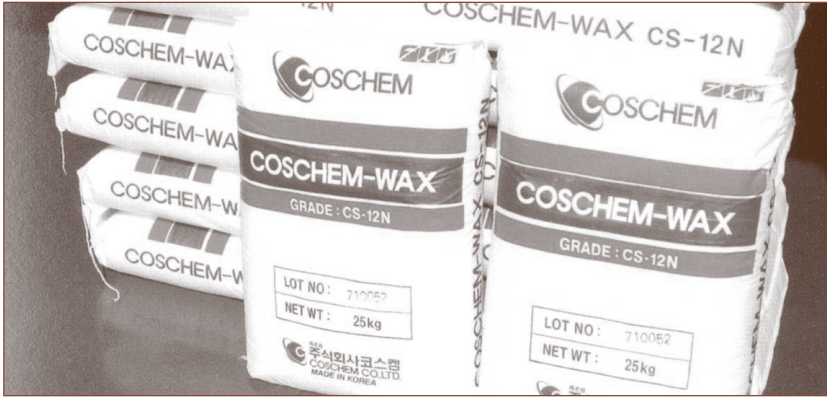
### 2. 사업화 과정에서 중점을 두었던 것 등

| 항목      | 내용                                |
|---------|-----------------------------------|
| 1. 투자유치 | 1) 투자 계획서 수립 및 설명회                |
|         | 2) 투자의 투명성 제공                     |
|         | 3) 투자자 유치 등                       |
| 2. 자금도입 | 1)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자금 유치(저금리 및 장기용자) |
|         | 2) 투자자 모집 등                       |

## V. 판매 및 유통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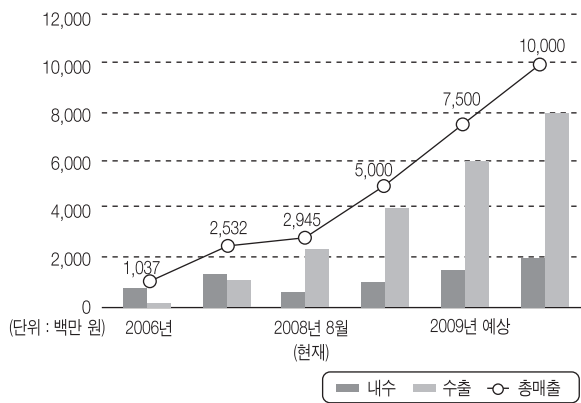
### 1. 매출 현황

| 연도        | 2006년 | 2007년 | 2008년 8월 | 2008년 | 2009년 | 2010년  |
|-----------|-------|-------|----------|-------|-------|--------|
| 총매출(백만 원) | 1,037 | 2,532 | 2,945    | 5,000 | 7,500 | 10,000 |
| 내수(백만 원)  | 874   | 1,426 | 612      | 1,000 | 1,500 | 2,000  |
| 수출(백만 원)  | 163   | 1,106 | 2,333    | 4,000 | 6,000 | 8,000  |
| 수출비율(%)   | 15.0  | 43.7  | 79.2     | 80.0  | 80.0  | 80.0   |



## COSCHEMWAX

### 매출현황



## 2. 유통과정

### 가. 내수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시장 상황

- 1) 연 평균 20% 정도의 성장.
- 2) 연 7,500백만 원 규모의 시장으로 3사가 치열하게 경쟁함.
- 3) 결제방법 등이 좋지 않은 시장 상황.

### 나. 해외시장의 규모는 크나 도전해볼 만큼의 시장 상황

- 1) 연 5,000억 원의 대규모의 시장
- 2) 초기 수출은 무역회사를 통한 로컬 수출을 진행하면서 서서히 당사의 브랜드를 알리기면서 직수출을 병행함.

## VI. 사업화 성공 요인

| 항목        | 내용   |
|-----------|--|
| 기술개발측면    | 1) 다년 간의 경험으로 생산기술 수립<br>2) 끊임없는 도전으로 새로운 기술의 도전 |
| 상업화 측면    | 1) 투자의 계획<br>2) 투자자에 대한 투자 권유 및 설득 성공            |
| 판매 및 매출증대 | 1) 매출증대를 위한 기술 영업 수행<br>2) 수출 주도의 매출방안 모색 및 수행   |

## VII. 향후 시장 동향

고유가의 원인으로 원료가격의 폭등과 제품가격의 인상이 불가피한 전개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에서 저가의 제품으로 수요가 물리는 상황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나름대로의 성장이 지속되리라고 봄.

### 1. 내수시장

- 가. 지속적으로 20% 정도의 연 성장률을 대비하는 계획 수립
- 나. 저가 제품의 개발
- 다. 특성을 부여한 왁스 제품을 개발하여 차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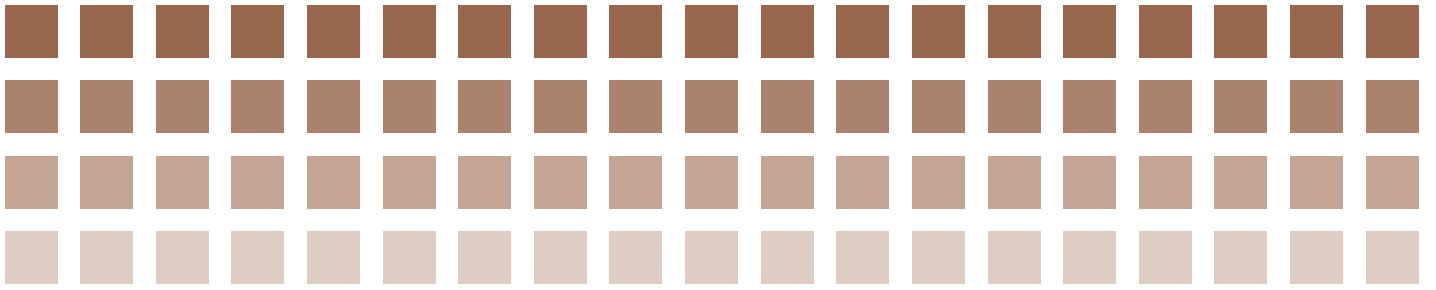
### 2. 수출시장

- 가. 지속적인 수출시장의 개발
- 1) 각종 전시회를 이용한 마케팅 전략 수립
  - 2) 해외 시장개척단 참여
  - 3) 해외 바이어 초청 등

제공 특허기술평가팀

발명특허 200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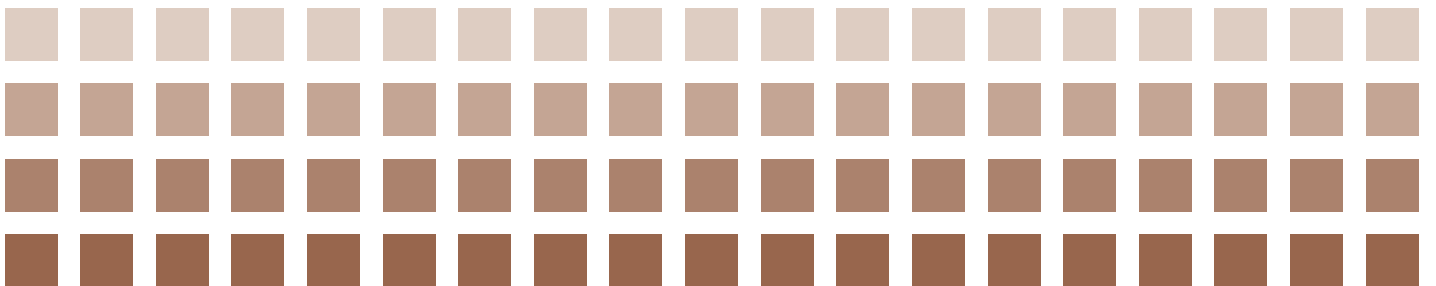
# IP Column

**산업재산권 길라잡이** 58  
산업재산권 길라잡이(14)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65

**발명칼럼** 66  
실험실로 들어온 팔레트

**지식재산강의** 70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 산업재산권 길라잡이(14)



## 백성호

중국 칭다오대학 교수  
법학박사, MBA  
중국전문가, 무형자산전문가  
[www.chinabaek.com](http://www.chinabaek.com)

### 3. 상표의 등록요건

#### 1) 서

상표의 등록요건에는 타법과 마찬가지로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이 있다. 다만, 상표법에서의 실체적 요건은 타법에 비해 매우 소극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특색이며(제6조 1항 참조), 절차적 요건은 타법과 같이 1상표1출원주의, 선출원주의, 국어주의 등 모두 동일하다. 넓은 의미에 있어 상표의 등록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업자가 자기의 상품에 사용하는 표지일 것(상표의 성립요건, 제2조 1항)

(2)자타상품식별력이 있을 것, 즉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되지 아니한다.(제6조 1항) 단, 사용으로 인한 식별력 취득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2항)

(3)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말 것(제7조 1항)

(4)기타, 인적요건 및 절차적요건을 갖출 것

#### 2) 인적요건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우리나라에서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는 자(개인 또는 법인)로서,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법인·개인·공동사업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의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다. 상표권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우리나라 국민(법인포함)은 모두 해당되며, 외국인은 상호주의원칙과 조약에 의거하여 그 자격이 결정된다.

#### 나. 상표의 '사용의사' 필요성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은 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사용사실'은 등록요건이 아니다. 그러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심사의 편의, 분쟁의 소지 미연방지 등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지만 불사용상표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요건으로서 상표등록출원인이 출원 시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요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장래에 당해 상표를 사용할 의사(Benutzungs wille)는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용의사가 없는 상표출원은 등록거절이유가 되며 심사관의 실수로 출원공고 및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의신청 및 무효심판, 취소심판의 대상이 된다. 상표법은 제3조에서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라고 규정하여 상표의 사용의사를 요구하고 있다.(제3조) 다만 상표 '사용의사'란 지극히 주관적인 요소로서 이를 심사관이 판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실제로 특허청의 상표출원사례에서는 많은 방호상표가 등록되고 있는 실정이다.

#### 다. 방호상표, 저장상표

방호상표(Defensivwaren)란, 어떤 특정상표를 타인이 사용 또는 출원(등록)할 수 없게 할 목적으로 재빨리 먼저 등록 받아두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방호출원은 오로지 방호(방어)의 목적만 있을 뿐 실제로 상표를 사용할 의사는 없으므로 등록을 거절하여야 옳으나, 현실적으로 심사과정에서 개인의 주관적인 내용인 '방호'의 목적임을 밝히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서 현실적으로 방호상표가 많이 존재한다.

저장상표(Vorratswaren)란, 당장 사용할 상표는 아니나 장차 사용할 의도로서 현재 등록받아 두는 상표를 말한다. 이러한 저장상표는 장래에 사용할 의사가 존재하므로 이는 방호상표와는 다르다. 즉 적법하다. 다만 그 저장기간이

무기한인 경우에는 언제까지 그러한 불사용상표를 보호할 수는 없으므로 일정기간(3년)동안 사용되지 않는 상표는 권리(상표권)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저장상표뿐만 아니라 모든 상표에 적용되는 규정이다.(제73조 1항 3호)

#### 3) 상표의 실체적 요건

##### 가. 의의

상표법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공익상 또는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표는 등록을 배제하고 있다. 이들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1항)

##### 나. 규정과 사례들

##### (1) 보통명칭으로 된 상표(제6조 1항 1호)

옥수수건과자-콘칩(대판 88후455), 복사기-COPYER(대판 86후67), 과자-호도과자, 자동차-Car

##### (2) 관용상표(제6조 1항 2호)

청주-정종, 직물-TEX, LON, 과자-깡(대판 73후43)

##### (3) 성질표시표장(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표시하는 표장으로만 된 상표, 제6조 1항 3호)

굴비-영광, 오징어-울릉도, 환경관련상품-무공해, GREEN, 기술관련상품-Hitec(대판 93후1100), 사과-대구, 기계-STANDARD, 두부-콩, 복사기-Quick Copy, 의류-Baby, 사과-2짝, 연필-육각, 햄-훈제, 타이어-전천후)

##### (4) 현저한 지리적 명칭(현저한 지명),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제6조 1항 4호)

국가명, 런던, 뉴욕, 동경, 한라산, 불국사, 해인사, OXFORD, MANHATTAN 등

(5)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제6조 1항 5호)

LEE, 김씨상사 등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제6조 1항 6호)

흔한 숫자로 표시된 것(123, 88 등), 또는 원형, 삼각형, 사각형 등

(7) 기타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표장(제6조 1항 7호)

- 구호상표 : 인류를 아름답게 사회를 아름답게
- 장소개념 : LAND, MART, CLUB, PLAZA, WORLD
- 관련업종 : 통신관련업(CYBER, NET, COM, TEL, WEB), 정보자료제공업(NEWS, DATA), 금융관련업(CASH, CARD, PASS)
- 기타 : 믿어주세요, 봉쥬르, THANK YOU, It's Magic(대판 94후906)

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취득상표

위의 (3)~(6)에 해당하는 상표라도 상표출원 전에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의 상품에 관련된 상표를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것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2항) 또한 (3)호(산지에 한함) 또는 (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표장이라도 그 표장이 특정상품에 대한 지리적표시인 경우에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제6조 3항)

#### 4) 상표의 부등록사유

가. 부등록사유(제7조 1항)

다음에 해당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국기, 국장, 파리조약동맹국의 훈장·포장, 적십자·올림픽

등과 같은 저명한 국제기관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예 : 무궁화 모양의 표장, UN, EC, GATT, OPEC

(2) 국가, 인종, 민족, 공공단체, 종교 등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

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는 상표

예 : 양키, 로스케, 니그로 등. 다만 백인, 흑인, 인디안 등은 일반명칭으로 봄

(3) 국가 또는 공공단체나 비영리 공익법인의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유사한 상표(제7조 1항 3호)

예 : YMCA, 보이스카우트, YWCA

(4) 공서양속을 문란케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 공산주의 찬양 상표, 사기꾼, 소매치기, 새치기, 뇌물, 가로채기 등 공중도덕감정 저해 상표

(5) 박람회상패·상장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

다만, 그 상패·상장 등을 받은 자가 당해 박람회에서 수상한 상품에 관하여 상표의 일부로서 그 표장을 사용할 때에는 등록가능하다.

(6) '저명한' 타인의 성명·상호 등을 포함한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등록가능하다.

(7) 선등록한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8) 상표권소멸 후 1년 이내에 출원한 그 소멸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이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어떤 등록상표가 사회에 존재하다가 소멸한 경우 그 등록상표에 대한 이미지가 일반인들에게 아직 남아있으므로 만약 그 상표권 소멸 후 1년 내에 그 소멸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제3자가 출원하여 이를 등록받게 되면 일반수요자가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게 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8-1)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이 소멸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9) 주지주지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9-1) 주지의 지리적표시와 동일한 유사한 상표

(10) 저명저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

(11)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예: 상표 중 ‘특허’, ‘KS’, ‘○○박람회’, ‘○○상 수상’

(12)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외의 유명상표를 도용 또는 모방하여 출원한 상표

(12)-1 주지·저명한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

(1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상표

(14) 세계무역기구 가입국 내의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증류주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 다만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출원을 한 경우는 예외

#### 나. 식별력 요부의 판단

(1) 식별력 요부의 판단은 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결합상표의 경우 그 상표의 구성부분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정상품에 관한 일반적 거래자 또는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위에서 말하는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이라 함은 “한글, 한자 또는 로마문자 등 문자의 인쇄체, 필기체로 표시하여 구성된 표장”을 말하고, “...만으로 된”의 의미는 보통명칭 등이 포함된 경우라도 식별력 있는 표장의 부기적 부분에 불과한 경우 또는 식별력 있는 표장에 흡수되어 불가분의 일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단순히 2 이상의 기술적표장을 결합한 경우는 제외된다.

#### 다. 상표와 지리적 표시

(1) 상표와 지리적 표시는 양자 모두 출처표시 기능 및 품질표시적 기능, 영업상의 이익과 관련되며 지식재산권의 범주 내에서 보호되는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상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러한 유사점 때문에 지리적 표시를 상표제도 내로 포괄하여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보호법’으로 규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리적 표시를 상표법상 단체표장 내지 증명표장으로 보호하는 나라도 있다.

(2) 그러나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 주는 표장인데 반하여, 지리적 표시는 당해 표시가 사용되고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고 있는 ‘특정지역’을 확인시켜 주는 표장이므로 지리적 표시는 상표와 같이 하나의 업자가 다른 경쟁자들을 사용으로부터 배제시킨다는 의미에서의 ‘독점적 소유자’는 없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우리나라는 2004년 개정상표법(2004.12.31 법률 제7290호)을 통해 2005년 7월 1일부터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보호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인제용대항태’와 같이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 등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그 상품이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즉,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품질이나 명성 등의 특성이 그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이나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의 인적 조건을 포함하는 지리적 환경에서 본질적으로 비롯되는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 라. 제재조치로서의 부등록사유

상표의 정당사용의무 위반으로 상표권에 대한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구 상표법하에서 상표권자는 그 상표권을 포기하고 그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재출원하여 동일내용의 상표권을 다시 취득하는 편법을 써왔었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고자 현행 상표법은 취소심판청구를 받은 후 당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일정기간동안(3년)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제7조 5항)

#### 5) 상표의 절차적 요건

가. 선출원주의(제8조)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먼저 출원한 자에게 등록을 하여

한다. 다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경우에는 동일 경합 출원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고 만약 협의불성립 경우에는 모두 거절하는데 비해, 상표는 동일경합출원 시에 협의한다는 점은 동일하나 만약 협의 불성립 시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따른다는 점이 다르다.(제8조 2항)

나. 1상표 1출원주의와 상품의 지정

(1) 상표등록출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 구분 내에서 상표를 사용할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마다 출원하여야 하는데 이를 '1상표 1출원주의'라고 하며, 하나의 출원으로 동시에 2 이상의 상표를 출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2) 한편 1998.3.1부터 '1상표1류1출원주의' 제도를 폐지하고 '1상표다류1출원주의'를 채택함에 따라 상표마다 출원하되 상표와 서비스업을 동시에 지정하여 출원할 수도 있게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1998.3.1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품류구분을 채택·사용하였으나, 1998.3.1 이후에는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업에 관한 국제분류인 니스(NICE)협정에 의한 국제상품분류를 채택·사용하고 있다.

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1) 의의

상표등록출원인은 동일상품류 구분 내에서는 1 또는 2개 이상의 상품을 일시에 지정할 수 있으나, 상표등록출원 후 또는 등록 후에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으면 별도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제출하여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이다.(제47조)

(2) 요건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요건은 원상표권 또는 원상표등록출원이 존재하여야 하고, 추가등록출원의 출원인은 등록상표의 상표권자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인과 동일인이어야 하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상표는 당해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상표와 동일하여야 하고, 통상의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거절이유

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3) 효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있으면 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에 합체되어 일체를 이루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함께 진행되고 원상표권이 소멸되면 추가등록도 함께 소멸된다. 그러나 무효사유의 존재여부나 상표권 침해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당초에 등록된 것과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판단된다.

라.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나, 10년 간씩 몇 번이고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으므로 상표권은 반영구적인 권리이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 싶을 때에는 존속기간만료 전 1년 이내에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하며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라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출원할 수 있으나, 일정액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출원의 보정·분할·변경

가. 출원의 보정

(1) 상표등록출원의 보정이란, 출원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의 흠결을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명령에 의하여 또는 출원인이 자진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원인은 최초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출원상표 및 그 지정상품을 보정할 수 있다.

(2) 요지변경이 되지 않는 범위의 보정

- ① 지정상품의 범위의 감축
- ② 오기의 정정
- ③ 불명료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것
- ④ 상표의 부기적인 부분의 삭제 (예컨대, 상표 중 '(주)', '주식회사' 삭제)

나. 출원의 분할

출원분할이란 2 이상의 상품류구분 내의 상품을 지정상

품으로 하여 상표출원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정상품이 속하는 상품류 구분별로 출원을 분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출원의 분할은 지정상품의 분할을 뜻하며, 상표의 분할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출원분할제도는 1개의 상표를 2 이상의 상품류구분에 각각 속하는 지정상품에 대해 출원한 경우 1상표 1출원원칙 위반으로 거절이유가 통지되었을 때 출원인의 구제수단으로서 인정되는 제도이다.

#### 다. 출원의 변경

출원의 변경은 상표등록출원, 서비스표등록출원, 단체표장등록출원상호간에 인정되고,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 및 업무표장등록출원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기초가 된 등록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 또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거나 그 등록상표가 소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무효심판이나 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무효나 취소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등 상표제도를 악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출원변경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타법 영역으로의 출원의 변경(상표와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호간의 출원의 변경)은 인정되지 않으며, 신규의 상표등록출원이나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호간의 출원변경도 인정되지 않는다.

### 4. 심사 및 등록절차

#### 1) 심사절차

##### 가. 절차

- (1) 일정한 방식심사 후 담당심사관이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한다.(제22조)
- (2) 심사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상표공보에 공고한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제24조)

(3) 심사결과 거절이유 발견 시에는 그 이유를 출원인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조 1항)

(4) 특허청장은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출원서류 및 부속서류를 특허청에서 공중의 열람에 제공한다. 이때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5조) 심사관은 이 기간 중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7조)

(5) 이러한 절차 후에 최종적으로 등록결정을 받게 되면 상표등록절차를 밟게 된다.

#### 나. 상표심사절차의 특징

- (1) 상표법에는 심사청구제도가 없다. 따라서 상표는 출원순으로 심사한다.
- (2) 상표법에는 출원공개제도가 없다. 특허와는 달리 꼭히 공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공고 이후 설정등록될 때까지의 상표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제24조의2)

#### 2) 출원공고와 이의신청

##### 가. 손실보상청구권(제24조의2)

- (1) 출원인은 출원공고가 있는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 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 (2)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 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청구권의 행사와 상표권의 행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 등록거절결정, 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상표등록이의신청

(1) 출원공고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25조)

(2)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이의신청의 대상, 이의신청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분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7조)

(4) 심사관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상표등록이의신청에 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7조 6항)

3) 등록절차

(1)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료를 상표 등록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10년치 전액을 일시불 납부하여야 한다.(제3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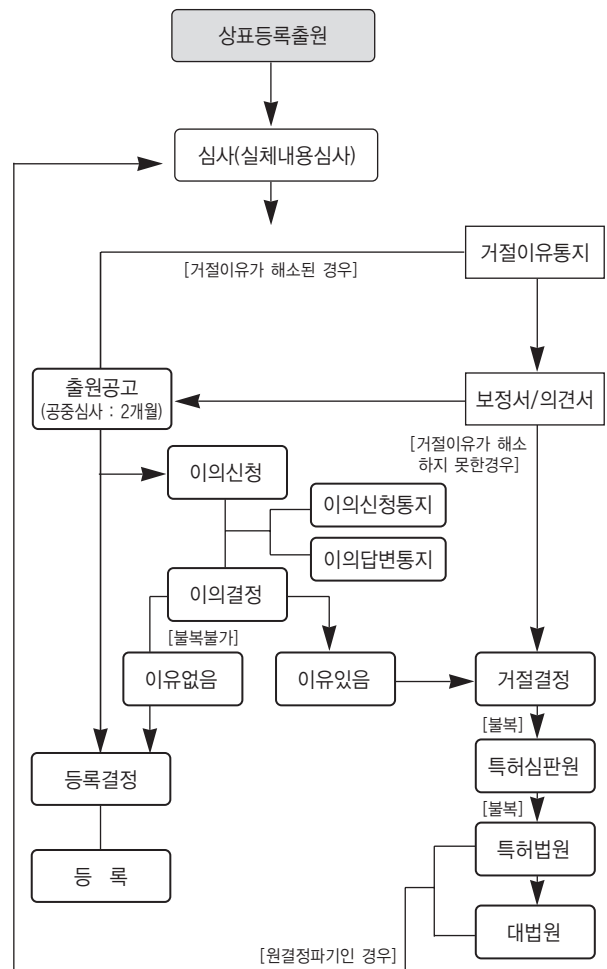
(2) 이해관계인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3) 상표법에서는 특허법과는 달리 등록료추납제도는 없으나, 그와 유사한 제도로써 30일 이내에서의 등록료납부기간 연장제도가 있다.(제35조)

(4) 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5) 규정기간 이내에 당해 상표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납부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제3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보전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한 때를 말한다)에는 상표등록출원(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제36조)

4) 상표심사절차 흐름도



〈 다음 호 에 계속 〉

발명특허 2009. 1

## 우표로 본 인물과 역사

달렌 [Dalen, Nils (Gustaf), 1869. 11. 30 ~ 1937. 12. 9]



스웨덴의 발명가 달렌은 1896년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후 취리히공과대학에서 1년간 공부하며 열기터빈·착유기 등을 발명하였다.

1906년에는 가스 어큐물레이터의 자동조절기를 발명하여 무인등대의 자동조명이 가능하게 되어, 이 공로로 191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보드머 [Bodmer, Johann Georg, 1786. 12. 6 ~ 1864. 5.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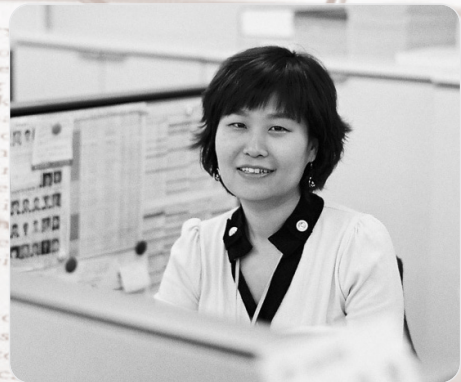


스위스의 기계발명가인 보드머는 여러 공작기계와 직기를 발명했지만, 그의 많은 착상은 시대를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1824년 랭커셔 볼턴에 양털을 소모하여 방적하는 공정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제작하여 이를 미국에서 채택, 직물산업에 대변혁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료제공 화상 아뜨리에(<http://blog.daum.net/philook>)

# 발명칼럼 실험실로 들어온 팔레트



유지영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1995년 6월부터 과학신문기자로 활동  
2000년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로상 수상  
각종 매체에 과학관련 원고 다수 연재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여름,  
전국이 붉은 색으로 물들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매운 붉은 색은 세계인에  
게 한국을 열정과 패기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역동적인 나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름의 더위, 승리에 대한 열광, 그리고 붉디붉은 빨강색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색을 보면서 각각의 이미  
지를 떠올린다....

2002년 월드컵이 열리던 여름, 전국이 붉은 색으로 물 들었다.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붉은 색은 세계인에게 한국을 열정과 패기 그리고 젊음이 넘치는 역동적인 나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름의 더위, 승리에 대한 열광, 그리고 붉디붉은 빨강색이 어우러지면서 더욱 생생하게 기억에 남은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처럼 우리는 색을 보면서 각각의 이미지를 떠올린다. 또 색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반대로 감정이나 의미를 색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사랑에 빠진 여성은 핑크빛이나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은 검은색 옷을 입어 자신의 슬픔을 나타낸다. 초록색은 자연을, 파란색은 이성을, 붉은색은 감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색에 대한 느낌과 감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한다.

수도꼭지의 파란색은 냉수를, 빨간색은 온수표시로 활용된다. 또한 위험을 표시할 때는 노란색을 사용한다. 노란색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유치원생들에게 노란색의 작은 가방이나 모자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다른 이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쉽게 발견하고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반면 노란색은 쉽게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색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작업을 요하는 곳에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생산시설이나 연구실 등만 전문적으로 디자인 하는 디자이너가 별도로 있어, 조명의 밝기나 설비와 시설물들의 색 등을 신중하게 결정한다.

과학자들에게도 색은 흥미로운 도전 대상이다. 예술가가 색으로 감정과 철학을 표현하고 아름다움을 창출한다면, 과학자는 색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한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

과학자들의 손에 의해 새로운 색이 만들어지고, 색을 표현하고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 무지개색 야광을 아시나요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알록달록한 크레용으로 사용하는데 익숙한 우리는 필요한 색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색을 다루는 기술이 꾸준하게 발달하여 거리마다 색들로 넘쳐나기에 이르렀지만,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는 필요한 만큼 색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흔히 '夜光'이라 불리는 인광체이다.

보통 인광이라 하면 손목시계 등의 숫자판 인식이 가능한 정도의 야광을 생각하나, 희토류첨가 스트론튬 알루미늄 산화물(Strontium Aluminum Oxides)의 등장으로 물체 식별이 가능한 수준까지 밝기가 향상됐다. 최근 발표되는 인광체는 사람들의 얼굴을 식별하고 서류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밝기에 이른다.

이처럼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광체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데, 특히 전력을 사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나 비상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과 같이 지하 공간 재난의 경우 대부분 전력이 끊기기 때문에, 대피 통로를 찾지 못해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광물질을 이용하여 비상구 등의 시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광체 기술에도 해결되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는데, 이는 빛의 색깔 한계이다. 현재 사용되는 인광체의 대부분은 초록이나 파랑 계열인데, 이는 붉은색 인광체의 경우 밝기와 지속시간이 짧아서 상용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단지 안내표시만 하는데 빛의 색이 무슨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밀폐공간에 갇혀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초록색이나 파란색 조명은 공포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런 경우 오랜 지색 등의 붉은 인광체가 필요하나, 앞서 언급한대로 밝기와 지속시간에서 실용성이 떨어져 문제이다.

다행히 지난 2007년 봄, 일본 류코쿠대학의 연구팀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일부 제시하여, 해결에 한 발자국 다가서게 되었다.

연구팀은 아크릴 수지 속에 초록인광체와 키톤(Kiton), 로다민6G(Rhodamines 6G), 붕소염료(B) 등과 결합시켜 오렌지색 잔광을 내는 혼합물 제조에 성공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 새로운 오렌지색 인광체는 기존 붉은 계열 인광체에 비해 지속시간이 2배 이상 늘어나 2~3시간 동안 빛을 발했다고 한다. 밝기는 기존의 7배 이상 향상되었다.

물론 이 결과는 초록이나 파랑계열 인광체의 품질에 비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붉은 인광체의 밝기 및 발광시간을 푸른 계열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면, 완전 칼라는 물론이고 전기가 필요없는 조명도 가능할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다. 실제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여 49가지 색을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 색을 입히는 새로운 방법들

새로운 색을 만들어내는 방법과 함께 과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사물에 색을 입히는 새로운 방법의 개발이다. 특히 좀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염색방법은 여전한 숙제다.

색을 입히는 재료는 크게 염료와 안료로 나뉜다.

염료의 경우 물이나 기름에 녹아 단분자로 분산하여 섬유 등의 분자와 결합하여 착색하는 유색물질이다. 일반적인 직물염색 등은 모두 이 염료를 사용한다. 염료는 직물이 조직 사이로 들어가 화학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영구적이다.

반면 안료는 물이나 기름에 녹지 않고 가루인 채로 물체 표면에 불투명한 유색의 막을 만드는 것이다. 인쇄용 잉크 등이 이에 속한다. 이 기술은 색소가루가 물질의 표면에 물리적으로 붙어서 색을 내는 것이므로, 마찰 등에 약하다. 따라서 세탁 등을 하는 직물에는 사용이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영역구분이 의미가 없어질듯 하다. 안료를 직물 염색에 사용하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이다.

미즈비시 연필은 필기도구용 잉크의 안료분산기술을 응용해, 섬유 염색용 잉크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안료를 나노수준까지 미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세화한 안료를 직물에 균일하게 도포하고, 특수폴리머로 코팅하여 섬유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낸 것이다.

새로운 안료염색은 기존 염료에 비해서 색상이 선명하고, 2차 오염물질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염색가공처리 과정은 고온의 증기로 염료를 섬유에 정착시키고 세정을 하기 때문에 대량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안료형 염색기법은 열처리나 세정을 거치지 않고 착색제를 이용해 옷에 색깔을 입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염색

가공처리에 비해 물 사용량을 95%, 온난화 가스배출량을 40%까지 줄일 수 있다.

물론 안료를 이용한 염색이 가능한 용도가 한정되어 있으며 특성도 다르기 때문에 모든 직물염색을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안료염색이 보편화되는 경우, 염색공장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수질오염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런가 하면 분자의 특징을 이용해서 카멜레온처럼 상황에 따라 색이 변하는 색소도 선보였다.

일본 동양방직종합연구소와 미국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연구그룹이 지난 2007년에 개발한 이 색소는 온도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적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하는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새로운 색소는 흰색 와이셔츠나 세탁용 세제에 사용되는 형광염료 중 하나인 'C18RG'를 사용했는데, 이 물질은 분산상태에서는 녹색, 응집상태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화하는 특성을 지녔다. 이 색소의 분자는 고온에서 모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면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화한다. 반면에 분자가 응집된 상태 즉 붉은 색 섬유를 만들면, 잡아 늘리는 방향에 따라 늘어난 부위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개발팀은 이 염료를 사용하여 의약품 등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의 보관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색상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아름다운 직물을 만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즉 인체의 굴곡을 따라 허리는 빨간색을 띠다가 가슴이나 어깨 등에서는 초록색으로 서서히 변하는 드레스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 과일색소로 만드는 발전소

색소를 에너지 생산용 재료로 활용하는 기술도 있다.

이른바 색소중감형 태양전지라는 것인데, 이 기술은 반도체 산화물 표면에 붙어있는 염료가 빛을 받아 산화물에 넘겨줄때 전기를 생산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 기술은 제조원가가 낮은 데다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쉽기 때문에 제3세대 태양전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에 비해 소재가 저렴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극 기관재료나 색소를 바꾸면 형상이나 색채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예를 들면 기판을 유리에서 플라스틱 필름으로 바꾸면 유연하게 할 수 있고, 실내 등 빛이 약한 장소에서도 발전이 가능해 인테리어용 태양전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태양전지에 과일색소를 사용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블랙베리, 블루베리, 오렌지, 포도 등 우리에게 친숙한 과일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야심만만한 과제에 도전한 연구팀은 미국 르완대학교의 화학과. 이들은 과즙을 원심분리기로 분리하여 동결 건조시켜 얻은 당과 염료를 이용하고 있다.

연구팀의 설명에 의하면 이산화티타늄(Titanium Dioxide)의 다공성 막으로 입혀진 전도성 유리 위에 이 염

료를 입혀 유리와 염료를 결합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빛이 조사될 때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자가 여기된다고 한다. 이 자유전자는 전도성이 유리 전극으로 이동하여 전기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팀은 이 방식의 태양전지가 실용화된다면 과일과 흰색페인트, 요오드, 유리판만 있으면 누구나 간단하고 저렴하게 태양광발전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고도의 전력 생산시설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도 값싸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의 기술수준은 아직 충분한 전기를 생산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충분하다. 어쩌면 미래에는 집 마당의 사과나 오렌지나무에서 전기를 생산하게 될지도 모른다.

발명특허 2009. 1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김현호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명지대학교 겸임교수  
국제지식재산연구원 강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현) 특허법인 맥 대표 변리사

### I. 서설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란 법률적 가치판단에 의하여 특허발명의 배타적 효력이 미치는 영역을 의미한다. 법 제42조 제6항에는 「...특허청구 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97조에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출원인은 자신의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하여 출원하여야 하며, 특허권이 부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게 된다. 즉 특허권은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에만 그 효력이 미치며 명세서에 기재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발명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그러나, 특허청구범위는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이며 보호범위 자체는 아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기술적 범위를 확정된 후, 법률적 가치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II. 구별개념

#### 1. 적극적 효력과의 구별

##### (1) 구별기준

특허권의 속성인 독점성과 배타성으로부터 특허권의 효력을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이란 특허권자만이 그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그리고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란 타인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는 효력을 말한다. 보호범위란 이러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sup>1)</sup> 타인이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되며 특허권자는 그 침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구별실익

- 1) 이용·저촉관계의 경우에 후출원특허권자는 선출원권리자의 동의없이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으나(法 98), 선출원권리자 및 제3자가 무단으로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금지시킬 수 있다(法 138③). 즉 후출원특허권자에게는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나 소극적 효력은 인정된다. 이 점에서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과 소극적 효력을 구별하는 실익이 있다.
- 2) 또한 간접침해의 경우에 특허권자는 간접침해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으나, 타인의 실시를 배제시킬 수는 있다.(法 127) 즉 소극적 효력은 인정되나 적극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으며, 이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

2. 기술적 범위

(1) 구별기준

기술적 범위라 함은 발명의 기술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수하게 기술적 견지에서 고찰되는 개념이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와 기술적 범위는 모두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점에서 양자는 동일하다. 그러나 법률적 가치개념인 보호범위와는 달리 기술적 범위는 어떠한 법률적 가치개념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순수한 특허청구범위의 문헌 그대로의 기술범위를 의미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구별실익

기술적 범위의 판단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이다. 즉,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은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기술적인 사실을 특정하는 기술적 범위를 판단한 후 여기에 법률적 가치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발명이라도 i)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法181), ii)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法81의3④), iii)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法96)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보호범위의 판단원리

1. 주변한정주의

(1) 의의

주변한정주의라 함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의 문헌적 의미로만 해석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기재사항 즉,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한 확장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그러므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를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는 발명자가 그 보호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부분)은 보호하여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하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축소해석하는 입장인바 미국이 그 대표적 국가이다.

(2) 장단점

주변한정주의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명확하고 그 이해가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특허청구범위의 문헌외의 균등범위에서 당해 특허권을 주로 침해하는 대

1) 현행법상 특허권은 물권에 준하는 권리로서 지배권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지배권이란 타인의 행위를 게재(揚載)시키지 않고 일정한 객체에 대하여 직접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지배권의 효력에는 대내적 효력과 대외적 효력이 있다.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은 특허권의 객체인 특허발명을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효력, 즉 특허권의 대내적 효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은 특허권자의 지배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배타적 효력, 즉 특허권의 대외적 효력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적극적 효력은 특허권자 본인에 대한 효력을 의미하며, 소극적 효력은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의미한다.

부분의 침해자로부터 특허권자가 보호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특허권의 침해판단에 있어서 일찍부터 판례에 의하여 균등론이 확립되어 왔다.

## 2. 중심한정주의

### (1) 의의

중심한정주의라 함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에 구애받지 않고 그곳에 표현된 “실질적인 발명사상”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특허청구범위와 명세서 전체를 일체로하여 발명사상의 핵심을 파악한 후 이에 상응하는 범위까지 보호범위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을 말한다. 이는 보호범위를 확장해석하는 입장이며 균등물은 모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본다. 독일이 대표적 국가이다.

### (2) 장단점

중심한정주의에서는 실시 예를 청구범위에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보호되며 출원자의 과오로 발명의 내용을 협소하게 기재한 경우에도 보호된다. 그러므로 발명보호에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일반 제3자가 명세서의 문언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독일은 최근 미국식으로 특허명세서 중의 특허청구범위의 각 항이 가진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유럽특허조약의 규정(제69조) 역시 그러하다.<sup>2)</sup>

## 3. 검토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관한 해석에 대하여는 종래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널리 해석하고자 하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대륙법계의 국가

가 채용해 왔던 중심한정주의적 해석방법과 자유경쟁의 입장에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좁게 해석하고자 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영미법계의 국가가 채용해 왔던 주변한정주의적 해석방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2) 그러나 주변한정주의의 해석방법을 취하던 미국은 최근 균등론을 도입하여 중심한정주의적 요소를 대폭 취하였으며(확대해석 인정), 중심한정주의의 해석방법을 취하던 독일도 최근 청구범위에 대한 금반언의 원칙을 도입하여 주변한정주의적 요소를 취하고 있다.(확대해석 제한) 원래 각국에 있어서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에 관한 이념은 각각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나 그 차이가 생기는 기본적인 요인은 특허청구범위(claim)의 표현양식과 그 해석방법에 있을 뿐이지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양자의 특허해석방법을 보면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권리한정적 기능을 인정함은 공통적이다.

3) 다만 주변한정주의 하에서는 특허발명을 구체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을 엄밀하고 정교하게 기재하도록 함과 동시에 특허발명의 대상을 청구범위만으로 하여 주변발명을 한정하고, 그 보호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는 확장해석, 즉 균등이론을 극히 제한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반면, 중심한정주의 하에서는 특허발명의 대상을 청구범위를 중핵으로 하여 한정해석하고 그 보호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균등이론을 비롯한 특허의 확장해석을 다소 넓게 허용한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다소 다른 것 같지만 실제의 특허해석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는 전

2) 유럽특허조약 제69조 : 유럽특허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내용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항 및 도면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해석에 참조되어야 한다.

통적인 해석방법으로서의 연혁상의 구별의 의의가 있을 뿐이다.

- 4) 우리나라의 이전 판결의 대체적 경향은 중심한 정주의적 입장<sup>3)</sup>을 취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심한정주의적 판례는 살펴볼 수 없고, 대부분의 판례가 주변한정주의적 입장<sup>4)</sup>으로 돌아섰다.

#### IV. 기술적 범위의 판단

##### 1. 서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해석원리로서 주변한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을 때, 구체적인 보호범위 판단은 i) 특허청구범위를 기준<sup>5)</sup>으로 명세서 및 도면,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및 출원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고, ii)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경우 법률적 가치판단을 통해 이루어진다. 직접침해의 기술적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구성요소완비의 원칙, 균등론 등이 있다.

##### 2.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 (1)의의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이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를 실시하는 경우에만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필수적 구성요소 중 일부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특허발명과 다른 발명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

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2)구체적인 내용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은 세부적으로 부가의 원칙과 생략의 법칙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부가의 원칙

부가의 원칙이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한 다른 구성요소를 더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 인데, 제3자가 “a+b+c+d”를 실시하고 있다면 기술적 범위에 속하게 된다.

###### ② 생략의 법칙

생략의 법칙이란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적어도 어느 하나가 생략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있다면 당해 청구항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a+b+c+d” 인데, 제3자가 “a+b+c”를 실시하고 있다면 기술적 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sup>6)</sup>

###### (3)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의 예외

- 1) 구성요소완비의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i) 미세한 설계변경, ii) 중요도가 매우 낮거나 본질적 기능과는 무관한 요소(非要部)만이 결여되고 다른 모든 요소가 실시되고 있는 경우에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된다.

- 2) 상기와 같은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유명무실하게 되

3) 특허발명의 범위는 특허청구범위 기재된 구체적인 문언의 범위뿐만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도면의 간단한 설명의 기재 전체를 일체로 하여 그 발명의 성질과 목적을 밝히고 이를 참작하여 그 발명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요,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기재에만 구애될 수 없다.(대판 1972. 5. 23. 선고. 72후4, 1973. 7. 10. 선고 72후42, 1973. 8. 31. 선고. 72후 43 등)

4)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하여 보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가)호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가)호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 3. 15. 선고. 2000후3449, 2001. 12. 24. 선고 99다 31513, 2000. 11. 14. 선고 98후 2351, 2001. 8. 21. 선고 99후2372 등)

5) 이를 강화상 특허청구범위 기준의 원칙이라 한다.

6) 다만, “a+b+c”가 “a+b+c+d”의 타용도가 없는 전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침해일 수 있다.

기 때문에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의 실시도 침해로 보아야 하는 필요성에서 균등론이 발전되었으며, 생략의 법칙의 예외로서 간접침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 3.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

#### (1) 의의

1) 균등론이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비교대상발명(소위 (가)호발명)을 비교할 경우 구성요건이 문언상으로 일치하지 않으나 실질적 기술적 가치가 균등한 발명은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로서 구성요건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에 대한 예외적인 사항도 특허침해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2) 균등론은 판례에 의해 발전되어 온 이론<sup>7)</sup>인데, 현재 균등론이라 함은 주변한정주의 하에서의 특허청구범위의 확장이론을 의미한다.

#### (2) 취지

1) 기술적 사상인 발명을 특허청구범위에 문언의 형식으로 완벽하게 모두를 기재한다는 것은 출원인에게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침해자는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환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이 변환을 가하는 행위형태를 모두 예측하여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을 기재하는 것을 특허출원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를 강요하는 셈이 되기 때

문이다.

2) 다만, 균등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보호와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실정상 공지기술에 대한 경미한 구성의 변환에 대해서까지 특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점에 비추어 균등론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공평타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최근 대법원은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실시하면서 균등론 적용을 인정한 판례를 판시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판례를 중심으로 한 균등론의 적용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sup>8)</sup>

#### (3) 적극적 요건

##### ①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할 것

양 발명의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되거나 동일하여야 한다.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특허발명에서 치환한 부분이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이 아니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허발명에서 치환가능하고 치환용이한 부분이 본질적인 부분이라면 과제의 해결원리가 공통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9)</sup>

##### ② 치환가능성이 있을 것

(가)호 발명의 구성요소를 다른 요소로 치환하더라도 그 치환된 구성요소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를 나타내어야 한다.

##### ③ 치환용이성이 있을 것

그와 같이 치환하는 것 자체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을 정도로 자명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아직 치

7)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종일, 783면 이하를 참조.

8) 대판 2000. 7. 28. 선고 97후2200, 2001. 6. 12. 98후2016, 2001. 6. 15. 선고 98후836 판결, 2001. 8. 21. 선고 98후 522, 2001. 9. 28. 선고 99후 2204 등

9) 다만, 이에 대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본질적인 부분과 비본질적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특허청구범위의 모든 구성요소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명제로 표현되는 구성요건 대등의 원칙에 의한 주변한정주의에 모순된다는 비판이 있다.(특허재판실무편람 2002, 특허법원)

환용이성의 판단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미국, 일본<sup>10)</sup>, 유럽 등 전체적으로 침해 시(제조시점)를 기준으로 균등론을 판단하는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같은 기준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4) 소극적 적용요건

이러한 균등론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가)호 발명이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포대금반언의 원칙이다.

① (가)호 발명이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호 발명이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시점에 있어서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그로부터 그 출원 시에 당업자가 용이하게 창작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어야 한다. 즉,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의 출원 시에 자유기술에 해당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② 포대금반언(File Wrapper Estoppel)의 원칙

i) 의의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가)호 발명의 치환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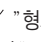
구성요소가 특허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되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어야 하며, 이를 포대금반언의 원칙(File Wrapper Estoppel) 또는 출원경과참작의 원칙(Prosecution History Estoppel)이라 한다. 이 원칙은 특허권자가 자기의 발명에 대한 출원 계속 중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보정을 하여 의식적으로 제외시킨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균등범위임을 이유로 하여 자기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구항에 “a+b+c”를 구성요소로 하여 출원하였다가 “a+b’+c”로 보정되어 특허된 경우 “a+b+c”에 대해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없다.

ii) 보정의 유형에 따른 고찰

1) 구체적으로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특허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정, 예를 들어, 신규성 등을 상실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특허청구범위를 제한적으로 보정하거나 그러한 해석에 관한 주장을 한 경우 포대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됨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sup>11)</sup> 또한, 특허법원에서는 i) 등록 후 특허청구범위의 정정<sup>12)</sup>, ii) 보정 없이 의견서만 제출한 경우<sup>13)</sup>에도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sup>14)</sup>

2) 한편, 기재불비 등 특허법이 정하는 다른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법원 판례가 없다. 출원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저촉되는 경우뿐 아

10) 일본의 최고재의 판시사항(最判 평성 10년 2, 24. 판시1630호, 32면, 最判 평10년 2, 24. 판시1630호, 32면)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특허청구범위의 구성 중에 대상 제품과 다른 부분이 존재하여도 그것이 ①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고, ② 치환하여도 특허발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③ 그 치환은 당업자가 제조시점에 있어서 용이하게 생각이 미칠 수 있는 것이며, ④ 대상 제품이 출원 시에 있어서의 공지기술과 동일 또는 당업자가 출원 시에 용이하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⑤ 대상 제품이 출원절차에 있어서 청구범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에 해당하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을 때에는 균등으로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한다.”

11) 포대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인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후2712 판결에서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은 출원 시에는 등록청구범위 제1항을 “등반이시트의 첫힘동작으로 보조시트가 펼쳐져 침대로 변형되는 안락의자에 있어서, 비퀴를 구비한 한 쌍의 메인후레임 뒤측에 회동가능하게 등반이후레임을 설치하되, 위 등반이후레임 하단에 상, 하 두 개의 한지부를 구성한 한 쌍의 힌지브라켓을 착설하여 위 힌지브라켓의 상부 한지부에는 선단에 보조시트 후레임이 절첩가능하게 결합된 좌판후레임을 결합하여 안내부의 안내로 별도의 지지후레임 없이 등반이시트와 보조시트가 연동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안락의자”로 하고, 등록청구범위 제2항을 “제1항에 있어서, 위 등반이후레임과 보조후레임을 연결하는 연결레버를 “” 형으로 일정 각도 정곡되어서 메인후레임 앞측에 설치된 횡봉에 착설되어 한 쌍의 롤러로 된 안내부에 의하여 지지안내되도록 구성함을 특징으로 하는 안락의자”로 기재하였다가, 특허청 심사관으로부터 실용신안공고 제95-4971호 고안 등에 의하여 당업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고, 1998. 7. 22.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면서 인용참조에 저촉되는 부분을 공지의 기술로 하여 청구범위를 대폭 축소 한정한다고 주장함과 아울러 청구항 제1항과 제2항을 결합하여 하나의 항으로 만들되 청구항 제1항에 있던 부분을 전체부로 기재하고 청구항 제2항에 있던 부분을 특정부에 기재하였는바, 그렇다면 출원인 스스로 전체부의 기재사항인 “등반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안내부가 안내하도록 하는 구성”을 공지의 기술로 한정할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다시 특정부에서 위 안내부를 “한 쌍의 롤러”로 한정하는 것은 출원인이 이와 균등관계에 있는 구성에 대해서는 그 권리범위를 주장하게 않겠다는 취지로 볼 것이므로, 결국 출원경과금반언의 원칙상 등반이와 보조받침을 직접 연결하여 연계동작을 하는 연결레버를 안내부가 안내하도록 함에 있어서, 그 안내부를 ((가)호 고안과 같은) 슬라이드관으로 구성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고안의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그 보호범위로부터 제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가)호 고안의 슬라이드관은 이 사건 등록고안 제1항의 롤러의 균등론이 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12) 특허법원 2002. 8. 30. 선고 2001하5992

13) 특허법원 2002. 7. 26. 선고 2002하635

나라 명세서가 기재불비된 경우도 특허법에서 규정한 同列의 거절결정이유 내지 무효사유가 되는 것이고, 명세서를 보정하는 목적 내지 동기 또한 양자 모두 출원된 발명의 특허를 받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나아가 기재불비 등의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해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삭제 내지는 감축하였다고 하여도,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출원인이 특허 받을 의사를 포기한 점이 그 출원과정의 의사로 보아 분명하다고 하면,<sup>15)</sup> 이와 같은 출원경과를 본 제3자는 출원인에 의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제3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중의 자산으로 인식하리라는 점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물론 명세서 기재불비를 치유하기 위한 보정이 실질적인 의미의 변화 없이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표면적인 것” 이라면 그것은 청구범위를 감축시키거나 금반언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나, 명세서 기재불비의 이유에 대한 보정이 더 나은 설명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여도 청구범위를 감축, 삭제시키는 경우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금반언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sup>16)</sup>

iii) 의식적 제외의 범위

1)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하였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기술적 범위로부터 제외함에 있어 무엇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판단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청구범위의 보정이 출원경과금반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범위의 구성요소에 일질의 균등범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기준의 입장(Absolute bar approach)” 과 일정 범위에서 균등범위를 인정하는 “유연한 기준의 입장(flexible bar

approach)” 이 있을 수 있다.

2) 여기서, 엄격한 기준의 입장(Absolute bar approach)은 특허청구범위의 직접주의에 의거하는 것인데, 그 보정에 의해 포기된 범위의 유무를 묻지 않고 보정이 이루어진 사실에 의해 자동적으로 금반언을 적용하는 자동적용의 접근법이다. 이 접근법에 의하면 특허청구범위의 확실성 내지 명료성이 향상되고 합법적인 기술혁신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특허청구범위의 해석에 있어서 재판소의 부담이 경감된다. 이에 대해 유연한 기준의 입장(flexible bar approach)은 보정에 의해 포기된 범위의 광협에 따라서 금반언의 적용범위를 탄력적으로 신축시키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보정이 합리적으로 보아 특정한 균등물을 포기하려고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출원 시에 그러한 균등물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다던가, 보정을 한 이유가 균등물과 아주 미미한 관련성만을 갖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자는 보정 시에 그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입증하여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추정(presumption)을 반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최근 대법원 판례<sup>17)</sup>는 “대비되는 (가)호 발명이 특허발명과 균등의 것이기는 하지만 보정에 의해 의식적으로 제외된 부분이어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파기한 사례로서, 의식적 제외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제시한 의도 등을 참작하여 판단토록 하는” 일반론을 제시하여 유연한 기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14) 참고적으로 일본과 미국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1. 일본

일본에서는 t-PA 관련 특허침해사건에서,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의 요건에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기재불비를 보완하기 위하여 보정된 것이므로 금반언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균등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대판고제, 2000. 3. 29. 선고 平 6(㉸) 第 3292號)

2. 미국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2002. 5. 28. 위 Festo 사건의 상고심판결에서, 금반언의 원칙은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뿐만 아니라 모든 법정 특허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행해진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에 적용된다고 하여 미국연방항소법원(CAFC)이 취한 금반언적용의 기준 내지 범위에 관한 기본 입장을 지지하였다.

15) 이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급심으로 다투거나 아니면 삭제 내지는 감축이 아니라 기재불비를 해소할 수 있는 명확한 표현 등으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16) 이재웅 서기관, “최근 대법원 판례동향(1)”, 2002년 11호 지적재산 21 참조.

17) 대판 2002. 9. 6. 선고 2001후171,

18) 최근의 Festo corporation vs. Sho -ketsu kinzoku kogyo kabushiki co., ltd. 사건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은 “ i ) 언어에 의해 발명의 본질을 정확하게 표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 ii ) 금반언에 대해서 기성개념 및 현존하는 특허권자의 기대를 존중해야한다는 점, iii) 특허권자가 보정을 행하는 때에 보정 후의 클레임 범위에 관하여 갖는 의도가 그것의 균등범위를 일질 포기하는 것에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에 주목하여, 감축 보정으로 인해 엄격한 기준의 입장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문제는 권리자의 축소보정이 문제의 특정 균등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고 하는 취지로 CAFC에서 제시한 “엄격한 기준의 입장” 을 파기하였는데, 이는 금반언의 적용범위에 대해 참고할만한 고찰법이라고 사료된다.

진다.<sup>18)</sup>

4) 결국, “의식적 제외”의 개념을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대개 균등론을 적용할 여지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의식적 제외는 그 취지가 명확한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의식적 제외를 인정하였다고 하여도 일체의 균등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거절이유에 대응하여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보정 자체를 단순히 표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의 목적이나 회피하려고 한 선행기술의 내용 등으로 보아 출원인이 참으로 의도한 보정범위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그 결과 금반언이 적용될 범위를 정하여야 할 것이고, 보정과 1자 1획라도 다른 것은 모두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하여 기계적으로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한다면 객관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19)</sup>

(5) 적용의 효과

특허발명과 비교대상발명이 균등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양 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며 정당한 권원이 없다면 당해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한다.

(6) 역균등론(逆均等論)

1) 역균등론이란 문헌상으로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상이(相異)한 방법으로 기능을 수행할 정도로(기술적 사상의 원리) 변경이 크게 이루어진 경우 균등론의 적용을 역으로 하여 당해 특허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구리(Cu)만 기재되고 있으나 청구범위에는 금속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제3자의 실시가 철(Fe)인 경우 문헌적으로는 특허발명의 침해가 되나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원리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실질적인 침해로는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2) 역균등론은 균등론과 함께 형평의 원칙에 의해 인정되는 원칙이다.<sup>20)</sup> 다만, 역균등론은 특허권을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4. 기타 기술적 범위 판단 시 참작하여야 할 제원칙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1)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이란, 특허청구범위는 명세서에 기재된 사항 중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것이므로(法 42④) 특허청구범위의 보호범위 해석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사항 외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왜냐하면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지 않고는 그 기술적인 의미가 이해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은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지 않다면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할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둘째,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만 기재되어 있고 특허청구범위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특허청구범위기준의 원칙상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명료하거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모순되는 경우 또는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에 특별히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염려가 있지 않는 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참작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의 불명료성을 제거하고 그 보완적 해석을 통하여 특허발명의 실체를 보호해 주

19) 이재웅 서기관, “최근 대법원 판례동향(1)”, 2002년 11호 지적재산 21 참조.  
20) C. Bruce Hamburg, 미국에 있어서 균등론 178-191면.

어야 하며 형식적인 문구에 구애되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특허제도란 발명의 보호 및 이용을 통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특별히 제3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발명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형식적인 문구에 집착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셋째,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양자에 모두 명료하게 기재가 되어 있으나, 사용된 학술언어 또는 보통의 언어만으로는 특허발명이 나타내는 기술적인 의미가 분명히 파악되지 않는 경우에 기술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용어사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참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 의식적 제외설

- 1) 의식적 제외설이란 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은 그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출원인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에까지 보호범위를 확장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당연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 2) 이러한 의식적 제외 또는 한정 은 특허청구범위에 직접 표시된 경우는 물론, 발명의 상세한 설명, 출원서류 등에서 표시된 경우도 포함한다. 이러한 점에서 출원경과참작의 원칙과 그 취지를 함께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출원인이 권리의 발생 후에 의식적으로 제외한 사항을 자기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이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함은 물론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 3) 이 기준은 출원인이 의식적으로 제외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그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특허를 받기 위하여 출원하는 사람은 그 발명에 관하여 최대한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출원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요약서의 참작불허

요약서는 기술정보로 이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데에 참작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法 43)

V. 법률적 가치판단

- 1) 법률적 가치판단은 특허발명의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의 제한<sup>21)</sup>의 측면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의 제한은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자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권원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할 수 있다. 즉, 제3자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의 제한에 해당하는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 경우,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에 속하는 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2)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i)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法96), ii) 실시권의 존재에 의한 제한, iii) 공지기술 또는 실시불가능한 형태의 기재에 의한 제한, iv) 업으로서 실시가 아닌 경우, v)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法181), vi) 추가납부기간경과 후에 납부 또는 보전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法81의3④), vii) 특허청구범위의 추상적 기재에 의한 등을 들 수 있다.

2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의 제한을 배제한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의 제한만을 고려하면 된다.

#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 손 지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항공공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박사수로  
 서울대학교 정밀기계공동연구소 연구원  
 40회 변리사시험 상표법수석합격  
 한국특허아카데미 상표법 전임교수  
 (현) 태울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사실관계) 甲은 국내의 유명한 패션업체로서 1990년에 “VIGEVANO” 상표를 지정상품 “구두”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은 자이다. (현재까지도 甲의 상표권은 유효하다.) 甲은 이후로 전국적으로 대리점을 개설하는 등 뛰어난 사업수단으로 인하여 199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매우 저명한 상표로 인식되었다.

한편, 乙은 국내에서 시계를 제조, 판매하는 자로서 1998. 3. 30. 자로 “VIGEVANO” 상표를 지정상품 “시계”에 대하여 출원하여, 1999. 3. 30. 자로 등록 받은 자이다. (현재까지도 乙의 상표권은 유효하다.) 乙은 상표등록을 받은 후에 자신의 등록상표를 자신의 지정상품에 표시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다만, 乙은 잡지에 광고를 하면서 甲의 구두에 광고지면의 바로 앞, 뒷면에 자신의 시계에 대한 광고를 하는 등 甲의 신용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계와 구두는 비유사한 상품이라고 할 때, 甲이 乙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 I. 상표권의 효력 범위

상표법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함과 아울러 기만적이거나 오인을 불러일으키는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일반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50), 법률상 정당한 권원없는 타인에게는 등록상표와 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권의 금지적 효력은 상표권의 기본적인 효력인 사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이다.

즉,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41①), 상표권자가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專用權)으로서의 적극적 효력과 권원없는 타인의 무단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금지권(禁止權)으로서의 소극적 효력으로 구성된다. 즉, 상표권의 본래적인 효력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지만, 상표법은 상표권의 전용권을 실효적으로 보호하고 상품출처에 대한 수요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배타

적인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등록상표 및 지정상품과 유사한 범위까지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50, §66① i)

## II. 甲은 乙에게 등록배제효를 행사할 수 있는가?

### 1. 비유사 상품에 대한 등록배제효 인정 여부

상표법은 등록주의를 채택하여 등록에 의해 독점 배타권을 부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등록 받거나 사용하는 것을 일률적, 정형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비유사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출처의 혼동이 발생할 수 있고, 인용상표가 주지, 저명하다면 이러한 혼동은 더욱 발생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일부 규정에서는 타인의 출원을 배제하는 등록배제효의 범위를 비유사한 상품에 대해서까지 확장하고 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에 관한 출원에 대하여 등록의 완전, 공정성을 사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써, 하자있는 부실 권리를 소급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상표등록무효심판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甲은 이러한 무효심판제도를 통해 乙의 등록상표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 2. 법 제7조 제1항 제10호

#### (1) 의의 및 취지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한다. 동일·유사한 상품뿐만 아니라 이종상품 및 이종영업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의 상표로 일반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를 소위 저명상표라 하며, 저명상표는 그 상품의 우수성 때문에 대중의 심리에 양질감 내지 저명감정을 획득하고 있어 그 자체가 상품과 영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상표법은 저명한 상품 또는 영업과의 혼동으로 인한 부정경쟁을 방지하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형식적 유사의 개념을 벗어나 저명상표와 혼동의 염려가 있는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2) 비유사 상품에 대한 적용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에 있어서의 혼동은 상표 또는 상품의 면에서 비유사의 영역에까지 미친다. 저명한 타인의 상표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이들이 사용되는 상품 및 영업과 비유사한 영역에 사용될 경우에도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비유사상품 사이에 혼동이 일어난다고 하기 위하여는 저명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에 편승하여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할 정도의 경업관계 내지 양 상품 사이에 저명한 상품 및 영업에 화체된 양질감이 이전될 수 있을 정도로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존재할 것이 요구된다.

사실관계에서 오늘날 기업경영의 다각화 경향 및 패션업체의 토털패션화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요자는 乙의 시계 역시 甲 혹은 甲의 관련업체에서 만들어 그 품질이 보장될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하여 乙의 등록상표는 무효가 가능할 것이다.

### 3. 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1) 의의 및 취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경우에도 등록을 받을 수 없다. 상품의 품질보증기능 및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함으로써 상품의 품질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일반수요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공익규정이다.

#### (2) 수요자기만의 요건

판례는 '상품출처의 오인을 초래하여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거절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를 보호' 하기 위한 규정이라 하여 본 호의 후단을 제9호 및 제10호 이외에 상품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한 또 다른 규정으로 보고 있다.

본 호의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i) 인용상표나 그 사용상품이 반드시 주지, 저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내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나 상품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하며, ii)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유사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인용상표의 구체적인 사용실태나 두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사이에 경제적인 건련의 정도 기타 일반적인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그 상표가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인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경우라면, 비록 인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본 호가 적용될 수 있다.

사실관계에서 토털패션화의 경향 상 구두를 만드는 업체에서 시계까지 제조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甲의 상표가 저명하여 수요자도 乙의 시계를 甲이 만들었을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수요자 기만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하여 乙의 등록상표는 무효가 가능할 것이다.

#### 4. 법 제7조 제1항 제12호

##### (1) 의의 및 취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지 못한다.

제3자가 출처혼동의 우려가 없는 비유사한 상품에 출원하거나, 외국에서만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에 상표등록을 허용함은 상표법의 목적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거절의 근거가 없어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최근에는 모방상표로부터 효과적인 보호를 하기 위해 주지도를 제9호에서 제11호의 정도로 낮추었다.

상표제도가 국제화되고 파리협약상의 속지주의 원칙이 수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진 외국 상표들이 선원주의와 등록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에 적절히 보호를 받지 못해 통상마찰을 야기시키는 한편 국내 기업 간에도 특정인의 상품표지로 상당히 알려진 상표들이 이종 상품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선점당하여 거래질서의 혼란을 초래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상표권의 희석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실익이 있다.

##### (2) 상표 및 상품의 범위

본 호는 국내 외의 특정인의 상품출처로서 인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상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내지 제11호가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본 호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존재한다.

##### (3) 부정한 목적

법문상의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것은 부정한 목적의 예시이며, 원 상표권자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저지하거나 또는 대리점계약 체결을 강제할 목적으로 상표권자가 미처 등록하지 않은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나아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하더라도 저명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희석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원한 경우에도 부정한 목적에 의한 것으로 취급된다.

乙이 상표출원을 하는 시점에 이미 甲의 상표는 저명성을 인정받고 있었다는 점, 乙의 사용상품을 수요자들은 甲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乙에게 부정한 목적은 인정될 것이다.

### III. 같은 을에게 사용금지효를 행사할 수 있는가?

#### 1. 상표법상 사용금지효 행사여부

i) 저명상표는 이종상품 간에도 오인, 혼동의 염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금지권의 범위가 비유사 상품에까지 확장된다는 적극설이 있으나, ii) 상표법 제50조 및 제66조의 규정상 상표권 침해 행위는 동일, 유사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극설이 타당하며, 판례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乙은 비록 甲과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여도 비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상표법상 사용금지효는 인정될 수 없다.

#### 2.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상표법은 정형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금지효를 유사범위까지 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비유사상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혼동의

우려가 존재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하여 사용금지효를 인정한다.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모두 영업상의 혼동초래행위를 금지시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경쟁법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러나 상표법은 상표등록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하여 독점배타권을 창설, 부여함으로써 등록권리자의 사익보호를 꾀하는 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이 등록의 유무를 불문하고 거래계에서 공시된 주지표지 일반의 모용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부정한 경쟁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사실관계에서 乙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판단된다면 甲은 乙의 사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 3. 乙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인가?

부정경쟁행위를 유형화하여 보면, i) 특정한 동종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상품주체혼동행위, 영업주체혼동행위 및 저명상표의 희석화 행위가 있고, ii) 동종업자 전체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원산지허위표시행위와 출처지오인야기행위가 있으며, iii) 동종업자의 개인적인 이익은 물론 소비자의 이익 내지 공정한 국제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상품질량오인야기행위 및 대리인 등에 의한 불법적인 상표사용행위가 있다.

乙의 행위는 이 중에서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상품주체혼동행위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즉 주지상표 등 모용에 의한 혼동초래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혼동이라 함은 상품과 상품 사이의 혼동뿐만 아니라 상품주체 간의 광의의 혼동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봄이 지배적인 견해이다. 또한 혼동은 반드시 현실의 혼동을 초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혼동의 구체적 위험으로 족하다.

甲의 “VIGEVANO” 상표는 “구두”에 대해서 국내에서 저명한 상표로 알려져 있고, “구두”와 “시계”는 최근의 토털패션화 향상에 비추어 볼 때 “구두”의 제조업자가 “시계”의 제조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혼동의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乙의 “VIGEVANO” 상표의 사용행위는 甲의 저명상표에 화체된 신용에 편승하고, 수요자에게 출처의 혼동을 유발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주체혼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

### 4. 등록상표권의 적극적 효력

우리의 판례는 ‘어느 상표가 등록되면 비록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선언되어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한다’는 심판전치주의의 입장에 있다. 결국,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범위의 후출원상표권이 설정등록이 되는 경우에 선 등록상표권자는 후출원등록상표권자의 사용에 대해 그 무효 전까지 사용금지효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乙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된 후라면 갑은 을의 “VIGEVANO” 상표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겠으나, 을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되기 전에도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지 문제가 된다.

### 5.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와 권리남용

상표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는 상표법 등 다른 법률에 부정경쟁방지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상표법의 우선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을의 “VIGEVANO”의 사용행위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은 동법 제4조를 근거로 사용금지를 요구하지만, 상표법은 동법 제50조를 근거로 사용가능을 보장하게 되어 두 법률이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상기 부정경쟁방지법 제15조를 근거로 상표법이 우선적용되어 乙은 자유사용이 보장된다.

다만, 이런 결과를 인정할 경우 상표법의 등록주의를 악용하는 결과가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고, 수요자의 이익 보호라는 상표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판례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어서,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일지라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예컨대 판례는 상표권의 등록이 자기의 상품

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시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명상표와 혼동을 목적으로 형식상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라면 그 상표의 등록자체가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가사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을 악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되어 상표법에 의한 적법한 권리의 행사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본 15조의 규정이 배제된다고 본다.

따라서, 甲의 표지는 국내에서 저명하고, 양 상품 간 출처의 혼동이 존재하며, 乙의 상표등록 및 사용의 목적이 상품의 출처표시보다는 부정경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상기 판례와 같이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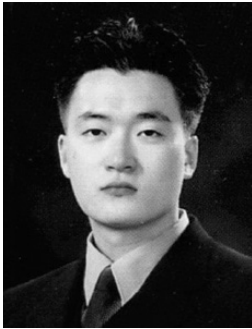
#### IV. 결론

상기 사안에서 甲은 乙의 등록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의 조문을 근거로 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도 있고, 乙의 등록상표권이 소멸되기 전이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하여 자신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구두”와 비유사 상품인 “시계”에 대해서까지 사용금지효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발명특허 2009. 1



# 제1강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을 구성하는 물품의 정의



## 김 응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한국특허아카데미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6년부터 2007년 7월까지)  
합격의법학원 디자인보호법 전임  
(2007년 8월부터 현재까지)  
(현) 리&록 특허법인 근무

### I. 서설

#### 1.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의 의미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 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2조제1호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물품성, 형태성, 시각성, 심미성을 요구하고 있는 바 물품성은 디자인의 성립요건 중 하나이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판례 및 특허청 실무에 의하면,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디자인에 최우선으로 전제되는 개념이다. 즉, 상기 정의 규정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디자인은 물품에 표현된 형태로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디자인보호법의 보호객체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을 전제하는 이유는 디자인보호법이 물품

의 수요증대를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범목적에 추가하기 때문이다.

#### 2. 물품과 관련된 디자인보호법의 연혁 및 개정법의 태도

2001년 7월 1일 시행법은 물품의 부분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포함시켜 부분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제2조제1호 참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물품의 부분이 특별한 제도, 즉 부분디자인제도에 의해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글자체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포함시켜 보호객체로 규정하였다. (제2조제1호 참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글자체는 특별한 제도, 즉 글자체디자인제도에 의해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 II.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 1. 독립성

원칙적으로, 물품은 거래사회에서 독립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물품의 부분이나 합성물의 구성각편(다만,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조립완구의 구성각편은 예외)은 물품성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품의 부분의 형태를 표현한 디자인을 부분디자인이라고 정의한다. (제2조제1호괄호) 원칙적으로 물품의 부분이나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독립성이 없어 물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디자인등록출원 시 부분디자인제도에 의하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2. 구체성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갖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분상물 또는 입상물의 집합, 전기·광·열 등과 같이 일정한 형체를 가질 수 없는 것, 물품자체의 형태가 아닌 상업적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디자인으로서 물품 자체의 형태가 아닌 것은 물품성이 없다.

### 3. 유체성

원칙적으로, 물품은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유체물이어야 하는바, 전기·광·열 등과 같이 일정한 형체를 가질 수 없는 무체물은 물품성이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을 글자체라고 정의한다. (제2조 1호의2) 글자체는 일정한 형상이 존재하지 않는 무체물인바 물품성이 없어 종래에는 보호되지 않았지만,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디자인의 정의규정에 글자체를 포함시켜 물품으로 의제하여 디자인보호법의 독자적인 보호객체가 되었다.

### 4. 동산성

물품은 동산이어야 하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물품성이 없다. 그러나 조립가옥 등과 같이 다량 생산 및 운반 가능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부동산이지만 동산의 성질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으므로 물품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 III.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효과 및 하자 치유 여부

### 1. 등록요건의 흠결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객체에 대해서는 제2조1호에 저촉되어 제5조제1항본문에 위반하여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무심사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 및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불허될 것이며, 설사 착오로 등록된다 하더라도 무심사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청구에 의해 소급적으로 소멸될 것이다.

### 2. 하자 치유 여부

물품성 흠결 시 출원 계속 중 보정으로 물품성을 구비하는 경우에도 이는 최초의 출원디자인과 보정 후의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은 요지 변경으로 보정각하될 것이다.

## IV.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 법 전반에 미치는 영향

### 1.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과 그 예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디자인은 물품에 화체되어 표현되고 물품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캐릭터 그 자체와 같은 추상적 모티브만은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글자체디자인은 그 형태가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아 종래에는 문제되었지만, 2005년 7월 1일 시행법은 명문규정으로 디자인보호법상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하였고, (법제2조1호의2) 국내주지형태 또는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시(제5조제2항), 부등록사유 규정의 적용여부 판단 시(제6조)에는 물품을 전제로 판단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의 예외의 예라고 할 수 있다.

### 2. 물품의 특정 및 물품명의 기재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과 관련하여 출원 시 물품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 바 출원서 및 도면에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에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11조제2항) 따라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명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출원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출원으로서 반려된다.(시행규칙 제2조) 물품명 기재 시에는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에서 1물품을 지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명시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의 디자인을 인식하는데 적합한 명칭을 기재하되 그 물품의 용도가 명확히 이해되고 보통 사용하는 물품의 명칭이어야 한다. 다만 물품의 일반화된 명칭이 없고 그 명칭이 물품의 용도를 최소단위로 표현한 것이라면 “○○○용 부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예 : 건축용 부재(×), 창틀용 부재(○))

### 3.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판단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물품 간에서만 판단한다. 즉, 비교대상이 되는 양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 판단 시에는 양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를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등록요건 중 신규성(법제5조제1항각호) 및 선출원주의(제16조) 판단 시 또는 등록디자인권의 침해여부 판단 시 등에는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만약 물품이 상호 비유사하다고 판단되면 신규성 및 선출원주의 위반이 되지 아니하고, 디자인권의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관례에 의하면,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는 물품의 용도 및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특허청 실무에 의하면, 동일물품이란 용도와 기능이 동일한 것을 말하고, 유사물품이란 용도가 동일하고 기능이 다른 것을 말하고(예컨대, 볼펜과 만년필), 비유사물품이란 기능과 상관없이 용도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다만, 비유사물품인 경우에 있어서도 용도상으로 혼용될 수 있는 것은 유사한 물품으로 볼 수 있다.(예컨대, 수저통과 연필통)

### 4.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의 구별기준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중 상대적으로 유행성이 더 강한 물품에 대해서는 디자인무심사등록제도를 병행하고 있다.(제2조5호) 무심사등록출원할 수

있는 디자인은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 중 대분류 A1, B1, C1, F3, F4, M1류에 속하는 물품 및 화상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무심사등록출원으로만 출원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제9조제6항) 심사등록출원을 무심사등록출원한 경우(그 역도 같다) 이는 거절이유 및 정보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출원계속 중 심사등록출원 또는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하는 보정이 가능하다.(제18조제4항) 다만, 형식적 요건이므로 무심사이의신청이유,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5. 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1)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즉,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는 1디자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1디자인은 1물품에 1형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1디자인은 1물품을 반드시 전제해야 한다. 특허청 실무에 의하면, 1물품이란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거래관념상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1개의 물품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다물품이란 1물품이 2 이상 집합된 물품, 즉 집합체로서 뿐만 아니라 개개물품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1물품 또는 다물품에 해당여부는 2 이상의 물품의 결합상태로 보아 각 물품의 기능·용도가 상실되고 새로운 하나의 기능·용도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1물품 여부는 물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물품의 용도·구성·거래실정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물품에 관한 출원은 1디자인 1출원주의를 만족할 수 있지만, 다물품에 관한 출원은 1디자인 1출원주의 위반이 된다.(제11조제1항참고)

(2) 특허청 실무에 의하면,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물품은 단일의 형태를 이루나 각 구성부분이 개성을 갖고 있지 않은 단일물, 수개의 구성물로 이루어지고 각 구성물은 개성을 잃은 합성물,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만 단독으로 사용실시할 수 없는 부품, 완성품의 기능을 보충하는 부속품, 2 이상의 물품의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다용도물품, 한 벌의 물품(제12조) 등은 1물품이다. 예를 들어, 신사복(상, 하), 티셔츠(상, 하)組 의자(2개 이상이 모여서 하나의 의자를 형성하는 것), 찻잔과 받침접시, 중합 밥통, 모자이크 타일, 완성형태가 단일한 조립완구, 장기알, 트럼프, 화투, 마작패, 넷트와 볼트, 압단추 자용, 걸착구 자용, 유·무선 전화기 등은 1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한편,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는 물품은 집합물이란

2 이상의 단일물 또는 합성물이 집합하여 집합물 자체로서도 경제적 가치를 가질 뿐만 아니라 집합물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품도 독립하여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물품을 말하는데 이는 1물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하므로 1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1조의 화장용품구, 1조의 책상과 걸상(결착된 것은 제외), 1조의 조리용구, 접시와 컵, 1조의 삼각자, 1조의 제도기, 1조의 탁구용구, 1조의 배드민턴용구, 1조의 조각도, 완성형태가 다양한 조립용구(레고 등), 물품의 용기와 그 내용물(카메라와 카메라케이스, 라디오와 라디오케이스, 안경과 안경집, 화장품 보관함과 화장품 용기), 한글 글자체와 영문자 글자체, 한글 글자체와 특수기호 글자체, 영문자 글자체와 숫자 글자체 등은 1물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1물품과 다물품의 구별 (참고)

| 1물품(1디자인1출원주의 만족)  | 다물품(1디자인1출원주의 위반)   |
|--|---|
| ○ 1물품 = 독립거래상의 1개 물품<br>예) 단일물(연필 등),<br>합성물(트럼프 등),<br>부품(카메라렌즈 등),<br>부속품(카메라케이스 등),<br>다용도물품(맥가이버칼 등) | ○ 다물품 = 1물품이 2 이상 집합된 것으로<br>개개물품도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br>예) 집합물(커피잔세트 등) |
|  | 예외) 한 벌의 물품은 원칙적으로 다물품<br>이나 1디자인으로 취급(제12조)                          |

V.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제문제

1.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논란이 있는 경우

(1) 자연물

자연물의 물품성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은 인간의 정신적 활동의 결과물을 보호하는 법이므로 정신적 활동의 소산이 아닌 천연자연력에 의해 생성된 자연물은 당연히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물품이 아니라고 하여 디자인의 성립을 부정하는 디자인의 성립요건 부정설, 디자인보호법에서 말하는 물품은 단순히 유체동산을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천연자연의 산물도 당연히 포함되므로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하되 자연물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동일물품으로 양산될 수 없으므로 공업상 이용가능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는 공업상 이용가능성 결여설로 현재 특허청 실무의 태도이다. 결론적으로 어떤 견해에 의하든 등록될 수 없는 점은 차이가 없지만 그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은 지적 행위의 결과물에 대해 그

가치를 인정하여 무체재산권을 부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디자인보호법에서 인정하는 물품도 인위에 의해 생성된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 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다만, 자연물에 대한 가공을 통해 더이상 자연물이라고 볼 수 없는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자연석(自然石)을 그 자체를 사용한 장식물”의 경우에는 자연물 그 자체는 디자인으로 성립되지 않거나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하여 대량생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 “자연석(自然石)을 그 자체를 사용한 장식물”과 같이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주요부분이 자연물 그 자체에 의해 구성된 경우에는 그 구성물인 “장식물”은 물품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그 물품의 형태 그 자체가 자연에 의해 생성된 형태를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특정디자인 그 자체가 양산 불가능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자연석은 자연물 그 자체로서 이를 사용한 장식물은 공업적 생산방법에 의해 대량생산이 불가하여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조1항본문 참고)

(2) 형(型)

예컨대, 과자성형기 등의 경우 형과 형으로부터 만들어져 나오는 물품과의 유사여부의 판단문제, 형과 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과의 권리 경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여부, 형의 디자인상의 요부는 그 외부인지 내부인지 등의 해석 등의 문제로 형 자체의 물품성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지만 시행규칙 별표4의 물품의 구분에 형이 기재되어 있어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것이다.

(3) 전사지

형(型)과 마찬가지로 종래에는 물품성의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전사지 또한 시행규칙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에 기재되어 있어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

(4) 반제품

반제품이란 완성 전의 생산과정 중의 형태에 관한 것을 말한다.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은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갖고, 독립거래대상이 되어야 하는데 반제품은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부품이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 되기 위한 요건

### (1) 문제점

물품의 부분과는 달리 부품은 전체를 구성하는 일부이지만 그것만을 떼어낼 수 있고, 그것만으로 독립된 교환가치를 갖는 것이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물품은 다수의 구성물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러한 구성물의 어디까지가 독립된 교환가치를 갖는 부품인지 물품의 부분인지의 구별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하 부품이 물품이 되기 위한 요건을 검토한다.

### (2) 독립성

동종류의 부품이 그 업계에서 통상적이고 독립된 상품으로서 거래되고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되고, 특정부품이 하나의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서만 독립하여 거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한편, 판례는 이 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인 “손톱깎이 누름판의 고정핀”은 (중략) 손톱깎이의 부속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될 수 없어서 손톱깎이 제조업자가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리라 예상되므로 위 “고정핀”만이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등록디자인의 대상은 그 물품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98허11096)라고 판시하고 있다.

### (3) 호환성

부품의 호환성이란 그 부품이 일정한 규격을 구비하고 있어서 일정범위의 완성품에 대해 자유로이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 호환성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양한 기준을 제시하는 견해가 있지만 심사 시 호환성 여부를 세분화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바 정형화된 기준으로 판단함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개개의 물품의 성격, 업계실정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판례는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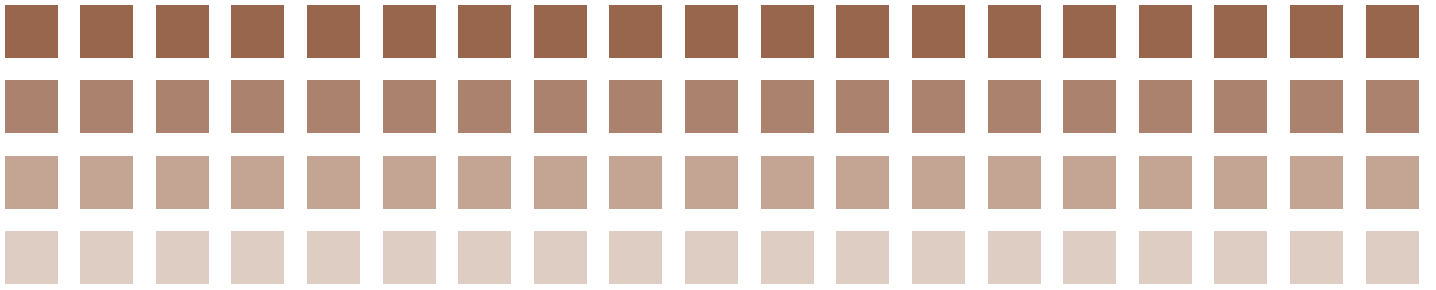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98후2900)라고 판시하고 있다.

## 3. 화상디자인을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서는 화상디자인과 같은 무체물인 글자체디자인을 디자인의 보호객체로 인정하여 물품성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화상디자인의 경우 물품에 표시된 상태에서 형태성의 일요소인 모양으로서만 보호받을 수 있어 독자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글자체디자인과 동일하게 화상디자인 자체만으로도 그 물품성을 의제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다만, 현재 거래실정상 화상디자인은 대부분 화상디자인을 특정한 부분디자인의 형식으로 출원 및 등록되고 있다. 화상디자인을 특정한 부분디자인의 경우 그 보호범위가 화상디자인을 포함하는 정보화기기 등의 물품의 동일 또는 유사 범위에서 인정되는 점, 2008년 1월 1일 시행법은 화상디자인에 관한 출원을 무심사등록출원으로 취급하여 절차상 이익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건으로 글자체디자인처럼 화상디자인을 독자적인 보호객체로 인정할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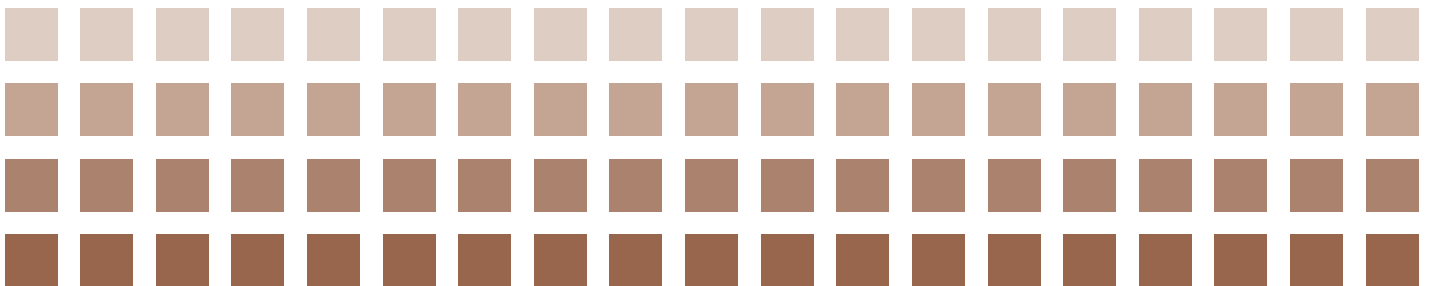
## VI. 결어

디자인보호법은 물품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목적, 사회통념, 등록요건 등으로부터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유체동산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로 각국 입법례에서 물품성 완화의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에서도 물품성 요건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차후 이와 같은 정의규정에 해석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디자인보호법은 2001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물품의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제도를 도입하였고, 2005년 7월 1일 시행법에서 글자체디자인에 대해 물품성을 의제하였다.



# IP Information

|                          |    |
|--------------------------|----|
| <b>발명위인! 발명품!</b>        | 90 |
| 지역을 따라보는 선조들의 발명품과 발명유적지 |    |
| <b>발명 365</b>            | 95 |
| <b>발명만화</b>              | 96 |
| 아무도 몰랐던 몰래발명이야기          |    |
| <b>건강하게 삽시다</b>          | 98 |
| 치매! 바르게 알고 대처하자          |    |





## 발명위인! 발명품!

정상기

### 정상기의 생애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정상기는 1678년(숙종 4년)에 출생하여 1752년(영조 28년)에 7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자는 여일(汝逸)이고 호는 농포자(農圃子)이다. 그의 9세조는 조선전기 유명한 학자로 영의정까지 지냈던 하동 부원군 정인지(鄭麟趾)라고 하니 소위 뼈대있는 양반가문 출신이다. 그러나 어려서 아버지를 여윈 탓에 가세(家勢)가 기울어 경제적으로는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다. 성장해서는 여러 번 과거에 응시했으나 실패하였고, 또한 몸이 병약하여 일찍 벼슬을 포기하고 가업을 계승하면서 학문에 전념했다.

정상기의 부인은 여흥 이씨 함경도 도사(都事) 이만휴(李萬休)의 딸로서 남편보다 18년 앞서 세상을 떠났다. 이만휴의 부친인 현감 이식(李湜)은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종조부이기 때문에 정상기와 이익은 인척 간이 되어 교분을 맺게 된다. 이익은 근기(近畿) 남인 계열의 대학자로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을 강조하는 실학파의 태두인 점을 감

안할 때 정상기의 학문도 이익과의 교류를 통해 성숙될 수 있었음은 쉽게 짐작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익은 정상기 뿐만 아니라 정상기 부친의 묘지명(墓地銘)까지 써 줄 정도로 인간적으로도 교분이 두터웠다.

정상기는 슬하에 희천(希天), 태령(泰齡), 항령(恒齡), 태령(台齡) 등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이 중 희천은 어려서 죽었고 태령도 35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항령(1710~1770)은 영조 11년(1735년) 진사 장원을 한 후 벼슬길에 오르게 된다. 정상기는 아들 항령으로 인해 말년에 중추부첨지(中樞府僉知)의 벼슬을 제수받기도 하였다. 항령의 아들 원림(元霖)은 통정대부 돈녕부도정(敦寧寧正)이란 벼슬을 역임했는데, 정조 때 추천되어 「여지승람」(홍지기 불임말: 「해동여지통제」의 오류로 보임) 편찬을 담당하였다. 원림(元霖)의 조카 수영(遂潏)은 어려서부터 시문과 서화에 뛰어나 많은 그림을 남기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들 항령, 원림, 수영의 세 후손은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수정, 교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조선시

대에는 드물게 대를 이어 지도제작에 전념했던 명가(名家)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 것이다.

정상기의 학문은 반드시 옛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였으며 많은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다방면으로 풍부한 지식을 쌓았다. 그리고 중년 이후로는 두문불출 저술에만 몰두하여 「농포문답(農圃問答)」 「인자비감(人子備鑑)」 「심의설(深衣設)」 「도검편(韜鈴篇)」 「향거요람(鄉居要覽)」 「치군요람(治郡要覽)」 등의 많은 저작을 남겼으나 「농포문답」을 제외하고는 현존하지 않는다. 그는 항상 말하기를, “선비가 비록 궁박하게 집에 있어도 뜻은 항상 나라를 구제하는데 있어야 한다. 무릇 치민(治民), 치병(治兵), 산천(山川), 관방(關防), 재부(財賦), 성곽(城郭), 거갑(車甲), 기계(器械), 행진(行陳), 의약(醫藥), 잡적(蠶績), 경농(耕農), 일용의 도구들은 진실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되는 것이니 깊이 헤아려야 한다.” 고 하였는데, 스스로 농포자(農圃子)라는 호까지 지어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기도 했다.

이처럼 그의 학문은 공리공론의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주자성리학에 경도되지 않고 경세치용의 실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으로 진출하기 보다는 향촌에 거주하면서 실질 체험을 통해 현실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책을 모색했던 것이다. 특히 그는 국방을 중시하여 「도검편」과 같은 군사관계의 전문서적을 저술하기도 했는데 「농포문답」에서도 국방관련 항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당시의 국방은 지형지세를 활용하여 성곽을 축성하고 고갯길을 방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천지리를 파악하는 것이 기초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는 그를 지도제작에 몰두하게 했고, 결국 「동국지도」라는 역작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동국지도

1757년, 영조가 즉위한 지 33년이 되던 해였다. 궁중의 전적(典籍)을 관리하던 기관인 홍문관의 수찬(修撰) 홍양한은 임금 앞에 나아가 말하기를, ‘정항령(정상기의 아들)의 집에 「동국지도」가 있는데, 신이 빌려다 보니 산천과 도로가 섬세하게 다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또 백리척(百里尺)으로 재어 보니 틀림없이 착착 맞았습니다.’ 하니, 임금이 승지에게 명해 가져오게 하여 손수 펴 보고 칭찬하기를, ‘내 칠십의 나이에 백리척은 처음 보았다.’ 하고, 홍문관에

한 본을 모사(模寫)해 들이라고 명하였다.

정상기(鄭尙驥)가 제작한 「동국지도(東國地圖)」가 조정에 알려지게 되는 순간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위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조선 후기 현군이었던 영조마저 감탄해 버린 「동국지도」. 그러나 지금은 김정호가 제작한 「대동여지도」의 그늘에 가려 우리의 뇌리에 희미하다. 김정호의 인생역정과 「대동여지도」에 얽힌 비장한 사연은 100여 년 앞서 존재했던 탁월한 지도제작자 정상기와 그의 역작 「동국지도」를 무색케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동국지도」가 조선 후기 지도제작에 미친 영향은 「대동여지도」를 능가할지 모른다. 어찌면 「대동여지도」는 「동국지도」가 없었다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것이다. 21세기를 앞둔 지금, 정상기와 그의 지도를 재조명하는 작업은 굴절된 조선지도사를 바로잡는 과정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관심과 애착의 한 편린을 읽는 작업이기도 하다.

#### 1) 동국지도의 제작 배경

이전 시대의 지도들이 많은 결함들을 갖고 있어서 지도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정상기는 이를 극복한 보다 정확한 지도를 만들려는 의도를 지니고 지도 제작에 임하게 된다. 당시 사회에서 통용되던 지도들은 대부분 지면(紙面)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리나 방위들이 정확하지 못했다.

이들 지도의 대표적인 것이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삽입된 일명 「동람도(東覽圖)」라는 지도인데, 이 지도는 조선전기 활발했던 관찬지도제작의 성과가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동국여지승람」 판본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에 맞도록 지도의 형태를 조정했기 때문에 「팔도총도(八道總圖)」의 모습은 남북으로 압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각 도별도(道別圖) 역시 판본의 규격에 맞도록 지도의 형태를 조정하고 있어서 축척도 일정하지 못한 결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동람도」가 행정·군사적 용도에서 보다는 「동국여지승람」의 부도(附圖)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도에 담고 있는 내용도 매우 소략하다.

정상기는 말년에 「동국지도」의 제작에 몰두하였는데, 구체적인 제작 경위는 기록이 없어서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도 제작은 회화와 같은 예술작품과는 달리 개인의

독창성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역사적·사회적으로 축적된 이전의 성과들을 기초로 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도제작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왜곡된 윤곽을 지니고 있는〈동람도〉 유형의 지도에서 국토의 모습을 실제에 가깝게 묘사한 정상기의〈동국지도〉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중간의 공백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 동국지도

사실, 임진왜란·병자호란 이후 17세기경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지도제작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고, 현존하는 당시 지도도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를 지도제작의 정체기로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상기의〈동국지도〉가 탄생된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정상기의 지도가 제작되었던 시기는 오히려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군사적·행정적 차원에서의 지도 제작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도 전쟁 후의 복구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양안(量案)의 정리와 호적(戶籍)의 정비가 국가적 차원에서 행해졌고, 농업생산력의 회복을 위해 농지의 개간과 농법의 개량이 폭넓게 진행되고 있던 때였다. 이러한 농업에서의 생산력의 증대는 수공업, 광업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상품교환경제의 발달을 자극하였고, 이로 인해 지역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학문적으로도 실학이 태동하여 일군의 학자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역사지리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모든 여건들은 당시 지도제작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특히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민간에서의 지도 소유를 금지했던 조선전기와는 달리 사대부를 중

심으로 어느 정도의 지도를 소유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간에서의 지도제작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김정호의〈청구도〉 범례에서 뛰어난 지도제작가로 언급하고 있는 윤영(尹鏞, 17세기 인물로 추정), 황엽(黃曄, 1666~1736년)과 같은 이도 이 시기에 활약하고 있었다. 또한 17세기를 거쳐 18세기에 접어들면서는 청나라와의 국경분쟁을 계기로 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던 시기였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방지도(關防地圖)가 제작되기도 했다. 중국으로부터 지도 및 지리지를 적극 수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경지역의 지도를 제작하여 국방에 이용했던 것이다.

## 2) 동국지도의 제작배경

정상기의 지도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데, 당대까지 축적된 지도제작의 성과와 지리 지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존하는 유일한 저작인 「농포문답」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 그는 병약하여 한 고을 밖을 제대로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 따라서 전 국토를 답사하고 측량하여〈동국지도〉를 제작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조선 전기의 대학자이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정인지의 직계 후손으로서 집안에 소장된 지도와 각종의 지리관련 서적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었고, 당대 최고의 실학자였던 성호 이익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든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면서 백리척을 사용한 독특한 방법으로 당대 최고의〈동국지도〉를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 동국지도의 체제와 내용

정상기의〈동국지도〉는 대전도(大全圖)와 이를 팔도로 나누어 첩으로 만든 팔도분도(八道分圖)로 이루어져 있다. 〈동국지도〉는 정상기의 원도에서 계속 전사되어 후대에 이어졌는데, 현재 국내의 도서관 박물관 등지에 다수가 보존되어 있다. 대전도의 경우는 현존 사본이 팔도분도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인데, 이들의 규격은 대략 가로 130~140cm, 세로 240~260cm 정도이다.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지도인 양성지(梁誠之), 정척(鄭陟)의 전도 유형에 속하는〈조선방역지도(朝鮮方域之圖)〉

의 규격이 가로 61cm, 세로 132cm인 것을 보더라도 정상기의 지도는 이전 시기의 전도와는 달리 대축척의 지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축척의 전도는 여러 장의 종이를 이어 붙여서 그려야 하는 전사(傳寫)상의 불편함과 열람, 휴대상의 문제 때문에 후대까지 활발하게 전사되지는 못하였고 대신에 팔도분도의 형식이 정상기 지도 사본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정상기의 팔도분도는 이전의 팔도분도와는 다른 양식으로 되어 있다. 즉, 「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지리지에 실리는 팔도분도는 각 도별 지역의 넓고 좁음에 관계없이 한 지면에 무조건 한 도를 배정하여 그렸기 때문에 축척이 서로 달라 산천의 표현과 도리(道里)가 모두 부정확한 것이 특징이었다. 정상기의 팔도분도는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고안되었는데, 경기도와 충청도는 면적이 다른 도에 비해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한 장의 지도에다 합쳤고, 함경도는 넓은 면적으로 인해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여 두 장의 지도로 만든 것이다. 따라서 각 분도의 규격도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가로 60cm, 세로 100cm 내외이다.

내용 면에서 농포자 지도는 조선 전기의 지도들과 비교했을 때 무엇보다 한반도의 윤곽에서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압록강,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의 북부지방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조선 전기 양성지, 정척의〈동국지도〉를 계승한 대부분의 지도들은 북부 지방이 중·남부 지방에 비해 면적이 작게 표현되어 있다. 또한 압록강과 두만강의 유로가 부정확한데, 압록강과 두만강의 하구가 위도상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도 거의 같은 위도상에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농포자 지도에서는 이러한 지도의 결점을 극복하여 현대 지도의 한반도 윤곽과 비교해 보아도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다.

둘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산천으로 대표되는 자연적 요소이다. 김정호가 지적한 것처럼 산맥과 물줄기는 지표면의 근골(筋骨)과 혈맥(血脈)이 되기 때문에 과거의 지도 제작자들은 다른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산천의 표현에 관심을 두었다. 정상기의〈동국지도〉에서 산천의 표현과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산계(山系)와 수계(水系)가 이전 지도와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매우 상세해졌다는 점이다.

이전의 지도들은 소축척 지도이기 때문에 산계와 수계를 자세히 표현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산천으로 대표되는 공간에 대한 인식이 후대에 비해 상당히 제약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상기의〈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대축척의 지도로 제작되어 산계와 수계가 보다 자세히 표현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었고, 이전까지 축척된 공간인식을 바탕으로 후대의 김정호의 지도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산천체계를 표현해 내고 있다.

셋째는 인문적 요소인데 이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교통로이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뻗어가는 대로는 물론 각 군현을 잇는 연결도로까지 자세히 그렸고, 서해안에서 남해안에 이르는 해로도 표시하였다. 또한 산지상의 영로(嶺路)인 고개도 상세히 그려져 있다. 교통로와 더불어 역보(驛堡), 산성(山城), 봉수(烽燧)와 같은 군사적인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는 점도 특징적이다. 정상기는 국방에 대해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도에서도 이를 중시하여 표현했던 것이다. 역의 경우는 찰방역(察訪驛)만을 그렸지만 진보(鎭堡)의 경우는 연해와 북방의 것이 거의 망라되어 있다. 이밖에도 유명한 포구와 마을, 사찰, 고읍, 저수지, 나루터 등도 그려져 있다.

### 동국지도의 가치와 의의

정상기는〈동국지도〉를 제작하면서 이전 시기의 지도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축척인 백리척을 사용했다. 백리척은 대략 9.4~9.8cm의 긴 막대모양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 길이가 백리에 해당한다. 전통시대의 지도제작에서는 거리와 방위를 고르게 하면서 축척의 기능도 수행하는 격자형의 방격(方格)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오히려 지도가 번잡해지는 결점을 낳기도 했다. 따라서 정상기는 이러한 방격 대신에 백리척을 고안하여 두 지점 간의 실제 거리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례를 동양 문화권의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보기 힘든 것이기도 하다.

또한〈동국지도〉는 현대 지도의 축척으로 환산했을 때 대략 1:50만 정도로 당시로서는 대축척지도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지도에 이전 시기 지도에는 거의 불가능했던 다양한 정보를 담을 수 있었고, 이후 대축척지도의 효시가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동국지도〉는 우리나라 국토의 원형을 사실에 가깝게 그려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동국지도〉에서 확립된 국토의 모습은 약간의 수정은 가해지지만 일제에 의한 근대적 측량지도가 나오기 이전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1757년 조정에 알려지게 된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이후 관청에서 적극 활용하게 되는데, 이는 정상기의 지도가 행정·군사적 용도로

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의 대표적인 사례는 1770년 신경준(申景濬 1712~1781년)의 〈여지도(輿地圖)〉 제작사업이다. 그는 영조의 명을 받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와 짝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 때 기본도로 사용된 것이 정상기의 〈동국지도〉였다. 이를 토대로 도별도(道別圖), 군현지도(郡縣地圖) 등을 제작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제작된 지도는 이후에도 관에서 계속 모사되면서 널리 이용되었다.

민간에서도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도제작에 이용되었다. 특히 해주 정씨 가문의 정철조(鄭喆祚 1730~1781년), 정후조(鄭厚祚 1758~1793년) 형제는 정상기의 지도를 바탕으로 수정, 편집하여 더 뛰어난 해주본(海州本)을 제작하기도 했다. 또한 이후에 제작되는 많은 전도들은 정상기의 대전도를 바탕으로 축소한 것들인데, 도리도표(道里圖表)에 수록된 전도(全圖),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목판본 〈해좌전도(海左全圖)〉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정상기의 〈동국지도〉는 그의 후손과 다른 지도 제작자들에 의해 수정, 보완되었던 조선후기 지도사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834년 제작된 김정호의 〈청구도(靑邱圖)〉도 바로 정상기의 〈동국지도〉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되었던 전도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 지도학의 금자탑이라 할 수 있는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는 그의 〈청구도〉를 바탕으로 보완·발전시킨 것인데 이 역시 그 뿌리를 거슬러올라가면 정상기의 〈동국지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구한말 일본을 통해 근대식 지도제작의 기법이 서서히 도입될 때에도 정상기의 지도는 여전히 정부에 의해 제작되는 각종 전도의 기본도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동국지도〉가 조선후기 지도사에 미친 영향은 지대했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지도제작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에 제작된 〈동국지도〉와 같은 전통시대의 지도들은 현대의 지도와는 제작기술이나 표현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단순히 정확도의 관점에서 전통시대의 지도를 평가한다면 여전히 미숙한 지도에 불과할 것이다. 정상기의 〈동국지도〉도 이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하나의 지도가 탄생하기까지에는 뛰어난 지도 제작자의 독창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축적된 많은 경험과 당시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던 지식과 관념들이 뒷받침되어 있다. 그만큼 지도는 회화와 같은 예술작품과는 다른 강한 사회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동국지도〉는 비록 정상기 일 개인의 역작이라 할 지라도 그 속에는 조선시대에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던 지도제작의 문화적 역량이 담겨져 있으며 우리의 국토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을 표현하려 했던 선조들의 땀이 배어 있는 것이다.

제공 지역지식재산팀(www.ripc.org)

발명특허 2009. 1

## INVENTION 365

## 3

## 요람사 경보장치

영국의 언론들은 콜린 패튼이란 18세기 소년을 대서 특필한 적이 있다.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자신의 어린 여동생을 위해 요람사(死) 경보장치를 발명했기 때문이다.

패튼은 미숙아로 태어난 여동생이 투명한 관 속에 누워 있다가 퇴원하자 너무 기뻐다. 그런데 어느 날, 여동생의 호흡이 불규칙하여 과량게 변하는 것을 보고, 혹시 아기 방이 비어 있을 때 갑자기 호흡이 멈출까 염려되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 동생의 호흡이 불규칙해졌을 때 소리가 나는 기계를 만들기로 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후, 패튼의 손에는 동그란 작은 원판과 긴 전선, 그리고 TV의 리모콘 같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만약 아기가 숨쉬기를 멈추면 상자에서 경찰차의 경고음 같은 소리가 나도록 한 기계였다. 뿐만 아니라 빨간 불이 켜져, 호흡이 불규칙하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안전장치였다.

## 용수철

대부분의 재료는 탄력성이 있어서 구부리려고 하면 본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개의 경우 그렇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여 고대 사람들은 어린 나무의 줄기나 가지의 강한 힘으로 덩을 만들었다. 활도 어린 나무의 탄력성을 이용한 용수철로서 이 힘으로 화살을 쏘는 원리이다.

중세기에 접어들면서 방직기, 도르래, 제분기 등의 기계에 용수철의 힘이 이용되기 시작했다. 탄성재료는 꼬임에 대해서도 구부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기원전 4세기 경 그리스의 투석기 등에는 로프로 보강한 비틀림 용수철이 쓰여졌다. 끝을 막대로 구부리는 것보다 코일 모양으로 구부린 금속 용수철을 신축시키는 편이 훨씬 큰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15세기이다.

## 6

## 5

## 우산

우산은 햇볕 가리기, 비를 피하기 등으로 3천년 전의 옛날부터 이용되고 있었다. 고고학상으로 보면 우산은 지위와 부의 상징이었다. 부족사회, 특히 아프리카에서는 지금도 귀인의 뒤에는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우산은 유약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우산이 일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중반 무렵이었다. 1750년 경 조너스 한웨이가 처음으로 우산을 들고 폴멀의 클럽거리에 나타났다. 그는 무역으로 재산을 모으고, 러시아나 극동에서 수많은 멋진 우산을 보았다. 그는 한 평생의 절반인 30년간 매일 산책 시 우산을 들고 다녔다고 한다.

한웨이의 우산은 뼈대를 등나무로 만든 것이어서 펴고 닫는 것이 불편했다. 스틸 뼈대를 발명한 것은 헨리 홀란드이며 영국의 제조업자가 처음 사용했다.

# 아무도 몰랐던 **물래발명**이야기 **프렌치 프라이**

글·그림  
김민재

각종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우리몸에 유해한 음식물 가운데  
하나인 '프렌치 프라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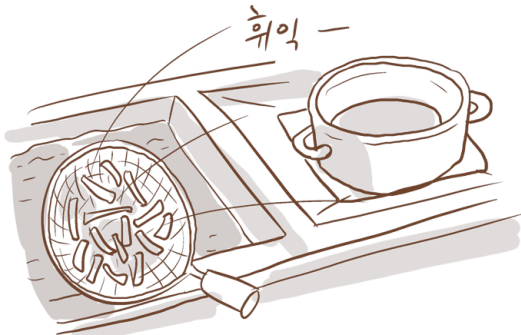


이렇듯 현대인들에게 불량식품  
취급과 함께 없어서는 안될 간식  
으로 여겨지는 이 감자튀김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을까?

때는 1830년대 벨기에의  
한 식당.



그리고 다 썩 감자를  
냄비로 던졌는데 그게 그만  
프라이팬으로 떨어졌다.



몸에 안 좋다는걸 알면서도 왠지  
패스트푸드점에서 세트메뉴로 이 감자  
튀김을 먹지 않으면 마치 라면을  
먹을때 김치없이 먹는것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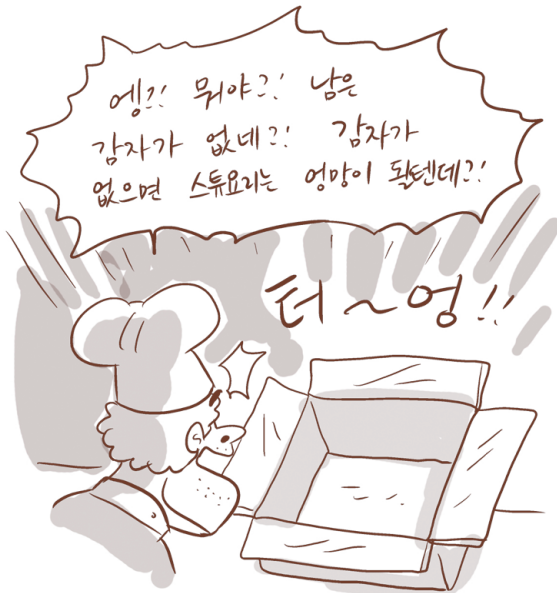


요리사는 스투요리를 만들기 위해  
감자를 얇게 썰고있었다



문제 될거 없다고 생각한  
요리사는 ...





그것은 바로 떨어진 감자조각에서 풍기는 냄새였다.



감자 튀김을 맛본 손님들은 감자의 향과 바삭거림, 그리고 맛에 만족했다.



그 순간 입맛을 돋우는 음식 냄새가 풍겨왔으니~



그는 이 감자튀김을 손님들의 탁자에 내놓았다.



맛있는 음식에 대한 소문은 금세 퍼졌고 사람들은 프랑스로 요리한 감자 (프렌치 스타일 포레이 토즈)라고 불렀으며 오늘날엔 간단히 '프렌치 프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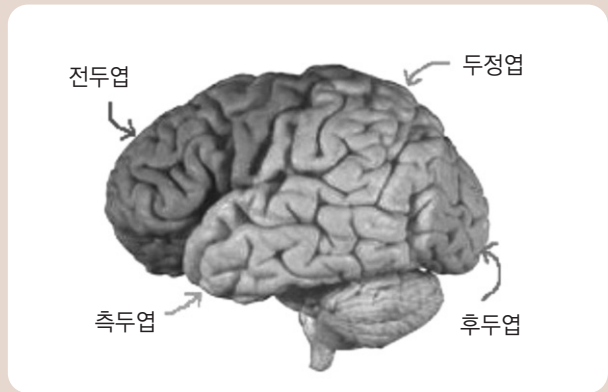
# 치매! 바르게 알고 대처하자

거창국립노인요양병원 원장 김철호

최근 급속도로 노령화가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1950년 노인인구 71만 명(전체인구대비 3.3%)에서 2007년 480만 명(전체인구대비 10%)으로 노인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지만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우리나라가 처한 큰 현실이며, 노인 개개인들에게도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치매를 바르게 알고 어떻게 하면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간단히 서술해 보았다.

## 1. 뇌의 기능

측두엽은 기억 및 언어를 담당하고 있는 뇌의 부분으로 여기에 이상이 발생하면 같은 말을 반복한다거나 똑같은 질문을 하고도 다시 되묻는 증상이 발생하며 단어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뭉터라!', '거시기' 등의 말을 얼버무리는 증상이 나타난다.



전두엽은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거나 분류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적응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전두엽에 이상이 발생하면 정리 정돈을 하지 않고, 어떠한 일에 대해서 동기 부여가 되지 않아 게을러지고 씻지도 않고 방안에만 있으려고 하며 변화에 적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화를 많이 낸다거나 고집스러워지는 성격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두정엽은 시공간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곳

으로 두정엽 기능 이상 시 그림 그리기, 길찾기 등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계산능력이 저하되는 것도 이 두정엽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두엽은 눈으로 본 사물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정보를 만들고 처리하는 곳으로 이 곳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환각 및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 2. 치매의 정의

치매는 이러한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의 원인에 의해 후천적으로 손상되어 인지기능이 감퇴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기억력, 주의집중력, 계산능력, 동작수행능력, 언어능력 중에서 기억력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에 문제가 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깜박깜박한다거나 건망증은 치매가 아닐 가능성이 많고, 노망과 같은 것들은 치매의 정확한 진단에 혼선을 주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치매는 하나의 질병 자체가 아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한 뇌의 인지기능의 저하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 3. 치매의 원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알츠하이머 치매는 뇌세포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축적되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전체 치매의 60-7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로 많은 치매는 혈관성 치매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기타 혈관 기형 및 이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이던 뇌혈관에 뇌 혈액순환의 장애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 두 가지 치매를 합치면 전체 치매환자의 80-90% 정도에 이른다. 이외에도 음주에 의해서 발생하는 알코올성 치매, 유전자 이상, 갑상선 질환 등의 내과적 질환으로 인한 치매 등 치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치매라고

진단되면 한 가지 원인, 한 가지 치료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기에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내어 이 원인에 의해 뇌세포가 죽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 4. 치매의 진단

이러한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는 것인데, 치매를 진단하는 방법으로는 신경학적 검사, 신경심리 검사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치매 환자에게 나타난 신경학적 이상 및 인지기능의 저하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뇌자기공명검사, 뇌혈류검사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뇌가 손상이 되었는지 어떠한 부위가 더 손상되었는지를 확인하며, 갑상선기능검사, 비타민 혈중농도 측정 및 다른 혈액검사 등을 통하여 다른 이차적인 원인에 의하여 치매가 발생한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 5. 치매의 치료

치매로 진단된 경우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면 뇌세포가 기능을 잃거나 사멸하는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약물요법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다. 1990년대 중반부터 소위 '치매치료제'로 시판되고 있는 약물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러한 약물들은 치매의 진행을 막는 것이 아니고 환자들의 인지기능의 저하를 최대한 지연시키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매일 복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오랫동안 복용해야 하는 약물일수록 초기에 약물 복용 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치매환자들은 인지기능의 저하 이외에도 환각, 환시 등과 같은 감각장애, 공격성, 초조 등과 같은 이상행동장애를 보이고 이로 인하여 길을 잃거나 상대방과 심하게 싸운다거나 심한 외상 및 골절 등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환자의 경우 치매 전문의와 상의하여 이상행동증상을 조절하는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간세포, 피부세포와 같이 왕성한 세포분열을 하는 세포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세포가 손상이 되더라도 다시 정상상태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뇌세포는 이러한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아 한번 손상이 되면 재생하는 것이 힘들다. 따라서 뇌세포가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이러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다.

## 6.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

첫째, 위험인자의 조절이다. 치매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이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나이를 먹지 않고 살 수 있겠는가? 그러나 다음과 같은 후천적으로 얻어진 위험인자들을 조절하는 것이 나이를 먹지 않는 것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 과음을 하지 않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내과적 혈관위험인자를 약물 및 식이요법, 운동 등으로 조절하며, 기타 뇌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과거에 신경학적인 이상의 병력이 있는 경우 주기적인 검진을 통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 치료 및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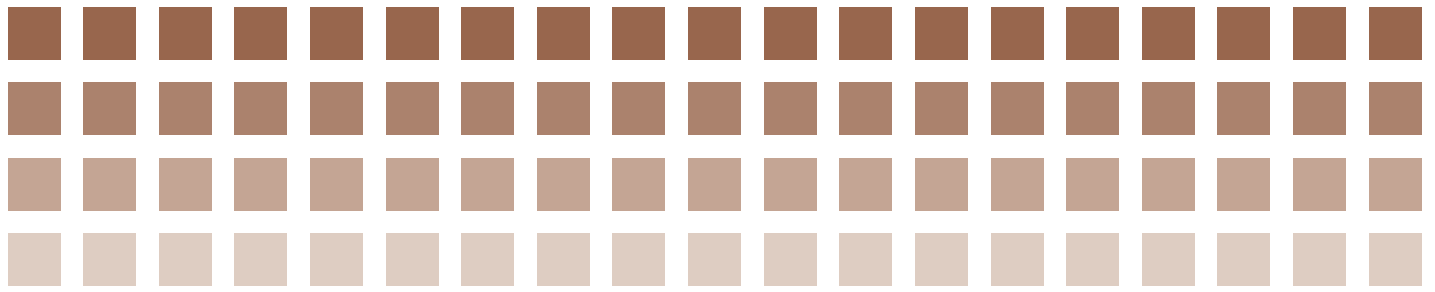
둘째, 능동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TV를 보는 것은 구체적인 시각 정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우리 뇌에 정보를 전해주는 것으로 이러한 수동적인 사고는 인간의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적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수동적 사고보다는 독서, 신문 읽기 등과 같이 상상력, 추리력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고를 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평소의 뇌의 사용을 활성화시켜 치매의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치매의 증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집안에만 있으려고 한다거나 상대방과 말도 하지 않고 얼굴표정도 없이 가만히 앉아있거나 하는 증상 등은 우울증 환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

로 노년에 이러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치매와 우울증을 감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우울증과 치매는 별개이고 치매를 진단할 때 우울증(이전에는 '가성치매'로도 불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졌으나,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노년기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의 경우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 정상 노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우울증과 치매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따라서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치매의 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환갑노인 그리고 환갑잔치'라는 말은 웬지 요즘 잘 어울리지 않는다. 인생은 60부터이지 않은가! 황순원의 소나기에서 나오는 주인공들과 같은 풋풋한 사랑은 할 수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왜 이것에 감사해야 하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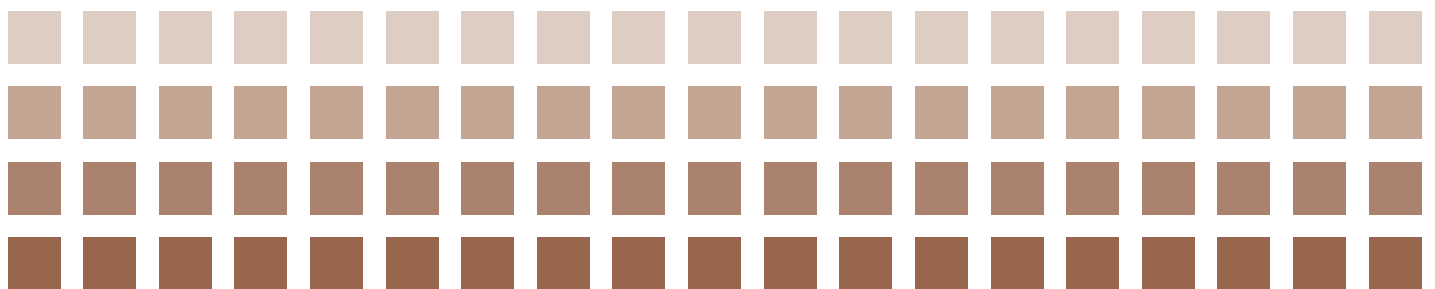
제공 건강길라잡이(<http://www.hp.go.kr>)

발명특허 2009. 1



# IP News

|                        |     |
|------------------------|-----|
| 해외특허뉴스                 | 102 |
| 해외특허분쟁, 해외특허동향, 해외특허정책 |     |
| 즐거운 퍼즐                 | 107 |
| KIPO 소식                | 108 |
| 특허청 소식                 |     |
| KIPA 소식                | 111 |
| 한국발명진흥회 행사 및 소식        |     |



## 길리아드 사이언스, 특허침해혐의로 테바 제약 제소

**생**약 개발 전문업체인 길리아드 사이언스 (Gilead Sciences)가 2건의 특허 침해혐의로 테바 제약(Teva Pharmaceuticals)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길리아드는 테바 제약이 성인용 에이즈(HIV-1) 치료제 트루바다(Truvada)의 제네릭 버전을 생산 및 판매하기 위해 약식신약신청서(ANDA)를 제출하자 이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

트루바다의 성분 중 하나인 엠트리시타빈(emtricitabine)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길리아드는 본 특허의 유효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루바다의 지식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엠트리시타빈 특허는 에모리 대학(Emory University)이 길리아드 사이언스에 독점적으로 라이선스 한 특허이다.

출처 : Hayspharma

## USPTO, 파워 인테그레이션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무효 결정

**페**어차일드 반도체(Fairchild semiconductor)에 따르면, 미 특허상표청(USPTO)이 파워 인테그레이션(Power Integration)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던 특허 3건 중 2건에 대해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특허는 파워 인테그레이션이 보유하고 있는 미 특허번호 제6,107,851호(이하 "851" 특허)와 제 6,249,876호(이하 "876" 특허)로 USPTO는 동 특허들을 재검토한 후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2004년부터 계속되어 온 본 소송에 더해 파워 인테그레이션은 올해 초, 851 특허와 876 특허와 관련해 페어차일드를 제소하였고, 페어차일드 역시 동사의 특허 3건에 대한 침해 혐의로 파워 인테그레이션을 제소한 바 있다.

문제된 3번째 특허(미국 특허 제6,229,366호)의 유효성도 현재 USPTO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2004년 소송에서 문제된 4번째 특허는 이미 만료되었다.

출처 : Market Watch

## 美 캔델라, 또 다시 팔로마 특허의 재검토 요구

**팔**로마 메디컬 테크놀로지스(Palomar Medical Technologies Inc.)와 장기간 계쟁 중이던 특허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지 불과 몇 달밖에 지나지 않은 캔델라(Candela Corp.)가 또다시 팔로마의 레이저 특허 2건의 무효를 주장하며 미 특허상표청(USPTO)에 재검토를 요구했다.

2006년 8월 9일, 팔로마가 캔델라를 상대로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은 미국 특허 제 5,595,568호("568 특허")와 제5,735,844호("844특허")로 지난 10월 8일에 판결이 나왔으며, 이는 양사 간에 계쟁 중인 3건의 특허침해소송 중 하나로 나머지 2건은 아직 계류 중에 있다고 한다.

캔델라는 레이저를 이용한 주름제거기술과 관련된 568 특허와 844 특허는 이미 제3자의 요청에 따라 USPTO가 재조사를 하고 있다며, 이번에 동사가 문제 삼은 특허는 레이저를 이용한 제모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1970년에 설립된 캔델라는 레이저와 빛을 이용한 미용 및 의료 치료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출처 : Mass High Tech

## 보스, 파이텍과 헤드폰 특허 침해 소송에서 화해

**헤**드폰 전문 제조업체 보스(Bose Corp.)가 특허침해혐의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메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제소했던 파이텍(Phitek)과 화해했다고 발표했다.

보스는 파이텍이 오디오 테크니카(Audio-Technica)와 크리에이티브 랩스(Creative Labs)라는 상품에 보스의 콰이어트컴포트(QuietComfort®) 소음 방지 헤드폰 특허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동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화해 계약의 체결로 파이텍은 동사의 헤드폰이 보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도록 다른 기술을 채용하기로 동의했으나, 이밖의 화해 계약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스는 헤드폰과 관련해 연구, 개발, 독점 기술의 디자인 등에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문제가 된 보스의 특허 기술은 동사의 QuietComfort®2와 QuietComfort®3 Acoustic Noise Cancelling® 헤드폰이 갖고 있는 독특한 기능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보스의 헤드폰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출처 : Market Watch

## 신세스, 인공 척추 디스크 관련 특허 침해 혐의로 메드트로닉 제소

**스** 위스의 의료기기 제조업체 신세스(Synthes Inc.)가 세계 최대의 심박조율기 및 심장제세동기 제조업체인 메드트로닉(Medtronic Inc.)을 인공척추디스크 관련 특허 침해혐의로 제소했다.

신세스는 멤피스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에 메드트로닉의 매버릭 인공 디스크(Maverick Artificial Disc)가 동사의 자회사인 스파인 솔루션즈(Spine Solutions)의 프로 디스크 II (ProDisc II)를 모방했기 때문에 1천4백9십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과 각 상품의 판매에 대해 18%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사는 “메드트로닉이 우리의 발명품을 보고 그걸 이용해 자사의 제품을 만들었다. 메드트로닉이 이러한 침해 행위를 그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드트로닉을 제소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메드트로닉은 이에 대해 “고정 장치를 뼈에 붙이는 것은 새로운 것이 없는 기술”이라며, 스파인 솔루션즈가 고의적으로 메드트로닉 상품과 더욱 유사한 기술처럼 보이도록 특허출원서를 수정했고, 스파인 솔루션즈의 특허 기술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Daily Herald

## 美 연방법원, 골다공증 치료제 보니바 특허 3건 중 1건 기각

**미** 국 뉴저지 연방법원이 골다공증 치료제 보니바(Boniva)의 제네릭 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스위스의 제약업체 호프만 라 로슈(Hoffman La Roche)가 인도의 제약업체 닥터 레드스(Dr Reddy's Laboratories)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1건(미국 특허 제6,294,196호 관련, “196 특허”)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로슈는 계속해서 나머지 2건의 특허의 유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동 특허 클레임이 기각됨으로써 닥터 레드스의 제네릭 약품 판매일이 앞당겨질런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196 특허의 만료일은 2019년 10월이며, 나머지 2건의 특허 중 하나인 983 특허는 2023년에 만료된다.

1달에 한번 복용하는 약품인 보니바는 로슈의 블록버스터 상품 중 하나로 2007년에 미국에서만 7억 달러의 판매고를 올린 바 있다.

닥터 레드스는 “문제가 된 특허 3건 중 1건이 기각되었다. 앞으로 남아있는 2건에 대해서도 계속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닥터 레드스는 특허 침해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180일간의 시장 독점권을 갖게 된다. 최근 인도의 대형 제약업체들은 특허가 만료되기를 기다리는 대신 Paragraph IV(특허가 만료되지는 않았으나 무효이거나 집행할 수 없음)로 약식신약신청을 하고 있다.

출처 : The Economic Times

## 美 키네토 와이어리스, 리서치 인 모션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 체결

**유** 무선 컨버전스 솔루션(FMC) 제공업체인 미국 키네토 와이어리스(Kineto Wireless, Inc.)가 캐나다의 리서치 인 모션(Research In Motion)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키네토의 회장 겸 CEO인 릭 길버트는 “본 협약은 2G, 3G 및 LTE 네트워크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UMA/GAN 기술의 폭넓은 채택을 장려하겠다는 키네토의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3GPP UMA/GAN 표준은 모바일 운영자들이 음성, 데이터, IMS 서비스를 유무선 브로드밴드 액세스 네트워크에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세계의 모바일 운영자들은 UMA/GAN 표준을 기초로 듀얼 모드(dual-mode) 핸드셋, 펌토셀(femtocell), 터미널 어답터, 소프트 모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Market Watch

## 美 애플, “모바일 미(Mobile Me)” 상표 출원

**유** 럽상표청(ETO)이, 애플(Apple)사가 최근 “모바일 미(Mobile Me (007439607))”를 도형표장으로 출원했다고 밝혔다.

애플사는 2006년 1월 5일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국제 분류 38(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41(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42(온라인 조사, 검색, 조사, 색인, 컴퓨터 및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상의 데이터 정리)에 따라 각각 모바일 미 상표를 출원했다.

유럽상표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pple은 모바일 미와 관련해 새로 2건, 009(MP3 플레이어 및 그 접속과 운영, 커뮤니케이션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035(인터넷, 기타 컴퓨터 및 전자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엔터테인먼트 즉, 영화, 음악, 오디오비주얼 작품 및 관련 상품 분야의 소매 서비스) 하에서도 모바일 미를 도형표장으로 출원했다고 한다.

출처 : MACNN

## EPO와 OHIM의 2가지 상징적인 출원 수

**유** 럽특허청(EPO)이 최근 2백만 번째 특허를 승인했다.

**유** 2007년 6월에 덴마크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이 출원한 동 기술은 폐수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미생물연료전지(microbial fuel cell)에 관한 것으로 비록 유사한 기술이 이미 존재하고 있지만, 동 대학이 이번에 출원한 기술은 전지구성방식을 한층 더 개선한 것이라고 한다.

한편, 유럽공동체상표청(OHIM)도 50만 번째 상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핸디 댄디 디자인(Handy Dandy Design)”이라는 명칭의 동 상표는 이탈리아의 중소기업이 출원한 상표로 전자출원의 방식을 이용해 출원일로부터 25주만에 상표를 승인받았다고 한다.

출처 : IPR Helpdesk

## 러시아 사업가, 스마일리 이모티콘을 상표로 등록

**러** 시아의 사업가 올레그 테터린이 스마일리 이모티콘(Smiley emoticon)을 자신이 운영하는 슈퍼폰 이동전화회사의 상표로 등록했다.

그는 앞으로 스마일리 이모티콘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사용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현재 이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Odnoklassniki.ru, Corbina Telecom, Nestle, McDonalds 등)에게 동 이모티콘의 무단 사용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테터린은 기업들에게 1년 단위의 계약을 통해 이 스마일리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하지만, 기업들은 그 스마일리 마크를 사용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바보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출처 : Russia IC



## WIPO STC, 제12차 회의에서 비전통상표 등에 관해 논의

**세** 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상표법 등 상설 위원회(STC)의 제12차 회의가 지난주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전통적상표(non-traditional marks)”- 입체 상표, 색채 상표, 음향 상표 등-와 관련된 여러 분야의 통합을 위해 지난 회기에 채택된 협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으며, 더불어 이의 제기의 이유, 이의 제기 자격 부여, 화해 협상을 위한 냉각 기간의 부여 등을 포함한 상표권 이의 제기 절차 수렴에 관한 협약도 재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디자인 분야와 관련해서는 동 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종합조사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여러 가지 주제들이 논의되었다.

출처 : IPR Helpdesk

# PUZZLE

## 함께 풀어봅시다

|    |    |  |    |    |    |   |
|----|----|--|----|----|----|---|
| 1  | 2  |  | 4  |    | 5  |   |
|    | 3  |  |    |    |    |   |
| 8  |    |  |    |    | 6  | 7 |
| 9  | 10 |  |    | 13 |    |   |
|    |    |  | 12 |    |    |   |
| 11 |    |  |    |    | 15 |   |
|    |    |  | 14 |    |    |   |

### 가로 열쇠

1. 발명품을 일정한 시기에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빌려주는 것
3. 도시에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 장소나 영업상의 특수 이익의 대가로 임대료 이외에 전(前)영업자나 전임대인에게 관습상 주는 돈
4. 고체가 일정한 모양이나 구조를 갖지 않는 일
6. 해안의 만곡한 지점에 방파제 · 부두 · 잔교 · 창고 · 기중기 등의 시설을 한 수역
9. 고대의 유물, 인류 생활 전체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
11. 동장 · 읍면장이 본인이 제출한 인감 신고와 맞춰보아 인감의 진위를 증명함
12. 옛날 권위 있는 의학자가 만든 좋은 약방문
14. 장독을 놓아두는 높직한 대
15. 겨울철, 한랭 전선의 급속한 이동으로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는 현상

## 12월 호 즐거운퍼즐 정답

|   |   |   |   |   |   |   |
|---|---|---|---|---|---|---|
| 답 | 소 |   | 개 | 과 | 천 | 선 |
|   | 반 | 설 | 음 |   | 정 |   |
| 저 |   |   | 절 |   | 의 | 판 |
| 항 | 등 | 식 |   | 애 |   | 로 |
|   | 은 |   | 다 | 모 |   | 협 |
| 엄 | 동 | 설 | 한 |   | 가 | 정 |
|   | 물 |   | 증 | 기 | 압 |   |

즐거운 퍼즐 정답은 다음호에 게재하며, 정답자 중 3명을 추첨하여 월간 <발명특허>지 1년 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 정답을 적어 매월 20일까지 보내주십시오.

### 세로 열쇠

2. 외국 여행자의 신분 · 국적을 증명하고, 그 보호를 의뢰하는 문서
4. 금속의 성질을 갖지 않은 물질
5. 선박을 계류하는 일정한 항구
7. 한없이 너르고 너른 바다
8. 미확정의 중국판결에 대하여 패소 당사자가 법령위반을 이유로 법률심인 상고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10. 근심 없이 편히 잘 잠. 안심할 수 있는 상태
12. 양념으로 쓰는 장. 고명을 친 장
13. 기개가 장하여 작은 일에 거리끼지 않음
15. 지구의 남북 위선 각각 66.5도로부터 양극에 이르기까지의 지대(이 지대는 기후가 몹시 한랭하고 태양이 전혀 비치지 아니하는 계절과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지 아니 하는 계절의 구별이 있을 뿐임)

## 산업재산권 양도 시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해야

‘09년 1월 1일부터 인지세를 등록료와 일괄 납부해야 신청서류 수리

**트** 허청은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09. 1. 1일부터 권리이전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양도증서에 인지세로서 인지를 붙이는 대신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재산권 양도 시 서류 작성자가 별도로 인지를 구입하여 양도증서에 붙이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인지세의 현금납부로 개정하여 인지세 납부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따라서 ‘09. 1. 1일부터는 산업재산권의 양도 시 권리이전에 관한 소정의 등록료와 인지세액을 합한 금액을 등록료로 일괄 납부한 경우 등록신청서류를 수리하고, 양도증서에 인지만을 붙여 신청할 경우에는 불수리할 방침이다.

특허청 등록서비스과 강호근 과장은 “인지세법 개정에 따라 특허청에 산업재산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증서에 인지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인지세를 등록료에 포함하여 일괄 납부해야만 수리 된다” 고 당부했다.

## 세계 특허문서작성기 시장의 블루오션, 특허청이 선점

**하** 나로 통합되어가는 지구촌 특허시장에서 글로벌 특허문서작성기의 출현은 전세계 출원인·발명자의 여망에 부응하는 것으로 특허업계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특허청은 언어와 인종을 불문하고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특허문서작성기<sup>1)</sup>를 내년까지 개발하여 오는 2010년부터 세계 각국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될 특허문서작성기는 사용자 편의성, 범용성 및 글로벌 환경을 적극 고려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Open XML<sup>2)</sup> 기반의 MS-Word 편집기에 특허문서 작성에 필요한 보정서 생성, 위·변조 방지, 문서 비교, 정합성 체크, 맞춤법 검사 등 특허문서작성에 필요한 각종 편의기능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우리청의 특허문서작성기를 자국의 언어로 설치하여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국어 지원을 물론 특허청 간 정보공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글로벌 문자셋도 지원할 것이다.

1) 특허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명세서(발명의 상세한 내용 기술) 및 보정서(이미 제출한 명세서의 기술내용을 수정)를 작성하는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임

2) 특정프로그램에 종속되지 않고도 기존문서를 쉽게 열어볼 수 있도록 한 개방형 표준 문서 포맷을 지원하는 차세대 디지털 문서표준임

## “직무발명제도”를 알기 쉽게 표현할 젊은이를 찾습니다

특허청, 전국 직무발명 캠퍼스 만화공모전 개최

**특**허청이 450여 개 전국 대학(원)을 대상으로 직무발명제도를 주제로 한 만화공모전을 개최해 관심을 끌고 있다.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 직무발명 캠퍼스 만화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출품은 단독 응모, 만화동아리, 교수를 포함한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으며 심사기준은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이해도, 일반인의 관심 유발 정도, 만화의 완성도 등에 중점을 두고 입상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대한변리사회, 학술진흥재단이 주관하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 원과 특허청장상, 우수상 수상자 3명에게는 각 상금 150만 원과 주관 기관장상, 입선작 수상자 5명에게는 각 상금 50만 원과 상장이 주어진다.

우수상 이상의 수상자에게는 해외연수 기회도 제공된다.

접수는 '09년 2월 28일까지이며 심사 결과 및 입상자 현황은 3월 말경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홈페이지([www.koita.or.kr](http://www.koita.or.kr))를 참조하면 된다.

##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 해외진출 첫 발

시범사업으로 인니 특허청에 보급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니 특허청을 시작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은 특허청의 검색시스템을 모델로 하여 개도국 특허청이 필요로 하는 핵심기능 위주로 개발된 한국형 특허검색시스템이 인니 특허청에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보급된 특허검색시스템은 인니 특허청의 특허검색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특허문헌에 대한 영문번역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특허문헌의 해외 보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사업을 발판으로 한국 특허청과 인니 특허청이 공동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니 특허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한국인 최초 WIPO 총회 의장직 수행

WIPO 사업예산 위원회 및 임시총회 개최

**제** 46차 WIPO 총회( '08. 12. 12)에서 특허청의 박성준 과장이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2007년부터 주 제네바 대사관에서 특허관으로 근무 중인 박성준 과장은 작년에는 한국어의 PCT 국제공개어 채택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WIPO 총회의 의장을 맡아 무난하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선보여 한국의 역량과 위상을 높였다.

이번 WIPO 총회는 전일 종료된 제13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 '08. 12. 10-11)에서 의결된 WIPO의 08/09년 예산안에 대한 최종 인준을 주요 안건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프란시스 거리(호주) WIPO 신입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마련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중심으로 선진국·개도국 간 원활한 합의 도출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WIPO의 사업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회의였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지재권 사회의 글로벌 이슈대응과 개도국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보여 회원국들의 공감을 이끌어내었고, 개도국 상품에 대한 브랜드 획득 지원 사업과 최빈국에 생존형 기술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을 WIPO와 진행하기로 사무국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재권 선진국가로서 우리나라의 국가품격을 높이는 데 일조하였다.

WIPO는 지식재산 분야의 UN 전문기구로서, 184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재권 규범, 보호, 정책, 개도국 지원 등을 논의하고 있다.



## KIPA 사회봉사단,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우 리회 'KIPA 사회봉사단' 은 지난 12월 18일 서울 노원구 중계동에 위치한 서울연탄은행을 방문, 겨울철 난방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가구에게 전달할 연탄을 기증하고, 직접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를 실시했다.



KIPA 사회봉사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우리회, 조경선 박사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원희재 주임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조경선 차장  
특허기술평가팀



원희재 주임  
정보활용지원팀

우 리회 특허기술평가팀 조경선 박사(차장)가 지난 11월 27일 서울 임페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개최된 「제1회 기술금융·사업화 유공자 시상식」에서 지식경제부장관상(기술평가분야)을 수상했다.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기술거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술거래,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및 지원기관별 유공자에 대한 포상으로 진행되었다.

조경선 박사는 기술가치평가시스템 구축에 참여하고 기술가치평가 49건, 기술력평가 12건을 추진한 공로가 높게 평가됐다.

또한, 우리회 정보활용지원팀 원희재 주임이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건강한 정보문화 만들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1등 대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정보문화포럼’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지난 12월 18일 백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원희재 주임은 “개념을 바꿔야 습관이 건강하게 바뀐다”는 주제로 발표를 하였고, 클린사이버 구축을 위한 악플방지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피력하여 포럼 참가자의 높은 찬사를 받았다.

## 월간 「발명특허」

### 광고게재 안내

우리회 회지인 월간「발명특허」誌는 각 회사 및 국내외 유관기관, 기업, 도서관, 학교, 발명가, 주부 및 학생 등에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는 발명진흥사업의 활성화를 비롯한 국내외 산업재산권제도 및 정보자료의 대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본지에 귀사의 홍보를 위한 광고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원고모집안내

월간「발명특허」誌는 국내·외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야별 전문적 의견과 논문, 그리고 정책·기획·출원 동향 등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널리 확산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간되는 전문지입니다. 본 「발명특허」誌가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의 선도 및 기술·정책 전문지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 모집분야 : 지식재산권 관련 논문, 발명칼럼, 판례 등
- 원고제목 : 관련 분야별로 자유로이 선택
- 원고분량 : 제한없음
- 모집시기 : 수시
- 보내실곳 : E-mail - eldaah7@kipa.org

**광고 및 원고 모집 문의 : 한국발명진흥회 혁신기획팀 TEL (02)3459-2726**

### 광고가격(1개월 기준)

| 광고게재면 | 규격    | 가격      | 비고     |
|-------|-------|---------|--------|
| 표지 4  | 칼라 전면 | 900,000 | 부가세 별도 |
| 표지 3  | "     | 700,000 |        |
| 표지 2  | "     | 700,000 |        |
| 내지 화보 | "     | 500,000 |        |
| 내지 흑백 | 흑백 전면 | 300,000 |        |

## 우리회 지회 안내

| 지회   | 지회장 | 사무국장 | 주소                                    | 연락처          |
|------|-----|------|---------------------------------------|--------------|
| 부산지회 | 김광부 | 김유현  | 부산시 남구 문현3동 243번지                     | 051-645-9683 |
| 광주지회 | 고정주 | 김 일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br>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 062-954-3841 |
| 대전지회 | 이상복 | 박병영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45-1 2층<br>(대전한일병원 근처)  | 042-638-4307 |
| 강원지회 | 차명진 | 김운선  | 강원도 춘천시 후평1동 198-25                   | 033-258-6580 |

편집 : 혁신기획팀 김민국 (Tel. 02-3459-2726, Fax. 02-3459-2729)



?

?

- 특허기술거래, 그게 뭐죠?
- 특허기술거래 그거 어떻게 하나요?
- 좋은 특허기술, 어디 없나요?
- 특허기술거래 그리고 사업화, 도와주는 곳 어디 없나요?
- 거래 상대방, 어떻게 찾나요?
-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 거래 협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모두에 대한 자문과 도움을 드립니다. 『특허기술상설장터』로 오세요!

▶ 특허기술이전 지원

- 이전대상 우수특허기술의 상설전시
- 특허기술이전 자문 및 상담지원 외

▶ 특허기술사업화자문

- 특허기술사업화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홍보·전시 외

▶ 위치 : 한국지식재산센터(KIPS) 3층  
(서울 강남구 역삼동)

▶ 규모 : 약 200평

○ 상설 전시관 : 이전대상 특허기술 50점 상설전시

- 이전대상 특허기술의 패널, 리플릿, 시뮬레이션 또는 평가서 제공
- 터치스크린을 통한 검색 및 상세자료(명세서, 사업계획서 등) 열람

○ 성공사례관 : 특허기술사업화 성공사례 패널 및 제품 7점 전시

○ 투자설명회장 : 연중 발명가와 자본가의 만남의 장소 제공

○ 영상관 : 대형TV로 특허기술거래 및 사업화 홍보 영상물 상영

○ 상담실 : 특허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위한 종합정보제공 및 상담

○ 자유게시관 : 자유롭게 이전희망기술을 소개할 수 있는 장소

○ 냇카페 및 휴게실 : 이전특허기술 DB 검색/등록 및 휴게공간

◆ 안내 : 02-3459-2845~50, <http://www.patentmart.or.kr>





지난 한 해 고객님들의 관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고객님들의 소중한 성원을 바탕으로  
항상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마음다해 기원합니다.

謹  
賀  
新  
年



인터넷 주소창에  바이인벤션 을 쳐보세요.